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49호

# 공항안전운영기준

[Standards for Airport Operations]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번호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3. 11. 10.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3-28호	-	제정
2	2005. 02. 11.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5-11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식별표지판 등 용어정의 추가</li> <li>- 항공정보의 품질관리기준 추가</li> <li>-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기준 신설</li> <li>- 신호판 및 신호지역기준 신설</li> <li>- 저시정 운영절차를 삭제하고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신설</li> <li>- 공항안전관리시스템 신설</li> <li>- “공항의 물리적 특성”을 “공항시설”로 변경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추가</li> <li>-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신설</li> <li>- 별표5에 활주로 회전패드표지기준 추가 등</li> </ul>
3	2005. 12. 06.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5-61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 추가</li> <li>- 파편·오염물질 제거범위에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주변 포장지역 추가</li> <li>- 신호지역 면적을 한 번이 9m이상인 정사각형의 수평면으로 개정</li> <li>- 항공등화는 착륙예정시각 10분전에 점등토록 추가</li> <li>-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간의 접촉면 온도기준 추가</li> <li>- 작업안전거리는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의 중심선과 도입·도출선을 기준으로 확보토록 개정</li> <li>- 공항의 계절특성에 맞게 제설기간은 정할 수 있도록 추가</li> <li>-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개정</li> <li>- 별표5의 표면에 그리는 원형계류장진입지점표지가장자리에 윤곽선 설치기준 추가 등</li> </ul>
4	2006. 11. 29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44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단→시단 등 용어변경</li> <li>- 자체프로그램→자체안전프로그램</li> <li>- 항공법령 개정으로 장애물 제한표면 등을 삭제</li> <li>- ICAO 부속서 14, 제7, 8차 개정사항 반영</li> <li>·착륙복행표면 추가</li> <li>·공항설계시 고려사항 중 환경통제수단 추가</li> <li>- 별표 5 삭제</li> <li>- 공항안전관리시스템 내용 일부수정</li> <li>- 소방장비 신규추가 및 문구수정 등</li> </ul>
5	2007. 2. 1.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7-1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조 제4항 신설</li> <li>- 제42조 제1항 개정(지상조업사 추가)</li> <li>- 제116조 제3항 신설</li> <li>- 제132조 제3항 내지 제5항 개정(방재수준→구조 및 소방등급)</li> <li>- 부칙 제2조(공기부양장비확보 적용기준) 신설</li> <li>- 별표 1 제7항 삭제 등</li> </ul>

번호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6	2008. 3. 7.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10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시설·장비변경 등의 항공 안전운항 영향평가”</li> <li>- 제8조 제4항에 품질관리시스템 보완사항 추가</li> <li>- 제123조 제6항 인적요소 고려사항 추가</li> <li>- 제132조 제4항 구조 소방의 중요변경사항 ATS에 통보 추가</li> <li>- 제150조 내지 제152조의 SMS 수립요소 등 보완</li> <li>- 제154조의2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조항 신설 등</li> </ul>
7	2008. 4. 30.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44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추가 및 변경(항공안전프로그램, 안전성과지표 등)</li> <li>- 공항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비상대응 계획 추가(안전방침→안전정책 등)</li> <li>-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추가(안전정책,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스템 요소에 관한 사항 등)</li> <li>- 제15조 제4항의 ATS 관련요소 반영</li> <li>- 제133조 제2항 2호(항공기의 운항횟수) 삭제 등</li> </ul>
8	2009. 6.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37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행정 규정 폐지 후 제정</li> </ul>
9.	2009. 9. 2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6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안전운영기준 적용기준 차별화 용어 도입</li> <li>·제2조 90호,91호 및93호</li> <li>·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용 공항의 안전기준 일부완화</li> <li>·제22조 제3항, 제29조 제2항,3항,6항</li> <li>·제38조 제2항, 제82조 제1항</li> <li>·제84조 제1항, 제85조</li> <li>·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li> <li>·제106조 1호, 제133조 제2항, 제149조</li> <li>-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보완</li> <li>·제158조, 제8조, 제12조의 2, 제13조</li> <li>·제29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37조 제4항, 별표8 제2호</li> </ul>
10	2010. 6.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1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운영등급제 도입에 따른 등급별 차등적용 기준 반영</li> <li>·등급별 대상공항의 범주신설</li> <li>·활주로 등 이동지역 점검주기,</li> <li>·마찰측정 및 평가주기, 장비점검주기, 고무제거작업주기</li> <li>·야생동물 위험관리의 상시활동</li> <li>·제설작업 및 자체안전점검</li> <li>·공항 구조소방등급 하향기준</li> <li>·착륙대 및 유도로대내 물체</li> <li>·유도로대폭, 제방방시설 기준</li> <li>- ICAO 부속서14 개정사항 반영</li> <li>·정밀접근 CATⅡ/Ⅲ 활주로의 시정조건 및 관련 항공등화 관리요건 변경</li> <li>·공항운영증명 발급현황 정보고시</li> <li>·야생동물 위험관리기준 강화</li> <li>·비상사태의 유형에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포함</li> <li>·보조소화제의 분사율 신설</li> <li>·후속 구조소방차량 대응시간 등</li> <li>-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li> <li>·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li> </ul>

번호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교관 경력요건 완화</li> <li>·대규모 공사 등의 시행계획</li> <li>·OFZ관리기준 및 F급 관련 완화</li> <li>·제설계획 및 설빙관리 체계화</li> <li>·저시정운영절차 등 SMGCS 보완</li> <li>·공항비상훈련계획 및 감독 강화</li> <li>·이동지휘소 운영규모 자율화</li> <li>·비상격리주기위치의 안전확보</li> <li>·구조소방등급 결정 및 변경 등</li> </ul>
11	2011. 05.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3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시정운영절차 관련 활주로가시거리 기준을 300m→400m로 변경</li> <li>- Class IV 공항의 활주로 최소점검주기를 일 1회 →일 2회로 변경</li> <li>- 제설작업 후 유지해야 할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0.4이상 유지) 기준 도입</li> <li>- 지상감시레이더가 설치되어야 할 활주로가시거리 기준을 국제기준(300m→350m미만)으로 변경</li> </ul>
12	2011. 12. 0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물(obstacle)의 용어정의 변경</li> <li>·장애물 제한표면의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물체는 장애물의 범주에 포함</li> <li>-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활주로 가시범위(RVR)기준 변경 적용</li> <li>·활주로 항공등화관리 RVR 기준 : 300m 미만 →350m 미만</li> <li>·유도로 중심선등 간격 RVR 기준 : 300m→350m</li> <li>·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 항공등화 등 간격 RVR 기준 : 300m→350m</li> <li>- 구조소방등급 1~3등급 비행장의 주소화제 기준 설정</li> <li>- 교체비행장 구조소방등급 적용</li> <li>- 저시정 상황 비상대응 시간 충족을 위한 방안 추가</li> <li>- 첫 출동 이외의 구조소방차량 소화제 탑재 기준 설정</li> </ul>
13	2012. 10. 2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정보자료의 정확도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신설</li> <li>- 공항운영규정 인가 요청시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 신설 및 운영관련 타 기관 인·허가 사항 제출</li> <li>- 활주로 미끄럼측정시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필요한 거리를 측정구간에서 제외하는 활주로 미끄럼측정방법 변경</li> <li>-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성요소 조정</li> <li>- 최소 비상의료장비 목록 수정</li> </ul>
13	2013. 04. 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li> </ul>
14	2013. 06. 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운영규정 인가관련 검인방법 간소화</li> <li>- 자체검사자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기간 단축</li> <li>- 활주로 고무제거작업 결정기준 변경</li> <li>- 활주로 제설작업 후 유지해야 할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 변경</li> </ul>

번호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5	2013. 12. 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장 자료관련 용어정의 변경 및 신설</li> <li>- 항공정보자료 신뢰도 기준 변경</li> <li>- 활주로 표면정보 중 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및 신설</li> <li>- 최소마찰 수준 유지 및 통보기준 신설</li> <li>- 공항 비상계획의 사고 피해자 구조절차 수립 범위</li> <li>- 소화제의 유형 중 C급 소화제 기준 신설, 보조 소화제 요건 및 보관방법 등 개선</li> <li>- 구조·소방 직원 산정방법 개선</li> <li>-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에서 타이어 압력 기준 변경</li> </ul>
16	2017. 04.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17.3.30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li> </ul>
17	2017. 06. 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3차 개정 사항 및 항공항행업무절차(PANS-Aerodromes) 반영</li> <li>-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용어정의 신설</li> <li>-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대상 신설</li> <li>- 눈더미(Snowbank) 허용높이, 예비소화제 보유 관련 용어 및 문구수정</li> <li>- 안전평가와 수용성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신설</li> <li>- 안전평가 이행여부 확인절차 신설</li> </ul>
18	2018. 12. 0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5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 사항 및 항공항행업무절차(PANS Aerodromes) 반영</li> <li>-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변경</li> <li>- 항공정보업무(PANS-AIM)제정에 따른 항공정보 자료 품질관리 체계 변경 등</li> </ul>
19	2021. 10. 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3-B차, 제14차, 제15차 및 Doc 9981(PANS Aerodromes) 제1차, 제2차, 제3차 개정사항 반영</li> <li>- CAT III 용어 정의 변경</li> <li>-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방식 신설</li> <li>- 활주로 마찰측정 기준 변경</li> <li>- 착륙대 폭 수치 및 유도로대 범위 기준 변경</li> <li>- 노면강도 분류기준 변경</li> <li>- 활주로 안전 사항 신설</li> <li>- 이동지역 점검 및 보고(별표) 신설</li> <li>- 이동지역 작업(WIP)(별표) 신설</li> <li>- 활주로 길이 축소 운영 및 작업장 통제(별표) 신설</li> <li>- 지장물(FOD) 관리(별표) 신설</li> <li>- 야생동물 위험관리(별표) 신설</li> <li>- 계류장 안전(별표) 신설</li> <li>- 이동지역 운전자 허가제도 및 차량 장비 안전 요건(별표) 신설</li> <li>- 이동지역 운전자 허가(ADP) 기준(별표) 신설</li> </ul>
20	2022. 06. 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49호	공항안전 환경과	<p>전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목적·정의·적용·근거 수정, 체계조정(장·절), 정의 통일, 국제기준 반영(GRF, CAT III, 활주로 운영등급, 포장 등)</li> <li>- (통합) 공항안전운영기준(야생동물 부분 제외),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li> <li>- (용어정의 등) 기동지역, 이동지역 등</li> </ul>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 목적 ..... 2  
 제2조 적용대상 ..... 2  
 제3조 정의 ..... 3  
 제4조 공통 기준계 ..... 18  
 제5조 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 18

**제2장 공항자료(Airport Data)**

**제1절 일반**

제6조 공항표점 ..... 21  
 제7조 공항 및 활주로 표고 ..... 21  
 제8조 공항 표준온도 ..... 21  
 제9조 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 21  
 제10조 포장면 지지강도 ..... 23  
 제11조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 23  
 제12조 공시거리 ..... 24  
 제13조 필수공항정보의 작성 및 관리 ..... 24  
 제14조 항공정보자료 ..... 24  
 제15조 공항운영계획 정보의 작성 및 관리 ..... 25

**제2절 공항상태보고**

제16조 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 ..... 25  
 제17조 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 26

**제3장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

제18조 일반 ..... 28  
 제19조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 28  
 제20조 공항운영규정의 관리 ..... 29  
 제21조 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 ..... 29  
 제22조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 30  
 제23조 공항운영규정의 심사 등 ..... 30  
 제2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30  
 제25조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 30  
 제26조 공항운영자의 안전정보교환 ..... 31

**제4장 공항운영(Airport Operating Procedures)**

**제1절 자격관리**

제27조 자격관리 요건 ..... 33  
 제28조 교육훈련 ..... 33

**제2절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29조 점검주기 ..... 35  
 제30조 점검방법 ..... 36  
 제31조 점검절차 ..... 36  
 제32조 포장지역 점검 ..... 36  
 제33조 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 ..... 37  
 제34조 이동지역내 지장물 상태 점검 ..... 37  
 제35조 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 38  
 제36조 활주로 상태보고 ..... 38  
 제37조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 ..... 40

**제3절 이동지역 유지보수**

제38조 일반 ..... 41  
 제39조 도면의 관리 ..... 41  
 제40조 표지(Markings)의 관리 ..... 42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 42  
 제42조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 42  
 제43조 활주포장 덧씌우기 ..... 44  
 제44조 이동지역의 지지강도 ..... 44  
 제45조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 45  
 제46조 활주로의 고무 제거 ..... 45  
 제47조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 48

**제4절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제48조 작업통제 책임 및 의무 ..... 48  
 제49조 일상 유지보수작업 ..... 48  
 제50조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 48  
 제51조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 48  
 제52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 49  
 제53조 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 ..... 50  
 제54조 이동지역의 차량 통제 ..... 51  
 제55조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 52  
 제56조 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등 ..... 52

**제5절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제57조 일반 ..... 52

제58조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 53

제59조 항공기 주기장 배정 ..... 54

제60조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 54

제61조 항공기 제트분사 및 강풍으로부터의 보호 ..... 54

제62조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 55

제63조 계류장의 청결유지 ..... 55

제64조 계류장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 56

제65조 계류장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 ..... 56

**제6절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66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수립 ..... 56

제67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 ..... 56

제68조 시설 및 운영요건 ..... 57

제69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 57

제70조 저시정운영절차 ..... 58

제71조 교육 및 훈련 ..... 59

**제7절 장애물의 통제**

제72조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기준 ..... 60

제73조 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 60

제74조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의 기준 ..... 60

제75조 장애물 관리 ..... 60

**제8절 공항시설**

제76조 공항의 시설기준 ..... 60

제77조 착륙대 내의 물체 등 ..... 61

제78조 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 ..... 61

제79조 유도로대의 폭 ..... 61

제80조 제방빙시설의 설치 ..... 62

제81조 공항사용의 제한 ..... 62

제82조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 62

**제9절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

제83조 항행안전시설 보호 ..... 63

제84조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운영 ..... 63

제85조 풍향등(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운영 ..... 63

제86조 표지(Markings)의 설치 ..... 63

제87조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 63

제88조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	66
제89조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 .....	66
제90조 노출등(Elevated lights) .....	66
제91조 매립등(Surface lights) .....	66
제92조 항공등화 광도 제어 .....	67
제93조 항공등화 기준 .....	67
제94조 표지판(Signs) .....	67
제95조 표시물(Markers) .....	68
<b>제10절 장애물 표시용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denoting obstacles)</b>	
제96조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 ..	68
제97조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	69
제98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및 관리 .....	69
<b>제11절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denoting restricted use areas)</b>	
제99조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	69
제100조 건설작업 및 기타 임시 사용제한지역 .....	69
제101조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 .....	70
제102조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 .....	70
<b>제12절 전력시설 등</b>	
제103조 예비전원공급(Secondary power supply) .....	70
제104조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 .....	73
제105조 감시(Monitoring) .....	73
제106조 울타리(Fencing) .....	74
제107조 보안등(Security lighting) .....	74
제108조 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 .....	74
제109조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 .....	75
<b>제13절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b>	
제110조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	76
제111조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	76
제112조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	76
제113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	77
제114조 교육 및 훈련의 확인 .....	77
<b>제14절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b>	
제115조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	77
제116조 법적 고려사항 .....	78
제117조 책임사항 .....	78

제118조 통신 .....	79
제119조 절차 .....	79
제120조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	79
<b>제15절 구조 및 소방</b>	
제121조 일반 .....	80
제122조 공항 구조소방등급의 결정 .....	81
제123조 소화제의 유형 .....	82
제124조 소화제의 양 .....	82
제125조 분사율 .....	84
제126조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	84
제127조 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	84
제128조 비상대응 요건 .....	85
제129조 비상 접근 도로 .....	85
제130조 소방대의 설치 .....	86
제131조 통신 및 경보시스템 .....	86
제132조 차량준비 요건 .....	87
제133조 차량 표지 및 조명 .....	88
제134조 구조 및 소방 직원 .....	88
제135조 구조 및 소방직원의 보호장비 .....	88
제136조 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 .....	89
제137조 위험지역(Critical area) .....	90
제138조 구조소방등급의 변경 .....	90
<b>제16절 활주로 안전</b>	
제139조 일반 .....	91
제140조 공항 활주로 안전팀 구성 .....	91
제141조 활주로 침범 방지 .....	92
제142조 활주로 이탈 방지 .....	93
제143조 활주로 혼동 .....	94
제144조 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	95
<b>제17절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b>	
제145조 자체 안전점검 .....	95
제146조 점검 시기 .....	96
제147조 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	96
제148조 점검 결과의 확인 .....	96
제149조 점검기록의 보관 .....	96
<b>제18절 제설계획(Snow plan)</b>	

제150조 일반 ..... 97  
 제151조 공항 시설계획 수립 ..... 98  
 제152조 눈더미의 최소 허용높이 기준 ..... 98  
 제153조 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 99

**제19절 공항 비상계획**

제154조 일반 ..... 99  
 제155조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00  
 제156조 비상사태의 유형 ..... 101  
 제157조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 101  
 제158조 비상통신시스템 ..... 102  
 제159조 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 102  
 제160조 비상연락망 관리 ..... 103  
 제161조 공항 격자지도(Airport Grid Map) ..... 103  
 제162조 격리주기위치의 지정 ..... 104

**제5장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제163조 일반 ..... 107  
 제164조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 107  
 제165조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시 준수사항 ..... 108

**제6장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제1절 차량등의 관리**

제166조 차량등의 등록 ..... 118  
 제167조 등록번호 등의 표시 ..... 118  
 제168조 안전검사 ..... 118

**제2절 운전자 관리**

제169조 운전자의 승인 ..... 119  
 제170조 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 119  
 제171조 운전승인현황 관리 ..... 119  
 제172조 운전자 변경신고 ..... 119

**제3절 이동지역 안전교육**

제173조 수행자에 대한 교육 ..... 120  
 제174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 120

**제4절 차량 등의 운행**

제175조	교통안전시설	121
제176조	통행방법	121
제177조	차량 등의 사용 및 취급	122
제178조	출입제한	122
제179조	안전조치	123
<b>제5절 지상안전사고</b>		
제180조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123
제181조	지상안전사고의 조사	123
제182조	지상안전사고 예방조치	123
<b>제6절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b>		
제183조	항공기 엔진 시운전 장소	124
제184조	긴급차량 출동보고	124
제185조	위험물 수송	124
제186조	이물질 제거	125
제187조	급유작업 등	125
제188조	공항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	126
<b>제7절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b>		
제189조	이의신청	126
제190조	규정 위반자 제지 및 퇴거	126
제19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	126
<b>제8절 보칙</b>		
제192조	협의회 구성·운영	126
제193조	세부 운영 규정의 제정	127

## 제7장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b>제1절 시설 운영</b>		
제194조	운영자의 책무	129
제195조	항공유 품질관리	129
제196조	종사자 근무계획	129
제197조	고장보고	129
제198조	근무제한	130
제199조	운영지침서 비치	130
제200조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130
제201조	비상대응절차 수립	130
제202조	비상훈련 실시	131

제203조 비상훈련 결과의 반영 .....	131
제204조 사고 시 조치 및 보고 .....	131
<b>제2절 유지보수</b>	
제205조 유지보수 계획 수립 .....	131
제206조 이력관리 .....	132
제207조 정기점검 .....	132
제208조 특별점검 .....	132
제209조 공구 및 예비품 .....	133
<b>제3절 교육훈련 등</b>	
제210조 교육훈련 운영 .....	133
제211조 교육훈련 계획 .....	133
제212조 교육훈련 과정 .....	133
제213조 종사자 자격기준 .....	133
제214조 교관의 자격 .....	133
제215조 교관의 임무 .....	134
제216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	134
<b>제4절 안전관리</b>	
제217조 안전교육 .....	134
제218조 지도점검 .....	135
제219조 운전정지 명령 .....	135
제220조 급유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	135
제221조 안전관리 .....	135
<b>제5절 보칙</b>	
제222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	135

**제8장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절 지하관로시설의 구축·관리·이용**

제223조 공사시 안전관리 .....	137
제224조 운영시 안전관리 .....	137
제225조 지하관로시설의 자료수집 및 관리 .....	137
제226조 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 .....	138
제227조 자료의 검토처리 .....	138
제228조 보고의무 .....	138

**제2절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29조 준용규정 ..... 139  
 제230조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 139  
 제231조 공간정보의 갱신 ..... 139  
 제232조 자료의 복구 ..... 140  
 제233조 장애대책 및 조치 ..... 140  
 제234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140  
 제235조 프로그램 관리 등 ..... 141  
 제236조 자료제공 ..... 141  
 제237조 자료제공의 제한 ..... 142

**제3절 보안관리**

제238조 보안관리 ..... 142

**제4절 보칙**

제239조 지도점검 ..... 142  
 제240조 전문기술지원기관 ..... 143  
 제241조 외주용역 ..... 143  
 제242조 예산지원 ..... 144  
 제243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 144

**제9장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절 일반사항**

제244조 세부기준 및 절차 ..... 146

**제2절 시설의 운영**

제245조 운영자의 책무 ..... 146  
 제246조 관리자의 책무 ..... 146  
 제247조 운전책임자의 의무 ..... 146  
 제248조 보수책임자의 의무 ..... 146  
 제249조 종사자의 의무 ..... 147  
 제250조 사용자의 의무 ..... 147  
 제251조 취급자의 의무 ..... 147  
 제252조 종사자 근무계획 ..... 148  
 제253조 제어실 설치·운영 ..... 148  
 제254조 제어실 보안 ..... 148  
 제255조 BHS 고장보고 ..... 148  
 제256조 근무 제한 ..... 148  
 제257조 운영지침서 비치 ..... 148  
 제258조 수하물의 안전조치 ..... 149

제259조 예비운영절차 수립·시행 ..... 149  
 제260조 비상대비 연습훈련 실시 ..... 149  
 제261조 비상대비 연습훈련 결과의 반영 ..... 150  
 제262조 사고 조치 및 보고 ..... 150

**제3절 유지보수**

제263조 유지보수 계획 수립 ..... 150  
 제264조 BHS 이력관리 ..... 150  
 제265조 점검 구분 ..... 151  
 제266조 정기점검 ..... 151  
 제267조 특별점검 ..... 151  
 제268조 공구 및 예비품 ..... 151  
 제269조 폐기물 관리 ..... 152

**제4절 교육훈련 등**

제270조 교육훈련 운영 ..... 152  
 제271조 교육훈련계획 ..... 152  
 제272조 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 152  
 제273조 교관의 자격 ..... 152  
 제274조 교관의 임무 ..... 153  
 제275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 153

**제5절 안전관리**

제276조 안전교육 ..... 154  
 제277조 지도점검 ..... 154  
 제278조 BHS 운전정지 명령 ..... 154  
 제279조 안전관리 ..... 154  
 제280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 154

**제10장 보칙**

제281조 재검토기한 ..... 156

부칙 ..... 156

[별표 1] 포장의 지지강도(ACN/PCN) 분류기준 .....	161
[별표 1] 포장의 지지강도(ACR/PCR) 분류기준<시행 2024. 11. 28.> .....	164
[별표 2] 공항운영규정 세부사항 .....	166
[별표 3]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신호의 종류, 의미 및 기준 .....	173
[별표 4]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기준 .....	174
[별표 5] 표시물(Markers) 기준 .....	175
[별표 6]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 .....	179
[별표 7]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기준 .....	180
[별표 8] 공항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 분류 .....	184
[별표 9]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할 최소 구조장비목록 .....	188
[별표 10] 구조 및 소방 차량의 최소 성능요건 .....	189
[별표 11] 최소 비상의료장비 .....	190
[별표 12]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점검항목 .....	192
[별표 13] 공항운영분야 안전성과 관리대상 항목 .....	193
[별표 14] 안전평가 처리절차 .....	194
[별표 15] 수용성 검토표 .....	195
[별표 16] 활주로 상태보고 절차 .....	197
[별표 17] 이동지역 점검 및 보고 .....	209
[별표 18] 이동지역 작업(WIP) .....	214
[별표 19] 활주로 길이 축소 운영 및 작업장 통제 절차 .....	217
[별표 20] 지장물(FOD) 관리 .....	220
[별표 21] 야생동물 위험관리 .....	224
[별표 22] 계류장 안전 .....	232
[별표 23]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ADP) 기준 .....	237
[별표 24]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제도 및 차량·장비 안전 요건 .....	244
[별표 25] 지상안전사고 보고계통 .....	248
[별표 26] 항공기 급유시설 점검내용 .....	249
[별표 27] 항공기 급유시설 교육훈련 과정 .....	250
[별표 28] 지하관로시설 점검표(Checklist) .....	251
[별표 29] 수하물처리시설 점검내용 .....	252

[별지 1] 필수공항정보 ..... 256

[별지 2]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 262

[별지 3] 지상안전사고 보고서 ..... 263

[별지 4] 지상안전사고 진술서 ..... 266

[별지 5] 목격자 진술서 ..... 267

[별지 6] 항공기 급유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 결과통보서 ..... 268

[별지 7] 사고보고서 ..... 269

[별지 8]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 270

[별지 9]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기록부 ..... 271

[별지 10] 교육훈련평가보고서 ..... 272

[별지 11]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 273

[별지 12]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 274

[별지 13]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 275

[별지 14]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 ..... 276

[별지 15]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 277

[별지 16] 공간정보 제공요청 및 승인서 ..... 278

[별지 17] 공간정보 교부대장 ..... 279

[별지 18] 지하관로시설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 결과(보고서) ..... 280

[별지 19]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 결과통보서 ..... 281

[별지 20]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 개선요청서 ..... 282

[별지 21]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 ..... 283

[별지 22] 수하물처리시설 사고보고서 ..... 284

[별지 23]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 285

[별지 24]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기록부 ..... 286

[별지 25] 수하물처리시설 교육훈련 평가보고서 ..... 287

[별지 26]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 기본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288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
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은 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공항 지원시설 중 항공기 급유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 내 지하에 시설된 각종 관로시설에 대한 도면 작성, 비치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운영자 및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에 적용한다.
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 적용한다. 다만,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는 제3조제13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은 항공유 저장 및 공급시설이 설치된 공항의 급유시설 운영자 및 사용자 등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한다.

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공항 내에서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지하관로시설을 소유·관리·운영하는 모든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한 공항의 공항운영자, 관리자 및 사용자 등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기관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2.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지면 사이의 연결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
3.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향의 구역을 말한다.
4. “갱신”이란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의 조사·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 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 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 다. CAT-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 라. CAT-I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I) : 결심고도가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6.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

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7.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8.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

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나.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

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

라.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항운영증명 공항(Certified airport) :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나 받을 예정인 공항으로 공항운영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Class I 공항 : 영 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2) Class II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3) Class III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4) Class IV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나. 일반 공항 : 제가목 이외의 공항

10. “공항 지하관로시설(이하 “지하관로시설”이라 한다)”이란 공항 내 옥외 지하에 시설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지반정보(보링정보) 및 공동구 등을 말한다.

11.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란 공항 지하관로 시설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관리되는 지하관로시설 관련 도형 및 속성정보 등을 말한다.

12.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시스템”(이하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관리주체가 지하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탐사, 수집·저장, 조작·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일련의 정보체계를 말한다.
13. “공항 수하물처리시설(BHS, Baggage Handling System)”이란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공항시설 보호구역(Airside,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공항의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 및 인접 지형지물,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이동지역으로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5. “공항시설 일반구역(Landside, 이하 “일반구역”이라 한다)”이란 보호구역(Airside)을 제외한 공항 경계 내의 일반구역을 말한다.
16. “공항식별표지판(Airport identification Sign)”이란 공중에서 공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설치된 표지판을 말한다.
17. “공항운영계획 정보(Aerodrome Operational Planning Informa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8.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19.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1. “공항표고(Airport elevation)”란 착륙구역(Landing area)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22. “공항표점(Airport reference point)”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23. “관리대상항목”란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정, 관리되는 주요 항공안전장애 등을 말한다.

24. “관리주체”란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말한다.
25. “관리책임자”란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6.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항공기, 차량 및 장비의 안전과 운행질서를 위하여 설치된 표시물(Markers), 표지(Markings), 표지판(Signs) 등을 말한다.
27. “국가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관련 제반 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28. “국제표준보고방식(GRF, Global Reporting Format)”이란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국제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0.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1582년에 도입하여 현재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서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365일 5시간 48분 45.5초)에 근접한 달력을 말한다.
31. “급유시설 운영”이란 항공유 저장 및 급유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
32.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 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3. “달력(Calendar)”이란 1일단위로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불연속의 시간기준계를 말한다.
34. “대기구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5. “데이텀(Datum)”이란 다른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양 또는 양의 집합을 말한다.
36.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37. “도로정지위치(Road holding position)”란 차량이 정지하여야 할 위치를 말한다.

38. “도형정보”란 지하관로시설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서 수치지도, 지하관로시설도, 인화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자료 등을 말한다.
39. “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40.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41. “방빙유효지속시간(Holdover time)”이란 방빙액이 처리된 항공기의 표면에 결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을 말한다.
42.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
43.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44.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
45.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
46.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MDB, Aerodrome mapping database)”란 구조화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
47. “사용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8. “사용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유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항공기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49. “속성정보”란 도형자료에 대한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
50.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취항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51.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란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2.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용”이란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
53. “수하물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이란 수하물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54. “순환중복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란 자료의 손상 또는 변질여부에 대한 확인단계를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인 표현방식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55.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
56. “신뢰도(항공자료)(Integrity(aeronautical data))”란 새로운 자료가 입력될 때까지 또는 인가된 수정이 발생할 때까지 항공자료 및 수치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정도를 말하며 신뢰도 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 가. 중요자료 : 손상된 중요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
  - 나. 필수자료 : 손상된 필수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다. 일상자료 : 손상된 일상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경우
57. “신호지역(Signal area)”이란 지상신호표시를 위하여 공항에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
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의 구성, 책임,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는 조직적 접근방법을 말한다.
59.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란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행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조직 내 책임있는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60. “안전목표(Safety Goal)”란 수용가능한 안전도(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안전기준)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6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성과지표를 감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값을 말한다.
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s)”란 관리대상항목의 현재 안전수준 또는 실태를 나타내는 척도 또는 기준값을 말한다.

- 63.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
- 64.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란 기준 및 규정과 서로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관리과정의 일부분을 말한다.
- 65. “업무제공자(SP, Service Provider)”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분야 등에서 항공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66. “운영자”란 항공기 급유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급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 다. 제가목 또는 제나목의 항공기 급유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위탁운영자’
- 67. “운전책임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전자를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 68. “위험(Risk)”이란 위험요소(Hazard)로 인한 잠재적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확률(Probability)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69.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송 중 인명 및 재산에 크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한다.
- 70. “위험요소(Hazard)”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 7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 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 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 72.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 73. “유지보수책임자(이하 “보수책임자”라 한다)”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보수자를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 74.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이란 비행장시설을 사용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 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를 말하며, 이 분류번호 및 문자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항공기 성능 및 제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번호와 분류문자로 구성된다.

<표 1>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분류요소 1		분류요소 2	
분류번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분류문자	항공기 주 날개의 폭
1	800m 미만	A	15m 미만
2	800m 이상 1200m 미만	B	15m 이상 24m 미만
3	1200m 이상 1800m 미만	C	24m 이상 36m 미만
4	1800m 이상	D	36m 이상 52m 미만
		E	52m 이상 65m 미만
		F	65m 이상 80m 미만

- 75.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
- 76.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 77. “인적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학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한계나 능력을 말한다.
- 78. “인적요소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공항의 설계, 증명, 훈련, 운영 및 유지보수 시 적용하고 인적능력을 고려하여 인간과 타 시스템 간의 안전한 연계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 79.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교통관제의 목적으

- 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경우 항공기 및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
80. “자료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원천자료 또는 수정인가 된 이후 항공자료 및 자료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도를 말한다.
  81. “자료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일치정도를 말한다.
  82. “자료품질(Data quality)”이란 정확도, 완결성,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및 형식과 관련하여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의 정도, 또는 신뢰수준을 말한다.
  83. “자체검사자(Self Inspector)”란 공항운영자가 관할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자체 점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84. “장비”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용구를 말한다.
  85.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
  86.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Procedures)”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의 한 범주으로써, 활주로 가시범위(RVR)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차량이 안전한 이동하기 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특별운영절차를 말한다.
  87. “전문기술지원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공간정보의 갱신과 정보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88. “전방향표지시설(VOR) 자기편차(Station declination)”란 VOR의 자북과 진북의 편차를 말하며, VOR 국(Station)을 조정할 시점에 결정한다.
  89.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90.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91.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

- 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향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92. “정표고(Orthometric height)”란 지표면의 한 점에서 중력 방향을 따라 관측한 지오이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93. “정확도(Accuracy)”란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94. “제방빙시설(De/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방빙 작업 후 발생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5.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96. “주 활주로(Primary runway)”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97. “주의지점(Hot spot)”이란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지역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98. “중요 항공기(Critical aeroplane)”란 비행장 설계 등 계획단계에서 물리적 기반시설 및 시설의 관련 요소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항공기의 형식을 말한다.
  99. “지방항공청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및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100. “지상안전사고”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시설, 차량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시설, 차량등에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는 제외한다.
  10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이란 이동지역 내에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가 적절한 이동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 정보, 조언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충돌방지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동지역 내의 항공기, 차량, 사람의 이동에 관한 안내 제공 및 통제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102. “지상조업도로”란 기동지역, 계류장 외의 지역으로서 사람, 차량 및 장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를 말한다.

- 103. “지오이드(Geoid)”란 평균해수면을 육지부분까지 연장하여 지구의 전 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였다고 가정한 곡면을 말한다.
- 104.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이란 기준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
- 105. “지장물(FOD, Foreign Object Debris)”이란 미작동하거나 항공학적 기능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동 지역 내 무생물을 말한다.
- 106.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하관로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107. “차량”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를 말한다.
- 108. “착륙복행(Balked landing)”이란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아래의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착륙기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 109. “최대이륙중량에서의 최소이륙활주거리”란 인가된 비행교범 또는 비행기 제작사의 자료에 의하여 최대이륙중량, 해면고도, 표준대기 상태, 무풍상태 및 활주로 경사도가 “0”인 조건에서 이륙하는데 필요한 최소 길이를 말한다. 이 거리는 항공기별 balanced field length 또는 이륙거리를 의미한다.
- 110. “측지데이텀(Geodetic datum)”이란 지구와 좌표계의 관계를 기술한 매개변수의 집합이며, 실제 지표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특정 크기와 형태의 회전타원체상 위도, 경도 및 높이를 결부한 경험적 관계이다. 보통 8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타원체의 차원을 결정하는 변수 2개, 지구질량중심에 대한 타원체의 중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 3개, 그리니치기준자오선과 지구의 평균 자전축에 대한 타원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 3개이다. 측지원자 또는 측지원점 요소라고도 한다.
- 111. “타원체고(측지고)(Ellipsoid height(Geodetic height)”란 준거타원체상의 높이를 말한다. 지구표면상의 한 점에서 타원체의 법선에 연직으로 측정하며, 측지고라고도 한다.
- 112. “포장 등급번호(PCN, Pavement classification number)”란 항공기 운항의 제한이 없는 운영에 대한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 112. “포장 분류등급(PCR, Pavemen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시행 2024. 11. 28.>
- 113.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114.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115.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
    - 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
  116. “항공교통 준사고(Air Traffic Incident)”란 항공기 근접비행, 활주로상의 장애물, 활주로침범 등과 관련하여 항공기에게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
  117. “항공기 급유시설”이란 항공기의 연료인 항공유를 최적상태로 항시 유지하여 고품질의 항공유를 제공하고,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Hydrant System)으로 공급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118. “항공기 급유시설 제어실”이란 항공유 입·출하관리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9. “항공기 급유업체”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120. “항공기 등급번호(ACN,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120. “항공기 분류등급(ACR, Aircraf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시행 2024. 11. 28.>
  121.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123. “항공업무 수행자”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영 제3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항공유 저장·급유시설 및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운전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보수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124의1.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항공기 여객의 수하물을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 투입하거나 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반출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하역업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25.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협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
  - 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
  - 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협요소로 확인되는 경우
126.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전파 및 비행계획서의 처리,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사고 초동조사·보고와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27.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 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28. “현장책임자”란 항공유의 저장,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로서 종사자를 지휘·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129. “활주로 상태보고(RCR, Runway condition report)”란 활주로 표면 상태와 그것이 비행기 이착륙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보고를 말한다.
130. “활주로 상태부호(RWYCC, Runway condition code)”란 활주로 상

태보고에 사용되는 활주로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131.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 Runway condition assessment matrix)”이란 일련의 관찰된 활주로 표면상태와 조종사로부터 보고받은 활주로 제동상태 등 관련 절차를 활용한 활주로 상태부호(RWYCC)의 평가 모형을 말한다.
132.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인가받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침범되는 경우를 말한다.
133. “활주로 표면상태(Runway surface condition(s))”란 활주로 상태보고에 사용되는 활주로 표면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항공기 성능목표를 위한 활주로 상태부호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가.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 : 활주로 표면상 습기가 없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
  - 나. 젖은 활주로(Wet runway) : 활주로 표면이 축축함이나 3mm 깊이 이하의 물기로 덮여 있는 상태
  - 다. 미끄럽게 젖은 활주로(Slippery wet runway) : 활주로 중요 부분의 표면 마찰 특성이 저하되었다고 결정된 상태
  - 라. 오염된 활주로(Contaminated runway) : 장방향으로 이루어진 활주로 표면 구역 내의 상당한 부분이 활주로 표면상태 용어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물질로 덮여 있는 상태
  - 마. 활주로 표면상태 용어(Runway surface condition descriptors)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활주로 상태보고 내용에 국한되고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정의를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 (1) 압설(Compacted snow) : 단단한 덩어리로 압축된 눈으로, 현존하는 항공기 바퀴의 압력과 하중으로 표면을 운항했을 때 상당한 추가 압축이나 바퀴자국을 남기지 않는 상태
    - (2) 건조한 눈(Dry snow) : 눈덩이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눈
    - (3) 서리(Frost) : 서리는 온도가 영하인 표면위의 공중에 떠 있는 습기로부터 형성된 빙정으로 구성됨. 서리는 서리에 결정이 독자적으로 자란다는 점과 그러므로 더 과립상의 질감을 가진다는 점에서 얼음과 다름
      - 주1) 영하(Below freezing)는 물의 어는점과 같거나 그 이하인 기온을 말함(0℃)
      - 주2) 특정 조건 시 서리는 표면을 아주 미끄럽게 할 수 있고, 제동상태 감소가 적절하게 보고됨

- (4) 얼음(Ice) : 차갑고 건조한 상태에서 얼어있는 물 또는 얼음으로 변한 압설
  - (5) 진창(Slush) :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 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
  - (6) 고여 있는 물(Standing water) : 깊이가 3mm 초과인 물
  - (7) 젖은 얼음(Wet ice) : 위에 물기가 있는 얼음이나 녹고 있는 얼음  
 주) 어는 강수(Freezing precipitation)는 비행기 성능 관점에서 젖은 얼음과 유사한 활주로 상태를 야기할 수 있고 젖은 얼음은 표면을 매우 미끄럽게 할 수 있다. 이는 이 기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동상태 감소가 적절하게 보고됨
  - (8) 젖은 눈(Wet snow) : 잘 압축되고, 단단한 눈덩이를 만들 수 있지만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충분한 수분을 포함하는 눈
134.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35. “활주로/유도로 이탈(Runway/taxiway excursion)”이란 항공기가 이륙, 착륙 주행, 지상이동(taxiing) 또는 기동(manoeuvring)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유도로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이탈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36.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137. “활주로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터의 기점을 말한다.
  138. “활주로 이설시단(Runway 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활주로의 시단을 말한다.
  139.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140. “활주로 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
  141.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4조(공통 기준계, Common reference system)

- ① 수평(측지)기준계(Horizontal(Geodetic)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기준계-1984(WGS-84)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고된 항공지리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기준 데이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 ② 지오이드면에 대한 중력관련 높이(표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평균해수면(MSL) 데이텀은 수직기준계(Vertical reference system)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그레고리력과 협정세계시(UTC)를 시간기준계(Temporal reference system)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시간기준계가 사용될 때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5조(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 증명을 받은 후 공항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항안전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공항의 안전검사를 위하여 공항 내·외의 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검사관이 해당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거나, 또는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개시 최소 20일 이전에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 없이는 해당 시설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⑦ 공항운영증명서를 받은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및 공항 내 유관기관에 공항운영증명 취득사실을 알리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항 명칭, ICAO 지역부호, 공항운영증명서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공항자료

## 제2장 공항자료

### 제1절 일반

**제6조(공항표점)**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항의 표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공항표점은 공항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정한다.
2. 공항표점의 위치는 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항공관리사무소 또는 공항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도, 분, 초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항 및 활주로 표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항 및 활주로 표고 등을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륙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공항표고)의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은 0.5m의 정확도로 측정
2. 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각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활주로 구간에서 특히 높거나 낮은 지점의 표고에 대하여 0.5m의 정확도로 측정
3.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접지구역의 가장 높은 표고에 대하여 0.25m의 정확도로 측정

**제8조(공항 표준온도)**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항 표준온도를 정하여야 한다.

1. 공항 표준온도는 섭씨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공항 표준온도는 연중 가장 더운 달(가장 더운 월 평균 기온이 있는 달), 일일 최고 기온의 월 평균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는 최근 5년간을 평균하되 5년 주기로 산출한다.

**제9조(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공항 제원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활주로 : 100분의1로 표기한 진방위, 활주로 명칭·길이·폭·이설시단의

- 위치(반올림한 미터), 경사도, 포장종류, 활주로 종별 및 CAT-I 정밀 접근활주로에 대하여는 무장애구역의 설치 유무
  - 2. 착륙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정지로 : 길이·폭(반올림한 미터) 및 포장종류
  - 3. 유도로 : 명칭, 폭, 포장종류
  - 4. 계류장 : 포장종류, 항공기 주기장
  - 5. 개방구역 : 길이(반올림한 미터) 및 개방구역의 형태
  - 6. 접근절차를 위한 진입등시스템 종류, 진입각지시등 종류, 진입각지시등 설치 활주로 명칭, 진입각지시등 설치위치(활주로의 좌, 우측), 진입각도, 조종사가 활주로 시단에서 진입각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 높이(MEHT), 진입각지시등의 중심축이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 그 편차(좌, 우 각도), 활주로·유도로·계류장의 표지, 등화 및 기타 시각적 안내시설(활주로경계등, 일시정지위치등 및 정지선등) 또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의 위치 및 형식, 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 가용성
  - 7. 전방향표지시설(VOR) 체크포인트의 위치 및 주파수
  - 8. 표준유도경로(standard taxi-routes)의 위치와 명칭
  - 9. 계기착륙시설(ILS)을 구성하는 방위각시설(Localizer)과 활공각시설(glide path)의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반올림한 미터)
  - 10.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범위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측정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활주로시단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 2. 유도로중심선 지점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 3. 항공기 주기장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 ③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형 및 장애물 구역의 제2구역(비행장 부근) 중 공항경계 안에 위치한 부분과 제3구역(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90m 및 이동지역의 다른 부분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까지 연장된 이동지역의 인접 지역)에 있는 장애물의 지리적 좌표는 도, 분, 초, 1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물의 최고 높이, 형태, 표지 그리고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1.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최신의 비행전정보(pre-flight information) 및 비

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정보의 제공

- 가. 공항 상태 및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정보
  - 나. 관할 구역 내의 관련 시설, 업무,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 다. 운영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밖의 정보
2. 항행시스템을 변경하기 전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관련 정보의 고시를 준비·마련·출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적시에 제공
  3. 항공정보관리절차(이하 “AIRAC”이라 한다)에 고시되어야 하는 항공지도 또는 컴퓨터기반의 항행시스템에 관한 항공정보의 변경은 특히 중요하므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원시자료/정보(raw data/information)를 제공할 경우에는 항공데이터의 최종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AIRAC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발효일 기준 최소 9주 전, AIP 수정판/보충판의 경우에는 발간일 기준 최소 3주 전까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
  4.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 자료를 제공

**제10조(포장면 지지강도)** 공항운영자는 별표 1에 따라 이동지역 내 포장면의 지지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11조(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개 이상의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1.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는 계류장에 지정하여야 한다.
  2.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그것이 설치되는 구역의 평균표고로서 미터로 나타내어야 한다.
  3.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평균표고에 대하여 3m(10ft)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주1) 계류장 안에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는 목적은 항공기로 하여금 주행출발 승인을 얻기 전에 고도계 점검이 가능하게 하고, 계류장 출발 후에는 이 점검을 위해 정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주2)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계류장 전 구역은 고도계 점검위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12조(공시거리)**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활주로와 관련한 거리를 계산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터단위로 반올림한다.

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2. 이륙가용거리(TODA)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4. 착륙가용거리(LDA)

**제13조(필수공항정보의 작성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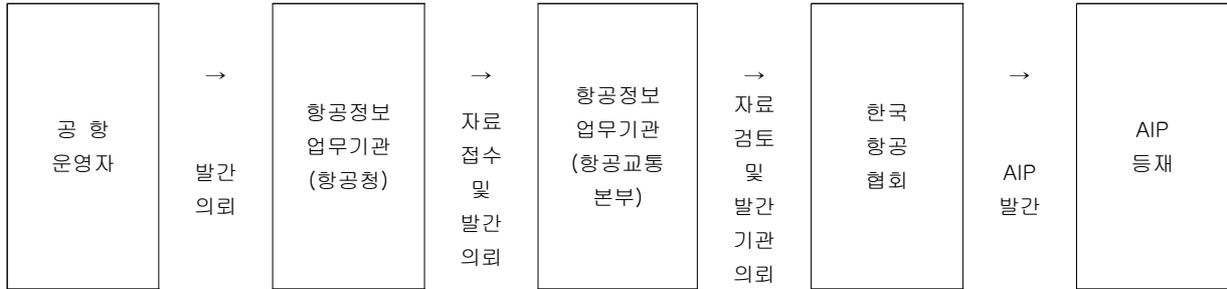
-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필수공항정보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필수공항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정보자료)**

- ① 공항운영자는 비행장 관련 항공정보자료를 최종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확성 및 무결성 분류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한 자료와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 등재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비행장 관련 항공데이터에 관한 정확도 및 무결성 분류와 관련된 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 ③ 공항운영자는 안전 또는 성능기반운항에 이점이 있는 비행장에 대해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이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는 수집된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선택함에 있어 사용목적에 고려해야 한다.
- ⑤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는 양호 또는 중간정도 수준에서 제공하고 정확성의 수치요건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 ⑥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정보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및 저장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의뢰한 항공정보자료가 AIP로 발간·배포된 경우에는 그 신뢰도(발간 의뢰자료의 정확한 등재 여부)를 점검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 등재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표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항공정보자료 처리절차도



제15조(공항운영계획 정보의 작성 및 관리)

- ① 국제공항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제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해당 공항 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공항상태보고

제16조(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

-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이동지역의 상태와 관련시설의 운용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이동지역의 상태 및 관련 시설들의 운영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고, 항공기에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상 중요한 정보는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공항상태 정보는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항 내 시설물의 신설 또는 보수공사

2.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요철이 있는 표면 또는 파손된 표면
  3.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
  4.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부근 눈더미나 바람에 쌓인 눈
  5. 활주로, 유도로 부근 또는 계류장 표면상의 제방빙액 또는 기타 오염 물질(진흙, 먼지, 모래, 화산재, 오일 및 고무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 일시적인 위험상태(주기된 항공기 포함)
  7. 시각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운용상태
  8. 상시전원 또는 예비전원 공급의 고장
-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의 수정 및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통보 책임자 지정 등 항공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 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공항운영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내용을 기록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장 공항운영규정

### 제3장 공항운영규정

#### 제18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9조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에는 공항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관계직원이 안전에 관련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규정에 수록된 내용은 법, 영 및 규칙과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이용자에게 혼선이 없도록 업무의 책임과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공항의 운영과 관계되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려사항이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공항의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이나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항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준 미달사항과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19조(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 ①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2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하는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1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규칙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공항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용 개시일 25일 이전까지 반드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항운영규정의 관리)**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공항운영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내용을 별도로 발췌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원본과 사본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규정 사본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여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각 권의 맨 앞장에는 개정 페이지를 마련하여 개정 번호, 수록 일자, 개정한 사람의 서명 그리고 해당하는 페이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에 안전목표를 수록하고 소속직원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을 위하여 공항운영규정 이용방법을 서문에 설명해야 한다.

**제21조(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어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각 페이지 및 문단에 번호를 붙일 때에는 순차적으로 체계화하여 참조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 글자체를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름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1. 공항운영자에 의하여 작성 및 서명된 것일 것
  - 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것
  - 3. 각 페이지마다 제정 및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두에

개정기록부를 포함할 것

- 4. 준비, 검사 및 인가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 ⑤ 규칙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공항 비상계획
  - 2. 시설계획
  - 3. 표지(Markings) 도면
  - 4. 표지판(Signs) 도면

**제22조(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공항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 작성요령은 이 기준 제2장 내지 제4장 8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3조(공항운영규정의 심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사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에 관해서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2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위원장)
- 2.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각 과장
- 3. 공항안전검사관 3명 이상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항공안전전문가 2명 이상

**제25조(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5항, 제32조제2항 및 이 기준 제2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행안전 확인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국지 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 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 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안전평가 및 수용성 검토가 관련 이해자 간에 적절히 조율되었는지,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여 평가하였는지, 위험저감 방안이 적절히 위험을 다루는지, 이행을 위한 시간적 제한사항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공항운영자의 안전정보 교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 관계기관 및 업체 간에 다음의 방법 등을 통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는 매년말(12월) 안전정보 교환실적을 국토 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2. 공항안전 관련 회의 등을 통한 분석자료 제출

## 제4장 공항운영

## 제4장 공항운영

### 제1절 자격관리

**제27조(자격관리 요건)** 공항운영자는 이 기준과 공항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제28조(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자, 구조 및 소방 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소방직원과 계류장 관리업무,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직원 및 초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전입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항운영 전반적인 사항의 기본지식 교육훈련 1주
2. 직무교육훈련(OJT) : 신규직원 및 전입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이 관련업무 시범 및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초기교육훈련 내용의 재교육훈련,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2년 주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자격부여, 정기 및 재자격부여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자격부여교육훈련(Qualification Training) : 제145조제1항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145조제4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1주
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수행 이후 검사지식의 재교육훈련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1주(2년 주기)
3.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여금 자체검사자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재교육 1주.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으로 대체 가능

④ 공항운영자는 교육훈련의 교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해 3년 이상의 충분한 경험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
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
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5. 항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6.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공항안전검사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기타 항공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구조 및 소방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 기준 제15절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직원은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지, 표지판, 등화를 포함하는 공항 관련 사항
2. 공항규정에 수록된 비행장 절차
3. 공항 비상계획
4. 항공고시보 발간 절차
5. 활주로 상태보고(RCR) 절차의 시작과 종료
6. 공항 차량운전 규정
7. 이동지역에서의 항공교통관제절차
8. 무선교신방법
9. ICAO 알파벳 발음법(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비행장 관제에 사용되는 용어
10. 공항 검사 절차와 기술
11. 활주로 오염 유형 및 보고
12.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의 평가 및 보고
13.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사용
14.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유지관리
15.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의 평가 및 보고와 마찰측정 장비사용과 관련된 부정확함에 대한 인식

16. 저시정 절차

⑦ 공항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을 최소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29조(점검주기)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규정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는 이동지역 점검주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점검여부, 횟수, 구역,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Class I 공항의 활주로 : 일일 4회

나. Class II 또는 III 공항의 활주로 : 일일 3회

다. Class IV 공항의 활주로 : 일일 2회

라. Class I, II, III 또는 IV 공항의 유도로, 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 일일 2회

<표 1-2>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

공항운영등급	Class I	Class II 또는 III	Class IV
활주로	일일 4회	일일 3회	일일 2회
유도로, 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	일일 2회	일일 2회

2. 활주로의 경우에는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요청 시 추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주)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의 판단기준은 제36조 및 별표 16을 따른다.

3. 비포장지역(잔디 지역 포함)의 경우에는 항공기 통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인접포장지역과 동일한 주기로 점검하고, 그 외의 비포장지역은 노면상태의 저하를 감시할 수 있는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해당 공항의 특수한 운항환경으로 제2항에 따른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에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점검방법)**

- ① 공항운영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최소 점검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 점검표(공사 자체 점검표임/공항운영규정 별지1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당해 공항 점검지역의 면적과 거리를 고려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지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점검은 가능한 저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이동지역 점검 방법 및 검사 수준에 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1조(점검절차)**

-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점검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사전 협조
    - 가. 점검시작 전 점검지역 및 예정시간 등의 사전 통보
    - 나. 활주로 및 유도로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방법 또는 횡단 등의 방법
    - 다. 무선교신 유지방법
  - 2. 항공기 이·착륙 반대방향으로의 활주로 점검 실시 등 점검방법과 안전수칙
  - 3. 점검 종료보고
  - 4. 점검시간의 기록 등 점검일지 작성
- ② 이동지역 점검 절차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2조(포장지역 점검)**

- 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포장지역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엔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의 존재 여부 및 고무퇴적물
  - 2. 포장면의 균열 및 파손 여부
  - 3. 표면의 배수상태 및 비가 온 후 침수지역의 확인
  - 4. 등화시설의 파손 여부

- 5. 표지 및 표지판의 상태
  - 6. 매립등의 상태
  - 7. 급유구(급유전) 등의 피트(Pit)덮개 상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지역 점검 중 활주로 시단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활주로 접지구역의 도색상태
  - 2. 진입등시스템 및 시단등의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 인한 손상 유무
  - 3.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청결상태 및 지장물의 방치유무

**제33조(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비포장지역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등화, 표지판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 여부
  - 2. 침하부분에 대한 관찰 및 식별표시
  - 3. 보고되지 않은 항공기 바퀴 자국
  - 4. 표지판 및 표시물의 상태
  - 5. 포장지역과 인접한 잔디지역의 지반 상태(특히, 항공기가 이동하는 포장면에 가까운 부분의 상태를 확인 기록)
  - 6. 물이 고여 있는 잔디지역 확인 및 보고(상습 침수구역은 우선 보고)
  - 7. 잔디지역과 포장구역 간 높이의 현저한 차이
- ② 공항운영자는 등화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와 조류 등 야생동물이 유인되지 않도록 잔디구역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초작업을 하는 때에는 풀의 높이에 대하여 착륙대내에서 약 15cm 이내로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약 15 내지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생태환경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에는 잘려진 풀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34조(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중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지장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별표 20과 같이 지장물(FOD)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적인 지장물을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 해당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표지 및 장애등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도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점검중 등기구 파손 등과 같은 위험스러운 상태
2. 항공기 부분품이나 바퀴 부속품의 발견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장애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의 장애지역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주로 갓길 등 바깥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에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가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표면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활주로 또는 그 일부가 미끄럽게 젖은(Slippery Wet) 상태인 경우에는 비행장 이용자들에게 활주로 상태보고(RCR)와 항공고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된 활주로 또는 포장된 활주로의 일부분이 제47조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최소마찰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항공고시보를 통해 관련된 비행장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활주로 상태보고)**

① 활주로 상태보고는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로 인해 활주로 표면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활주로 상태부호(RWYCC)의 변화
2. 오염 종류(Type)의 변화
3. 오염물질 범위 백분율(별표 16, 표16-1)에 따른 보고 대상 오염범위의 변화

4. 오염물질 깊이 측정(별표 16, 표16-2)에 따른 오염 깊이의 변화
  5.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정보의 변화 (예)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 보고,관계기관의 인지로 요청되는 경우
- ② 활주로 상태보고는 활주로는 더 이상 오염되어 있지 않을 때까지 중대한 변화를 계속 반영하여야 하며, 활주로는 더 이상 오염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습윤(WET) 또는 건조(DRY) 상태를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활주로 상태보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활주로 상태보고 상세절차는 별표 16을 따른다.
  2. 사용활주로는 오염되었을 때마다, 활주로는 각 3분의 1구역의 오염물질의 깊이와 범위를 평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압설, 얼음으로 덮인 활주로 표면 평가의 일부로 마찰 값이 사용될 경우, 마찰측정 장비의 성능은 「공항 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포장면상태 관리에 관한 활주로 마찰력 측정장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압설, 얼음 외의 다른 오염물질로 덮인 활주로는 표면상태에 대한 마찰 값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주) 눈, 진창과 같은 흩어져 있는 오염물질(Loose Contaminant)에 대한 마찰값은 마찰측정 장비의 견인 효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
- ④ 활주로 표면상태는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에 따라 활주로 상태부호(RWYCC)와 다음의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압설(COMPACTED SNOW)
  2. 건조(DRY)
  3. 건조한 눈(DRY SNOW)
  4. 압설 위 건조한 눈(DRY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5. 얼음 위 건조한 눈(DRY SNOW ON TOP OF ICE)
  6. 서리(FROST)
  7. 얼음(ICE)
  8. 진창(SLUSH)
  9. 고여있는 물(STANDING WATER)
  10. 압설 위 물(WATER ON TOP OF COMPACTED SNOW)
  11. 습윤(WET)
  12. 젖은 얼음(WET ICE)

- 13. 젖은 눈(WET SNOW)
- 14. 압설 위 젖은 눈(WET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 15. 얼음 위 젖은 눈(WET SNOW ON TOP OF ICE)
- 16. 화학 처리된 상태(CHEMICALLY TREATED)
- 17. 흩어져 있는 모래(LOOSE SAND)

주1) 활주로 표면상태는 PANS-Aerodromes(Doc 9981)에 설명된 방법을 통해 조종사가 적절한 항공기 성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2) 단독 또는 다른 관찰값과 합쳐진 활주로 표면상태는 항공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활주로 상태부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결정적인 기준이다.

주3) '화학 처리된 상태', '흩어져 있는 모래(LOOSE SAND)'라는 용어는 항공기 성능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나, 활주로 상태평가 보고 시 상황인식에 사용된다.

**제37조(활주로 표면 마찰측정)**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주로 마찰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 1. 활주로의 경사 또는 침하 등으로 인하여 활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배수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되거나 판단될 경우
- 2. 활주로 상의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마찰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측정구간은 측정 속도에 따른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필요한 거리를 제외한 전체 활주로 길이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것.
- 2. 측정위치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중심선 양쪽의 구간을 측정할 것. 다만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가 모두 운항하는 공항은 5m로 한다.
-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의 경우에는 마찰측정 바퀴에 동일한 양(수심 1mm)의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를 인위적으로 젖어있는 활주로(Wet runway)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동살수(Self-wetting) 기능이 구비되고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 빈도는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의 경

- 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비가 오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추가적인 마찰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마찰측정 결과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마찰측정을 실시한 경우, 이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각 활주로별 마찰측정결과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활주로 마찰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제2항 제1호에 따른 측정제외구간의 활주로 표면상태 포함)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를 감시하고 필요시 고무제거 작업 등 필요한 유지보수 조치를 적기에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찰측정 장비의 성능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포장면상태 관리에 관한 활주로 마찰력 측정장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활주로 표면 마찰을 측정하는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받고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마찰측정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공항운영자는 정확한 활주로 마찰계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주로 마찰측정장비를 장비운영교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IV 공항의 경우에는 최소 장비점검주기를 월 1회로 할 수 있다.

### 제3절 이동지역 유지보수

#### 제38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안전성, 정시성 및 원활한 운항에 장애가 없도록 공항의 제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적용은 인적능력을 고려하여 사람과 타 시스템 간의 안전한 연계를 구현할 수 있는 인적요소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9조(도면의 관리)**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각지원 시설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유지보수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공도면을 확보·비치할 것.
- 2. 준공도면은 현장에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

리할 것.

3.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면의 정확성 등을 1년 1회 이상 검토할 것.

**제40조(표지(Markings)의 관리)** 공항운영자는 포장지역의 표지 재도색에 대한 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변색, 퇴색, 식별이 불분명한 표지는 신속히 재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장구역의 관리)**

-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지역의 포장면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포장면의 가장자리는 인접한 포장 지역 및 비포장지역과 7.5cm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 포장면에는 깊이 7.5cm,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cm를 초과하는 포트홀(Pot hole)이 존재하지 않을 것.
  3. 포장면은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 변화가 없도록 할 것.
  4. 포장면은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안전운항을 방해할 정도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몰되지 않고 배수상태가 원활하도록 유지할 것
  5. 이·착륙 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는 깊이 13mm 이상의 웅덩이가 없을 것
  6. 터보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유도로를 사용할 경우 유도로 갓길은 돌멩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흡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가 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포장면 및 유도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파편조각의 제거 및 표면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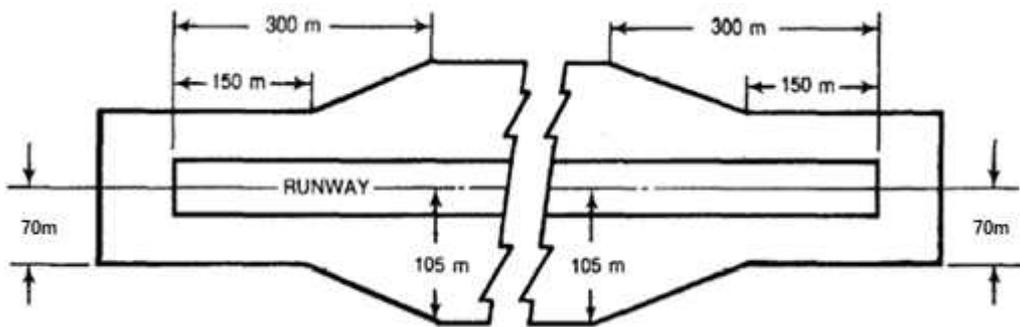
**제42조(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바퀴자국, 돌출부, 지표함몰 또는 그 밖의 지면변화가 없을 것.
  2. 물이 고이지 않을 것.

3. 건조한 상태 하에서 제설장비,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를 지지할 수 있을 것.
  4.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는 다음 각 목의 범위
    - 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이며 정밀접근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착륙대인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70m 이상
    - 나. 분류번호가 3 또는 4이며 정밀접근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착륙대인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40m 이상

<표2-1> 착륙대의 범위

착륙대의 범위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	정밀접근활주로
분류번호 1 또는 2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70m 이상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70m 이상
분류번호 3 또는 4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40m 이상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40m 이상



<그림 1>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의 관리범위

2. 유도로대의 최소 정지구역
  - 가.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4.5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0.25m
  - 나.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4.5m 이상 6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1m

- 다.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6m 이상 9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2.50m
- 라.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D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8.50m
- 마.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E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9m
- 바.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F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2m

<표2-2> 유도로대의 최소 정지구역

물리적 구분 특성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					
	4.5m 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D	E	F
유도로대 정지부분 (유도로 중심선에서의 거리)	10.25m	11m	12.50m	18.5m	19m	22m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제43조(활주로포장 덧씌우기)**

- ① 활주로 재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활주로는 임시 운영 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임시 경사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1. 덧씌우기 두께가 5cm 이하인 경우에는 0.5~1.0%
  - 2. 덧씌우기 두께가 5cm 초과하는 경우에는 0.5% 이하
- ② 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1회 포설시 활주로 전폭에 대하여 균일하게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 ③ 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 표지 및 임시시단위치 표지(폭 3.6m)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는 활주로 포장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 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⑤ 활주로 포장의 덧씌우기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마찰 수준 이상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44조(이동지역의 지지강도)**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포장면의 지지강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의 포장면은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지니게 할 것.
2. 이동지역의 포장강도는 포장면의 지지력과 항공기가 가하는 하중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표 1의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급번호(ACN)와 포장 등급번호(PCN)로 평가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할 것.
2. 이동지역의 포장강도는 포장면의 지지력과 항공기가 가하는 하중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표 1의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기 분류등급(ACR)과 포장 분류등급(PCR)으로 평가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할 것. <시행 2024.11.28.>
3. 이동지역의 포장면은 운항하는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포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을 결정하여 조치할 것.
4. 제2호에 따라 보고되는 PCN 보다 높은 ACN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규정을 따른다.
4. 제2호에 따라 보고되는 포장 분류등급(PCR)보다 높은 항공기 분류등급(ACR)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4.11.28.>

**제45조(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물질이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 지역의 포장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장 표면에 부착되어 마찰력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눈, 진창, 얼음, 물웅덩이, 진흙, 먼지, 모래, 기름, 고무 등과 같은 오염물질(Contaminant)
2.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의 손상,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모래, 돌, 종이, 목재, 금속 및 포장재 조각 등과 같은 파편(debris)

**제46조(활주로의 고무 제거)** ①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표면 마찰특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항공기 타이어에 의해 발생하는 고무 퇴적물을 표3의 최소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제37조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마찰측정 결과가 표 3의 최소마찰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활주로 고무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3> 활주로 고무제거작업 최소주기

활주로 각 방향별 일일 항공기 착륙횟수 (Number Of Daily Aircraft Landings Per Runway End)	고무제거작업 최소 주기 (Minimum Rubber Removal Frequency)
8회 이하	36개월
9 ~ 15회	24개월
16 ~ 30회	12개월
31 ~ 90회	6개월
91 ~ 150회	4개월
151 ~ 210회	3개월
211회 이상	2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Class 또는 ClassIV 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 마찰 측정 결과가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활주로 고무제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의 고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항의 고무 퇴적량 및 포장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적의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용제
2. 고압살수장비
3. 화학용제와 고압살수장비
4. 고온의 압축공기

**제47조(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① 공항운영자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의한 마찰측정 결과, 활주로 전부 또는 일부분의 측정값이 다음 표 4의 최소마찰수준(Minimum friction level) 이하일 때는 반드시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수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

시험장비	시험타이어		시험속도 (km/h)	시험수심 (mm)	신설 활주로 표면의 설계수준	유지보수 계획수준 (Maintenance planning level)	최소마찰 수준 (Minimum friction level)
	형식	압력 (kPa)					
Mu-meter Trailer	A	70	65	1.0	0.72	0.52	0.42
	A	70	95	1.0	0.66	0.38	0.26
Skiddometer Trailer	B	210	65	1.0	0.82	0.60	0.50
	B	210	95	1.0	0.74	0.47	0.34
Surface Friction Tester Vehicle	B	210	65	1.0	0.82	0.60	0.50
	B	210	95	1.0	0.74	0.47	0.34
Runway Friction Tester Vehicle	B	210	65	1.0	0.82	0.60	0.50
	B	210	95	1.0	0.74	0.54	0.41
TATRA Friction Tester Vehicle	B	210	65	1.0	0.76	0.57	0.48
	B	210	95	1.0	0.67	0.52	0.42
RUNAR Trailer	B	210	65	1.0	0.69	0.52	0.45
	B	210	95	1.0	0.63	0.42	0.32
GRIPTESTER Trailer	C	140	65	1.0	0.74	0.53	0.43
	C	140	95	1.0	0.64	0.36	0.24

③ 공항운영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 결과 활주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마찰계수( $\mu$ )가 0.40 미만이면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0.4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획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0.26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포장된 활주로나 활주로 일부분의 마찰 수준이 <표 4>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포장된 활주로의 경우 <표 4>에서 정한 최소마찰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표면이 자연적 또는 모의 강우 조건하에서 물고임 또는 배수가 불량한 경우에는 육안 및 GRF 장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주) GRF 장비는 ICAO 또는 항공관련 전문기관에서 공인된 장비를 말한다.

## 제4절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 제48조(작업통제 책임 및 의무)

-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 및 조정하고 안전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동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을 일상 유지보수작업,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으며, 작업장 통제 절차는 별표 19와 같다.

**제49조(일상 유지보수작업)** 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일상적인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이동지역 출입인가를 받은 작업자가 적절한 무선교신장비를 휴대하고 해당 공항의 관제탑 및 계류장관리부서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① 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기관에 사전 통보 없는 공사 또는 작업 수행 금지
  2. 허가된 작업시간의 엄격한 준수
  3. 작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사전 교육
    - 가. 정확한 공사 또는 작업구역
    - 나. 공사 또는 작업구역 출입경로
    - 다. 무선교신절차
    - 라. 무선교신의 청취 및 감독자 배치 등 안전조치
    - 마. 작업 종료시 보고절차
  4. 작업구역, 차량·장비의 표지 및 조명시설의 설치
- ② 공항운영자는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구역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1조(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공항 시설정보가 변경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 시행 최소 9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지방항공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작업은 관할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시행기간
2. 공사 또는 작업 책임부서 및 책임자(연락처 포함)
3. 지방항공청, 취항 항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제69조에 따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4. 공사 또는 작업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감독, 지장물 제거 등 안전 확보 방안
5. 필요시, 항공기 또는 차량 이동경로 별도 지정
6. 공사 또는 작업 관련 항공정보의 제공여부 또는 제공 계획
7. 그 밖에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부서, 공항유지보수 부서,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 공사업체 간 연락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공사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의
3. 항공고시보, AIP 또는 AIRAC 등에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검토 및 제공조치
4. 공사 또는 작업구역의 경계설정(울타리 설치)
5. 다음의 일반적인 공사 또는 작업시행 절차
  - 가. 공사 또는 작업시행기간
  - 나. 공사 또는 작업구역 진·출입로 지정
  - 다. 통신수단
  - 라. 차량 및 장비의 허용높이 한계 및 출입지역 제한
  - 마. 그 밖에 해당 공항에 필요한 사항
6. 작업자 안전조치
  - 가. 제트분사(Jet blast) 및 소음 등의 위협에 대한 경고
  - 나. 식별이 분명한 상의 착용(야광의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7.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인접 포장구역에 대한 지장물(FOD) 방지대책
8. 공사 또는 작업구역, 차량·장비의 표지 및 조명시설의 설치
9. 계기착륙시설(ILS) 및 레이더 등의 운용한계에 대한 영향
10.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① 공항운영자는 착륙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여 착륙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공항관제탑의 통제 하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활주로 끝부분의 경우

가. 착륙대를 진입하지 말 것

나.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다.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활주로 시단표면을 진입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

라.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활주로 측면의 경우

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나.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

② 공항운영자는 유도로(Taxiway)·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에서는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서, 도입·도출선(Lead-in·Lead-out line)은 주기된 항공기와 주변항공기 또는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에 해당 주기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 전폭(Wing span)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를 더한 거리 내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안전 확보와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장비

가. 등록 및 등록제한 등의 절차

나. 등록기호 부착 및 표시방법

다.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안전도 검사

라. 통행방법 등 운행규칙

2. 운전자

가. 운전승인 절차

나. 승인 및 거부

다. 운전자격 기준

라. 교육훈련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및 장비의 운행규칙은 다음 각 목을 충족하

여야 한다.

1. 해당 공항에서 정한 차량운행 규칙을 준수토록 할 것
  2. 각종 표지 및 표지판, 등화에 의한 모든 명령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공항의 관할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동지역에 진입하기 전과 진입 후에도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관할부서와 항상 무선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4. 이동지역 내에서의 차량운행은 관할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지역으로 제한 할 것
  5.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운전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3을 참고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
  2. 표지판, 표지 및 등화
  3. 무선교신 방법
  4. ICAO 알파벳 발음법(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
  5.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 규칙
  6. 해당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
  7. 저시정 운영시 통행방법(저시정 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에 한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운전자 허가(ADP, Airside Driver Permit)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4를 참고할 수 있다.

**제54조(기동지역의 차량 통제)**

-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의 차량이 원활하게 통제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이 출입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
  3. 이동지역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
  4. 기동지역과 활주로 횡단지점이 표시된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 또는 운전자가 소지하도록 할 것.
  5. 차량과 장비에 적절한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Obstacle marking and lighting)을 갖추도록 할 것.

- ② 공항운영자는 차량통제에 필요한 표지 및 등화, 표지판을 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 ①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1.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토록 할 것
  - 2. 차량운전자에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실시할 것
    - 가. 해당 공항의 속도제한
    - 나. 지정된 이동 경로
    - 다.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
    - 라. 지정된 주차 구역 등
- ② 공항운영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등)** 공항운영자는 민간 항공 및 그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항공보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절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제57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제탑에서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항공기 상호 간 및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교통통제업무
  - 2. 계류장 진출입 항공기의 질서유지업무
  - 3. 항공기 후방견인과 엔진시동 허가
  - 4. 지상이동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업무
  - 5. 항공기 주기장 배정업무
  - 6.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 7.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
  - 8. 항공기 급유안전조치

9. 계류장의 청결유지(청소 및 세척)
  10. 계류장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11.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 ② 제1항 이외에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계류장 관리업무에 필요한 무선 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2. 차량의 이동 및 운행규칙을 수립할 것.
  3. 저시정 운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동안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사람과 차량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4. 비상사태에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
  5. 계류장에서 운용되는 차량이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차량에게 진로 양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적용 할 것.
    - 가. 긴급 출동차량
    - 나. 지상 활주중(taxiing)인 항공기
    - 다. 견인중이거나 지상활주를 시작하려는 항공기
    - 라. 공항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차량
  6. 항공기 주기장에 대하여 최소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을 위하여 시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7. 계류장 내 위험지역 또는 제한지역 등에는 적절한 표지와 조명을 설치할 것
  8. 항공기 후면에 지상조업도로 등 이동물체의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속도제한 및 통행방법 등 안전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것.

**제58조(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1.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심사 과정에 적용할 항목은 지상조업사의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항과 지상조업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후에는 지상조업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행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공항운영자는 서비스협약 체결 후에는 그 서비스협약의 이행여부 점

검과 조업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영업허가 심사 및 서비스협약 체결에 반영하는 등 조업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조(항공기 주기장 배정)**

- ① 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근 공항의 일시적인 항공기 회항 등을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주기장 배정에 관한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주기장별 수용 가능한 항공기 등급 또는 기종을 항공정보간행물 등에 수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

- ① 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주기방식에 적합한 지상유도 안내에 따라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안전하게 주기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가 지상유도안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유도 안내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신호 유도업무 (Marshalling service)
  - 2. 차량선도 유도업무(Leader van service)
  - 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제61조(항공기 제트분사 및 강풍으로부터의 보호)**

-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계류장에서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사람 및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계류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제트분사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환
    - 나. 차량 및 바퀴 달린 장비의 정치방법
    - 다. 항공기 제트분사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파편 등의 제거
    - 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
    - 마. 그 밖에 해당 공항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
  - 2. 사람,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거리(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km까지 감소되는 지점)를 확보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른 보호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장 진·출입 방법 및

항공기 이동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1항에 따라 계류장에서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결박시설 등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항공사사장은 소속공항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결박시설의 설치는 풍속, 취항기종 및 항공기 제작사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2조(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계류장에서 지상조업자가 항공기 급유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
2.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
3. 항공기에 여객이 탑승해 있거나 승·하기 도중에 급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충분한 항공기 비상출구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신속한 비상대피로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상조업장비를 배치
4.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5.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
6. 급유 감독자의 감시
7. 화재 또는 누유 시 구조소방 지원요청 등 세부 조치사항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계류장 청결유지)**

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오염물질 및 파편 등에 의한 항공기 엔진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류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을 포함한 계류장 청결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계류장 내 지상근무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운전자의 운전승인 여부
2. 지정 차량통행로 및 주차구역 준수여부
3. 차량운행 제한속도 및 차량통행로 정지위치 준수여부
4. 차량 및 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및 부착상태
5. 기타 계류장의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

**제65조(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 공항운영자는 당해 공항의 계류장에서 차량, 장비 및 시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 소속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중상 등의 인적피해 발생
2. 항공기 및 차량손상 등의 물적 피해 발생
3. 기타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

### 제6절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66조(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수립)** 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 내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의 안전한 이동 등을 위하여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

- ① 공항운영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 밀도
  2. 운영 시정조건
  3. 조종사의 적응도
  4. 공항평면의 복잡성
  5. 차량의 이동상태
  6. 인적요소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 시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공항안전운행을 위한 공

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8조(시설 및 운영요건)**

- ①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장 표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지판 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
  - 2. 사용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및 차량의 침입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3.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간, 항공기와 차량 또는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4. 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할 것
    - 가.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에 의하여 지시된 유도경로는 점등된 정지선등에 의해 종료
    - 나. 제어회로는 항공기의 앞쪽에 위치한 정지선등이 점등될 때 정지선등을 넘어선 유도로 중심선등의 해당구역은 소등
    - 다. 정지선등이 소등되면 항공기의 앞쪽 유도로 중심선등은 점등
  - 5. 활주로 가시범위 35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에는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 6. 활주로 가시범위 350m 이상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으로서 항공교통밀도와 운영상황이 다른 대체절차나 시설만으로는 순조로운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없는 공항의 경우에는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밀도 및 시정조건에 따라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9조(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담당자가 포함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이하 “SMGCS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항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절차의 수립 또는 개정 및 필요시 대규모 공사 또는 유

지보수 작업에 따른 공항운영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SMGCS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이동지역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1. 지방항공청 관련 담당자
2. 공항운영자
3. 항공기 구조 및 소방 담당자
4. 공항 및 계류장 관제업무 담당자
5. 공항 이동지역 관리 담당자
6. 시설담당자
7. 항공사 등 관련업무 담당자
8. 항공사운영위원회 대표
9. 공항기상업무 담당자
10.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SMGCS 위원회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개선 및 결함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SMGCS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저시정운영절차)**

① 활주로 가시범위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절차 발령시기, 운영개시 및 해제 시기
2. 절차 수행 기관 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
3. 발령 통보, 확인방법, 발령전파체계
4. 항공기 지상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5. 차량 및 장비의 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6. 인원, 차량 및 장비의 이동지역 출입 및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7. ILS 절차 민감구역의 설정 및 보호방법
8. 저시정시 항공교통관제절차
9. 구조 및 소방차량의 출동 및 대기 절차
10. 필요시 항공기 엔진시동지역 및 견인 경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효율적 공항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시설/장비를 신설,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9조에 따른 SMGCS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할 경우 SMGCS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교통밀도 및 운영상황 상 활주로 가시범위 400m보다 높은 시정조건에서 이 절차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시정조건에 따라 해당 공항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 ④ 저시정운영절차에는 각 기관별, 담당자별 임무 및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시 공항시설 및 운영상태 전반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자 및 통제부서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시정 이동경로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항공기의 활주로 및 유도로 진·출입 경로
  - 2. 항공기의 계류장내 유도로 진·출입 경로
  - 3. 구조 및 소방차량 이동경로
  - 4. 계류장내 차량 및 장비 이동경로
-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1. 기호 및 용어를 설명한 범례
  - 2.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통로의 위치
  - 3. 항공기 대기지점 및 주파수 이양지점
  - 4. 정지선등의 위치
  - 5. 일시정지위치등의 위치
  - 6. 활주로경계등의 위치
  - 7. 경계선등의 위치
  - 8. 제방빙장의 위치
  - 9. 소방서의 위치
  - 10. 그 밖에 특수한 공항 특성 등 필요한 정보

**제71조(교육 및 훈련)** 제70조에 따라 수립한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과 관련된 소속직원 및 이동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저시정운영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절 장애물의 통제

**제72조(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기준)**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설정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법 제2조제14호,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기준에 따른다.

**제73조(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 위치를 정함에 있어 활주로서단으로부터 후방으로 1,200미터와 전체폭 300미터 범위내의 진입구역에 위치하는 차량도로, 철로, 수로 등에 대하여 안전상 영향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기활주로의 경우에는 전체 폭을 150미터로 한다.

#### 제74조(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의 기준)

- ① 무장애구역에는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러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어떠한 고정 장애물도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활주로정지위치에서 항공기 및 차량은 무장애구역, 진입표면, ILS/MLS의 전파보호 임계지역/민감지역(Critical area/Sensitive area)을 침범해서는 아니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규칙 별표2에도 불구하고, ICAO 분류문자 F급 항공기 중 항공기 복행(go-around) 기동시 미리 수립된 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제공해주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장애구역 중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를 120m로 할 수 있다.

**제75조(장애물 관리)** 공항운영자는 법 제34조제8항,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절 공항시설

**제76조(공항의 시설기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행장표지 등 공항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영 제31조, 규칙 제16조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77조(착륙대 내의 물체 등)**

- ① 제76조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17조(착륙대 내의 물체), 제18조(착륙대의 정지), 제19조(착륙대의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정지구역 외부에 기존에 설치된 개거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활주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착륙대 내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

- ① 제76조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0m 외부에 기존에 설치된 개거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유도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폭 부족구간에 대한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유도로대의 폭)**

- ① 제76조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유도로대 폭이 비행장 시설설치기준에서 정한 폭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1.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9조에서 정한 유도로대의 정지구역 확보
  - 2.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3조에서 정한 유도로로부터 장애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확보
- ②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유도로에 대하여

만 적용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 내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제방빙시설의 설치)**

① 제76조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5조(제방빙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IV 공항의 경우, 취항 항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항의 공항 운영상 제방빙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에 제방빙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제192조에서 정한 “이동지역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에서 제방빙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정보를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와 항공사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공항사용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달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공항운영자는 공항내 해당지역 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2조(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등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제9절 시각지원시설

### 제83조(항행안전시설 보호)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 있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전파 또는 시각적 운영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행안전시설이 파손이나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관리·운영지역 내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장애 또는 시각적 간섭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제84조(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운영)

- ① 공항운영자는 관제탑 또는 계류장관제소와 항공기와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에 항공기 또는 지상의 차량, 장비, 사람 등에 대하여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제탑과 계류장관제소에 지향신호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향신호등 신호의 종류와 의미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5조(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운영)

- ① 공항운영자는 항행중이거나 이동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활주로 풍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풍향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풍향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6조(표지(Markings)의 설치)** 공항운영자는 표지에 대하여「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항공등화의 운영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1. 비행장등대는 소정의 운영시간에 점등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2. 항공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는 야간과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점등

준비를 할 것

- 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그 착륙예정시각의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착륙예정시각 최소한 10분전에 점등할 것
- 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유지
- 3. 항공등화의 최소 점등비율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CAT-II/III 정밀접근활주로
    - (1)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 활주로는등(Runway edge lights) 및 활주로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은 95%
    - (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은 길이 450m까지 95%
    - (3) 접지구역등(Runway touchdown zone lights)은 90%
    - (4) 진입등시스템의 길이 450m 이후부터는 85%
    - (5)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은 75%
  - 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는등, 활주로서단등 및 활주로종단등은 85%
  - 다.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 (1) 활주로중심선등과 활주로는등은 95%
    - (2) 활주로종단등은 75%
  - 라.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 이상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 활주로는등과 활주로종단등은 85%
- 4. 활주로 가시범위(RVR) 350m 미만인 경우에 사용되는 활주로의 항공등화 관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도록 할 것.
  - 가. 정지위치에 설치된 정지선등(Stop bars)은 연속적으로 2등 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2등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간격이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re line lights)은 연속적으로 2등(표 5에서 정한 유도로중심선등 등 간격) 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5. 제3호의 항공등화는 연속적으로 2등(표 6에서 정한 CAT-II/III 정밀 접근활주로의 항공등화 등 간격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등 간격)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6.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 7. CAT-II/III정밀접근활주로의 예방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진입등시스템(매립등)과 활주로는조명의 광도, 빔확산, 방향에 대한 검

사와 측정

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조명 각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과 제어

다.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광도설정의 올바른 기능과 제어

- 8. 제7호의 가목 측정방법은 등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동용 측정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측정회수는 교통밀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등은 2회/년 이상, 노출등은 1회/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9. 제7호의 가목에 대한 광도, 빔 확산 및 방향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 10. 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력시설 근처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5> 유도로중심선등 등 간격

구 분		RVR	등간격 (최대)	비 고	
유도로 지역	직선구간		350m 미만	15m	
			350m 이상	30m	
	곡선 구간	반경 401m 이상	350m 미만	15m	
		반경 400m 이하		7.5m	
		반경 400m 이하	350m 이상	7.5m	
		반경 401 ~ 899m		15m	
반경 900m 이상	30m				
고속탈출 유도로 지역(활주로지역포함)			15m		
			30m	활주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	
기타 탈출유도로			7.5m		
활주로지역(표준유도경로로 사용될 경우)		350m 미만	15m	활주로 횡단부분	

<표 6> CAT-II/III 정밀접근활주로의 항공등화 등 간격

구 분	RVR	등 간격(최대)
활주로중심선등	350m 미만	15m
	350m 이상	30m
활주로등		60m
활주도시단등		3m
접지구역등		30m 또는 60m
활주로종단등		6m
진입등시스템		2 바렛

**제88조(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조명(유사등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명의 광도, 배열 또는 색채에 의하여 항공등화를 식별하는 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소등, 차폐 또는 변경시킬 것.
2. 계류장, 주차지역, 차도, 급유시설지역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모든 조명은 항공교통관제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폐시킬 것.

**제89조(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 공항운영자는 노출형 진입등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활주로 각 시단에서부터 300m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충족할 것
  - 가. 지지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상단에서부터 12m까지는 부러지기 쉬울 것
  - 나. 지지하는 구조물이 견고한 물체에 둘러싸인 곳에서는 주변의 물체 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부러지기 쉬울 것
2. 등기구 또는 지지하는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할 것

**제90조(노출등(Elevated lights))** 공항운영자는 노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활주로조명(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정지로등 및 유도로등은 부러지기 쉬울 것
2. 제1호의 등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할 것

**제91조(매립등(Surface lights))** 공항운영자는 매립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정지로, 유도로 및 계류장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등은 항공기가 주행할 때 바퀴에 의해 등기구 또는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할 것
2.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 간의 접촉면에서 열전도 또는 방사에 의하여 생기는 온도는 10분 동안 접촉으로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제92조(항공등화 광도 제어)**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활주로조명 광도가 진입등시스템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가질 것.
2. 고광도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상조건에 맞도록 등화시설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광도제어기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서로 조화되는 광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분리 광도제어기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것.

- 가. 진입등시스템
- 나. 활주로등
- 다. 활주로서단등
- 라. 활주로종단등
- 마. 활주로중심선등
- 바. 접지구역등
- 사. 유도로중심선등

**제93조(항공등화 기준)**

-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주 빔 광도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배광곡선 광도 값의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표지판(Signs))** 공항운영자는 표지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은 고정 또는 가변메시지 표지판이어야 한다.
2. 표지판은 명령지시(Mandatory instruction), 특정지역에서 정보(information), 이동지역에서의 목적지(destination)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에 요구된 조건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 고자 할 경우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여러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4. 제2호의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 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 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종사나 차량운전자에게 불안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 다. 하나의 정보에서 다음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은 5초를 초과하지 말 것
- 5. 표지판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6.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 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같다.
- 7. 표지판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같이 수평면이 더 긴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 8.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활주로 가시범위 800m미만
  - 나. 야간에 사용하는 계기활주로
  - 다.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3 또는 4의 비계기활주로
- 9.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또는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기타 표지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95조(표시물(Markers))** 공항운영자는 표시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표시물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절 장애물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96조(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

- ① 공항운영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항공장애 주간표지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항공장애 주간표지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별표 6과 같다.

**제97조(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

- ① 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6조제1항에 따라 표지(marking)되어야 할 물체 중 모든 고정물체는 색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채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물(markers) 또는 깃발을 고정물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형태, 크기 또는 색채에 의하여 눈에 잘 띄는 고정 물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marking)를 아니할 수 있다.
  2. 표지되어야 할 모든 이동물체는 색채로 표시하거나 깃발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②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제98조(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 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절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99조(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공항운영자는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unservicability lights)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폐쇄지역에 대한 표지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를 따라서 3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공항운영자는 건설작업 구역 또는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면에 포트홀 (Pot hole)이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시물(unservicability markers)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지구역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과 같으며, 금지구역등에 대한 기준은 제96조와 같다.

**제101조(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이하 “비하중지지표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로, 대기구역 갓길과 계류장 및 그 외의 지역의 비하중지지표면은 항공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표면과의 경계를 따라 줄무늬 표지로 써 표시되어야 한다.
2. 비하중지지표면 표지에 대한 기준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제102조(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 공항운영자는 시단이전 포장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주로시단 이전의 포장구역이 60m를 초과하지만 항공기 정상운항에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이전의 전체 포장구역에 갈매기형으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단이전표지에 대한 기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 제12절 전력시설 등

**제103조(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

- ① 공항운영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용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적·비시각적 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공항의 시각지원시설 및 무선항행보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설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공항시설에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1.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향신호등과 최소 조명
  - 2. 관련 당국에 의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장애등
  - 3. 진입조명(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조명 및 유도로조명(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
  - 4. 기상장비
  - 5. 제107조의 필수 보안등
  - 6. 비상을 대비한 필수적인 장비 및 시설
  - 7. 야간에 격리된 항공기 주기위치를 나타내는 투광조명(Floodlighting)
  - 8. 여객이 걸어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 ③ 공항운영자는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은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2.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 각 시설에 대한 예비전원공급 요구조건은 표 7과 같다.
- ④ 공항운영자는 시각지원시설의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주 활주로가 비계기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용등화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15분내에 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 활주로가 1개의 비정밀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은 2개 이상의 비정밀활주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3.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표 7의 카테고리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상용 전원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연결되어야 한다.
  - 4. 활주로 가시범위 80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에서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표 7> 예비전원 공급 요구조건

활 주 로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항공등화	최대 절체 시간(초)	항행안전무선시설	최대 절체 시간(초)
비계기	진입각지시등 <sup>(가)</sup>	120		
	활주로등 <sup>(나)</sup>	120		
	활주로서단등 <sup>(나)</sup>	120		
	활주로종단등 <sup>(나)</sup>	120		
	장애등 <sup>(가)</sup>	120		
비정밀접근	진입등시스템	15	전방향표지시설(VOR)	15
	진입각지시등 <sup>(가),(라)</sup>	15		
	활주로등 <sup>(라)</sup>	15		
	활주로서단등 <sup>(라)</sup>	15	무지향표지시설(NDB)	15
	활주로종단등	15		
	장애등 <sup>(가)</sup>	15		
정밀접근 CAT I	진입등시스템	15	방위각시설(LLZ)	10
	활주로등 <sup>(라)</sup>	15		
	진입각지시등 <sup>(가),(라)</sup>	15	활공각시설(GP)	10
	활주로서단등 <sup>(라)</sup>	15		
	활주로종단등	15	중간마커(MM)	10
	필수적인 유도로조명 <sup>(가)</sup>	15		
	장애등 <sup>(가)</sup>	15	외측마커(OM)	10
정밀접근 CAT II/III	진입등시스템(활주로서단에서 300m까지)	1	방위각시설(LLZ)	0
	진입등시스템(활주로서단에서 300m초과)	15		
	장애등 <sup>(가)</sup>	15	활공각시설(GP)	0
	활주로등	15		
	활주로서단등	1	내측마커(IM)	1
	활주로종단등	1		
	활주로중심선등	1	중간마커(MM)	1
	접지구역등	1		
	모든 정지선등	1	외측마커(OM)	10
	필수적인 유도로조명	15		
활주로 가시범위 800m미만 조건에서 이륙활주로	활주로등	15 <sup>(다)</sup>		
	활주로종단등	1		
	활주로중심선등	1		
	모든 정지선등	1		
	필수적인 유도로조명 <sup>(가)</sup>	15		
	장애등 <sup>(가)</sup>	15		

(가) 안전운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전원공급

(나) 비상용등화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제93조 참조

(다) 활주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에는 1초로 규정

(라) 진입이 위험하거나 험준한 지형은 1초

**제104조(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전기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전기시스템은 표 7의 시설이 장비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제10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중선로(duplicate feeder)를 사용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공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이중 모선구성)하여야 한다.
3. 표준유도경로(standard taxi-route)의 일부를 형성하는 활주로에서 활주로 조명(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에 한함)과 유도로조명(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에 한함)이 제공되는 곳에서는 두 조명시설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interlock) 시켜야 한다.
4. 항행시설의 안전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1차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5.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전기시스템 설계 및 전기공급은 장비의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불충분한 시각과 비시각 안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1차전원의 장애 및 완전복구 시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다만, 표 7의 비정밀접근, 정밀접근 및 이륙 활주로의 항공등화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감시(Monitoring))** 공항운영자는 등화시설의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등화시설을 항공기 통제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통제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즉시 탐지하고 장애정보를 항공관제업무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중계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활주로 가시범위 550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운용되는 활주로는 표7에 따른 항공등화가 제87조제3호의 최소점등비율 미만으로 점등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자동적으로 감시하여 유지보수담당자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전달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정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시스템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감시시스템에 표시되어 있는 항공등화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 활주로

정지위치에 있는 정지선등은 2초 이내, 그 외 등화시설은 5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106조(울타리(Fencing))** 공항운영자는 울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등이 이동지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에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항의 제한지역에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항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 또는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이동지역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시설 또는 구역을 일반인 출입 가능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다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침입을 어렵게 하고 순찰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벽의 양쪽에 차량 또는 도보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개방된 지역을 만들어야 하며, 울타리 안쪽에 보안순찰 및 유지보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7조(보안등(Security lighting))** 공항운영자는 보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또는 다른 방호벽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2. 항공기 진입구역의 보안등 설치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8조(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비행장시설 설계 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과 환경통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9조(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 공항운영자는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기구(진입각지시등 등) 및 지지물(표지판 및 표시물 등)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운항지역 내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목적 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항공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42조에서 규정한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의 관리구역 또는「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공중의 항공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개방구역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 또는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류번호 3, 4인 경우 활주로중심선에서 75m이내의 착륙대

나. 분류번호 1, 2인 경우 활주로중심선에서 45m이내의 착륙대

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유도로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이내

라. 공중에서 항공기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장소나 개방구역

4. CAT- I,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인 경우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으로서 분류번호 3, 4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의 지역, 분류번호 1, 2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45m 폭 이내의 지역에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항행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CAT- I,Ⅱ,Ⅲ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의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으로서 분류번호 3, 4인 경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 분류번호 1, 2인 경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45m 폭 이내의 지역

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또는 착륙복행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6. 항행 목적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고 운항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체 및 기존장애물의 신장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절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 제110조(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 ① 공항운영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인원에 대한 보호
  3. 저장구역의 접근 통제
  4.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 및 보관장소의 방화 관리
  5.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예방
  6. 연료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훈련
  7.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
  8. 급유시설과 급유장치 간 접지
  9. 급유차량 주차시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인화성 물질
  2. 액화산소 등 폭발성 물질
  3.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
- ③ 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1조(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제74조의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2조(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의 시설 및 장비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12개월 이상 그 검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화기 설치위치 및 사용소화제 적정성
2. 소화기 및 소화시설의 관리 및 점검상태
3. 소화기 및 소화시설의 표시 및 라벨 부착상태
4. 안전수칙 게시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5. 위험물 취급장소의 화기보관함 관리상태
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등

**제113조(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제11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 및 훈련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물 취급 업체의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위험물질을 공급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훈련된 감독자로부터 위험물 취급 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교육 및 훈련의 확인)** 공항운영자는 관련 업체의 제113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실적을 1년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절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제115조(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에 대비하여 당해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 또는 그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목록(해당 공항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포함)
2. 중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계약업체 목록(대표자 및 전화번호)
3. 타 공항으로부터 동원 할 수 있는 장비 목록
4. 항공기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처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행자의 목록(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5. 보안유지상 필요한 사항
6. 기동불능 항공기의 연료배출에 관한 사항

7.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Grid map)
8. 정부 사고조사관의 신속한 사고현장 접근지원 준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필요한 사항
10. 조정자(Coordinator)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6조(법적 고려사항)** 공항운영자가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사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 항공기 및 그 잔해가 일반인, 항행안전시설, 또는 기타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고 조사기관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고 항공기 또는 그 잔해를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3. 항공기는 항공기 운용자와 그 보험업자의 재산이므로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운용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만이 항공기 처리작업을 통제해야 한다.
4.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동작업 중에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통관 및 입국사열은 항공기 처리작업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17조(책임사항)**

-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이동작업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에 의한 이동작업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계획을 수행 할 담당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취급업체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 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8조(통신)**

-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을 위하여 이동 지휘소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이동지휘소 간의 적절한 통신체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9조(절차)**

-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이차적인 손상 방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공항의 정상운업을 위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구조 및 소방차량의 현장 대기
  - 2. 사고현장에서의 “금연” 규칙 준수
  - 3. 항공기 장기 보관장소의 준비
  - 4. 작업종료 후 활주로 및 지표면의 인화성 액체의 제거 등 안전상태 확인 등

**제120조(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바퀴 교체 장비, 잭 패드(Jacking pads), 견인봉(Tow bars) 등 항공기 기종별 전용장비로서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 2. 공기 부양장비(pneumatic lifting bags), 컴프레서(compressors), 이동식 발전기, 리프트와 호이스트(lifting and hoisting) 장비 등 주로 복구작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이동 작업용 특수차량 및 장비
  - 3. 대형 크레인, 트롤리(trolleys) 및 도로 가설장비 등 중장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비 외에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가 보유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장비
  - 5. 타 공항에서 보유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장비의 획득 및 이송 계획
- ③ 제2항 제2호의 장비 중 기동불능 항공기의 공기부양에 필요한 장비는 공항운영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동 장비의 사용(임대사용 포함)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와 취항하는 항공사 등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15절 구조 및 소방

#### 제121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등이 발생하는 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및 소방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이 수상, 늪지 또는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인접하거나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착륙로가 폭이 5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인 경우에는 수상구조체계 등 특별구조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에 적절한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적합한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을 갖추고 이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알려 해당 공항을 이용하려는 항공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⑥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제1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불가피하게 현행 구조소방등급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계획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 규모에 적합한 물의 양을 재산출하고,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과 분사율을 해당 항공기에게 적합하도록 증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일 최소 2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이 교체공항으로 이용하려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결정된 구조소방등급보다 2단계 낮은 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공항 구조소방등급의 결정)**

-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전장, 동체폭 및 운항횟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항공기의 전장, 및 항공기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표9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표 9> 공항 구조소방등급 결정기준**

구조소방등급	항공기 전장	항공기 최대 동체폭
1	9m 미만	2m 이하
2	9m이상 12m 미만	2m 이하
3	12m이상 18m 미만	3m 이하
4	18m이상 24m 미만	4m 이하
5	24m이상 28m 미만	4m 이하
6	28m이상 39m 미만	5m 이하
7	39m이상 49m 미만	5m 이하
8	49m이상 61m 미만	7m 이하
9	61m이상 76m 미만	7m 이하
10	76m이상 90m 미만	8m 이하

2. 제1호에 따른 구조소방등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전장에 해당하는 등급을 먼저 선택하고, 만약 해당 항공기의 동체 폭이 표9의 등급에 해당되는 최대 동체폭보다 더 큰 경우라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은 한 등급 높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 공항을 이용한 가장 긴 항공기와 그 항공기의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의 분류는 별표 8에 따르고, 별표 8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항공기 제원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가 70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정할 수 있다. 단, Class I 공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소화제의 유형)**

① 공항운영자는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화제는 수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이고 보조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화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비행장 구조소방등급이 1부터 3 등급까지인 경우 최소성능등급 'B' 또는 'C'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소성능등급 'A'(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
2. 최소성능등급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
3. 최소성능등급 'C'를 충족하는 포말
4.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혼합물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소화제는 탄화수소 화재(hydrocarbon fire)를 진화하는데 적절한 건조화학분말소화제이어야 하며, 국제표준기구(ISO)의 적정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ISO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4조(소화제의 양)** 공항운영자는 소화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소방차량에 제공할 보조소화제나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은 제122조제2항 표9에서 결정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맞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소방등급 1등급 및 2등급의 경우에는 물을 보조소화제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
3. 보조소화제 대체를 위해 1kg의 보조약제는 성능수준 A 포말에 필요한 물의 양 1.0L와 같다.
4. 제2호에 따라 건조화학분말소화제를 다른 소화제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화재에 대하여 보조소화제의 방재능력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소화제로만 대체하여야 한다.

5.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소화제 양은 표 10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제12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예비소화제를 공항 내에 비축하여야 한다.

<표 10> 소화제의 최소 사용량

구조소방등급	A급포말		B급포말		C급포말		보조소화제	
	물(ℓ)	분사율(ℓ/분)	물(ℓ)	분사율(ℓ/분)	물(ℓ)	분사율(ℓ/분)	건조화학분말(kg)	분사율(kg/초)
1	350	350	230	230	160	160	45	2.25
2	1,000	800	670	550	460	360	90	2.25
3	1,800	1,300	1,200	900	820	630	135	2.25
4	3,600	2,600	2,400	1,800	1,700	1,100	135	2.25
5	8,100	4,500	5,400	3,000	3,900	2,200	180	2.25
6	11,810	6,000	7,900	4,000	5,800	2,900	225	2.25
7	18,200	7,900	12,100	5,300	8,800	3,800	225	2.25
8	27,300	10,800	18,200	7,200	12,800	5,100	450	4.5
9	36,400	13,500	24,300	9,000	17,100	6,300	450	4.5
10	48,200	16,600	32,300	11,200	22,800	7,900	450	4.5

주1) 포말산출을 위해 정해진 물의 양은 성능등급 A 포말에서는 8.2ℓ/min/m<sup>2</sup>, 등급 B에서는 5.5ℓ/min/m<sup>2</sup>, 등급 C에서는 3.75ℓ/min/m<sup>2</sup>의 적용률을 기초로 한다.

6. 포말 산출을 위해 차량에 별도로 탑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채워진 물과 선택된 포말 농축액의 양에 비례하여야 한다.
7. 차량에 적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적어도 분사용액을 2회분 산출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8. 항공기 사고현장에서는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 공급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화전 등을 통한 신속한 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탱크차와 같이 물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포말 성능 등급이 다른 포말을 혼합할 때 물의 총량은 각 포말 등급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소방 차량에는 산출된 양과 포말 방식을 적은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모든 구조소방요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10. 구조소방등급 보다 더 큰 항공기의 운항을 계획하는 경우, 사용하는 물의 양을 재 산정하고 포말산출에 필요한 물의 양과 방사율을 더 큰 항공기에 맞춰 증가시켜야 한다.

**제125조(분사율)**

- ① 포말용액의 분사율은 제124조제5호의 표 10에 나타난 수치보다 높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위험지역에서 1분 동안 화재를 통제할 수 있는 양이 바람직한 분사량이고 각 구조소방등급별 분사율을 결정할 때는 실제 위험지역 면적에 적용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 ② 보조소화제의 분사율은 제124조제5호의 표 10에 나타난 수치보다 높아야 한다

**제126조(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 ① 공항운영자는 <표 10>의 200%에 해당하는 포말농축액을 구조소방차량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공항에 비축하여야 하며, 포말농축액의 양이 <표 10>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소방차량에 적재된 경우, 포말 농축액은 예비비축량에 포함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표 10>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소화제 예비품을 차량 보충용으로 비축해야 하며, 비축 보조소화제는 충분한 활용을 위해 압축불활성 가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보조소화제를 100%의 물로 대체하는 구조소방등급 1 및 2의 공항은 보조소화제의 200%의 물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예비 소화제의 대규모 보충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 비축량을 보유해야 한다.
- ⑤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포말탱크는 항상 가득 채운 상태이어야 한다. 단백포말 농축액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방출시켜 변질된 단백포말이 남아 있지 않도록 용기 전체를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 ⑥ 인명 구조 및 화재장비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포말을 살포할 때에는 연이은 항공기 사고/사건에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활주로에 포말 살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에 필요한 추가 포말(단백포말이나 배수특성을 지닌 포말)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보관중인 소화제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농도측정 또는 비중측정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소화제의 보관은 적정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7조(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상응하는 구조장비를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할 최소 구조 장비는 별표 9와 같다.
- ③ 공항운영자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비상대응 요건)**

-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항공기 운항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상대응에 관한 시범을 보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의 출동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조 또는 소방을 위한 비상대응 시간은 최적의 시계와 노면조건에서 운영 중인 활주로의 모든 지점과 항공기 이동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 대응시간이란 최초로 구조나 화재진압 출동요청을 받고 나서 첫 출동 차량이 제124조제3호 표10에 나타난 포말 분사율의 50% 비율로 포말을 분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 2. 저시정 운영 등 최적의 시정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상대응 시간을 충족하도록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지침, 장비 및 절차를 구비 할 것
  - 3. 제1호에 따른 첫 출동차량 이외의 표10의 소화재를 탑재한 구조소방 차량은 최초 출동요청을 받은 후 최소 4분 이내에는 현장에 도착하고 지속적인 소화제 분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차량의 차량의 수명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9조(비상 접근 도로)**

-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제128조의 규정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1)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까지의 진입구역 또는 적어도 공항 경계내 지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2)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외부구역으로 출입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접근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항 사용차량 중 최대 중량의 차량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활주로로부터 90m 이내에 있는 도로는 침식되지 않도록 표면 덧씌우기가 실시되고 그 파편이 활주로까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비상접근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상방의 장애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수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도로의 표면이 주위지역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도로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자리 표시물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0조(소방대의 설치)**

-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를 위한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모든 구조 및 소방차량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대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소방대로 출동 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의 위치는 구조 및 소방차량이 선회 주행 횡수를 최소로 하면서 활주로지역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대에는 가능한 한 넓은 공항 내의 이동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1조(통신 및 경보시스템)**

- ① 공항운영자는 소방대와 관제탑, 공항 내의 다른 소방대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소방대 및 관제탑에는 구조 및 소방요원을 위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다음 각 호의 교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선통신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 1. 구조 및 소방 이외의 기타 필요한 비상 차량과의 교신
  - 2. 공항 내에서 관제탑과의 교신
  - 3. 공항 비상계획에 명시된 기타 관련 부서와의 교신

**제132조(차량준비 요건)**

-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차량 및 관련 설비는 항공기 운항 중에 이 절에서 요구하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2. 공항이 장기간 동안 영하 이하의 기온으로 되기 쉬운 지역 및 계절에는 결빙 상태에서의 장비 운영 및 분사를 위해 덮개 또는 그 밖의 수단이 차량에 지원되어야 한다.
  - 3.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차량은 48시간 이내에 동급 능력의 차량 및 관련설비로 대체되어야 한다.
  - 4. 제3호와 같이 대체 차량 및 설비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상태보고절차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각 항공기에 알려야 한다.
  - 5. 차량 보유대수는 다음 표11에서 정하는 공항 구조소방등급별 최소 보유대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표 11> 공항 구조소방등급별 구조 및 소방차량의 최소 보유 기준**

구조소방등급	구조소방 차량 최소 보유기준 (대)
1	1
2	1
3	1
4	1
5	1
6	2
7	2
8	3
9	3
10	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할 최소 구조장비목록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의 최소 성능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차량은 악천후 시 비포장지역에서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3조(차량 표지 및 조명)**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다음 각 호의 표지 및 조명을 장착하여야 한다.

1. 섬광등 또는 경광등
2. 주변 환경과의 색채 대비, 주야간의 식별이 용이한 도색 및 표시

**제134조(구조 및 소방 직원)**

-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구조 및 소방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중에 충분히 훈련받은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을 배치하고,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탑승하여 구조 및 소방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차량 탑승인원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 이내에 구조 및 소방관련 업무경험을 지닌 자 또는 최근 12월 이내에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편조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련된 급수관, 사다리 및 기타 구조소방장비 등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결정하고 직원의 수준과 인원수를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각 구조소방인원의 능력, 교육, 훈련, 인적요소 등을 고려하여 근무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135조(구조 및 소방직원의 보호장비)** 공항운영자는 현장에서 구조 및 소방활동에 임하는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에게 임무수행에 적합한 보

호 의복과 호흡장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6조(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훈련하여야 하며, 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
2. 항공기 관숙(Aircraft Familiarization)
  - 가. 일반문과 비상문의 위치 및 사용
  - 나. 좌석배치
  - 다. 유류의 종류 및 유류탱크의 위치
  - 라. 배터리의 위치
  - 마. 비상시 항공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
3.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안전
4. 항공기 화재경보를 포함한 공항에서의 비상통신 시스템
5. 소방호스, 노즐, 터렛 및 기타 장비의 사용
6. 소화작용제 유형 및 특성
7.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
8. 화재진압절차
9. 항공기 소방구조를 위한 구조적인 소방구조 장비의 적용과 사용
10. 위험물
11. 공항 비상계획상의 소방대원의 임무
12. 보호복 및 보호장비 사용

②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은 연료화재를 포함하여 매 12개월마다 최소한 1회 이상의 실제 화재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화재진압에 참가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의 취항이 계획된 경우, 구조소방직원에게 대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제원 및 비상대응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 운항 시간대에는 근무직원 중에는 기초응급치료훈련을 받은 자 또는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훈련에 관하여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40시간(응급구조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혈
2. 심폐 소생

- 3. 쇼크
- 4. 환자조사
- 5. 두개골, 척추, 폐, 그리고 사지의 부상
- 6. 내부손상
- 7. 환자이송
- 8. 화상
- 9. 사상자 분류(Triage)
- ⑤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직원의 비상대응이 용이하도록 사이렌, 기타 경보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⑥ 구조 및 소방직원의 훈련 프로그램은 팀워크와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137조(위험지역(Critical area))**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화재 또는 사고 등 발생 시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도록 해당 공항에서 취항하는 모든 운송용항공기 종류에 따른 위험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1. 이론상의 위험지역은 항공기의 전장을 1변으로, 동체의 길이와 폭을 더하여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다.
- 2. 항공기 전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정할 때에는 항공기 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이론적 위험지역의 산출 공식은 표 12와 같다.

<표 12> 위험지역의 산출 공식

전 장	이론적 위험지역(AT)
L<12m	L×(12m+W)
12m≤L<18m	L×(14m+W)
18m≤L<24m	L×(17m+W)
L≥24m	L×(30m+W)

주) L = 항공기 전장, W = 기체 폭

**제138조(구조소방등급의 변경)**

- ①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소방등급의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2.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상향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소방등급의 항공기의 취항 또는 운항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하향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구조소방 등급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만약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감소하여 제1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조소방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총 이착륙 횟수
  5. 구조소방등급 변경에 따른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의 변경사항
  6. 만약 등급을 상향하고자 경우에는 항공기 규모 상향에 따른 구조소방 직원의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실시사항
  7. 구조소방등급 및 등급결정항공기 변경에 따른 협정병원, 중장비 지원, 협정 소방서 등 지원협정 상 변경 사항 등

## 제16절 활주로 안전

### 제139조(일반)

- ① 활주로 침범 및 이탈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활주로 안전의 개선은 효과적인 위험 식별 및 위험 완화를 통해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개발되어야 한다.
- ③ 활주로 안전 성능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감시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1항에서 제3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0조(공항 활주로 안전팀 구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내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 및 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활주

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각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의 장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소속공무원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활주로 안전팀(이하 “안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 안전위원회 및 안전팀의 구성 및 운영 등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 제141조(활주로 침범 방지)

① 기존 공항시설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공항시설의 설치에 활주로 침범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활주로 침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획된 작업 및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한 기동지역 절차의 변경은 활주로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동지역의 절차 또는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상 항행안전시설 오류 및 무선통신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유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관제탑의 시야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시성의 제한 등 기동지역 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여야 한다.
4. 활주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활주로 침범 방지를 고려하여야 수립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침범 주의지점(Hot spots)을 나타내는 비행장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지도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기동지역 운전자에게 배포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식별된 주의지점(Hot spots)과 관련된 안전위험은 가능한 빨리 평가되고 완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 관제기관과 협력하여 활주로 침범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활주로 대기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안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차량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2. 허용치 이하의 저시정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이 계획된 경우

- 3. 비행장 배치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운영 등)
- 4. 의도하지 않은 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이 활주로 및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
- 5.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운영 인력으로부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명확한 등화, 표지, 표지판에 대한 보고가 수신된 경우
-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제공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 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운전자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⑥ 공항운영자는 모든 기동지역 차량 운전자가 근무 시작 시 기동지역 운영상태(사용활주로, 시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근무하는 동안 상황인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의 모든 차량의 통제를 위한 절차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2조(활주로 이탈 방지)**

- ① 계기착륙시설(ILS)이 운영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계기착륙시설(ILS)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 보호되고 신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에 설치된 항공등화, 표지판 및 표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목표지점(Aiming point)과 시단은 명확하게 보이고, 표면과 대조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
  - 2. 활주로 대기지점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을 설치할 것
  - 3. 중간이륙을 위한 활주로 대기지점에 이륙활주가용거리(TORA)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의 사용을 고려할 것
  - 4. 남은 활주로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사용을 고려할 것
- ③ 공항운영자는 적절한 활주로 마찰성능이 유지되도록 활주로 표면의 고무 퇴적물 및 기타 오염물질은 적시에 제거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풍향계와 풍향지시기가 활주로 및 접지구역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된 활주로 공시거리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일시적으로 축소된 활주로 길이(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인한 축소 등)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시 등화, 표지, 표지판이 감소된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전달된 내용 확인
3. 중간 활주로 진입지점에 대한 제한사항 확인

**제143조(활주로 혼동)**

① 공항운영자는 안전팀에서 활주로 혼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야간 운항
2. 저시정 운항
3. 악기상
4. 무선통신(RTF) 통신의 정확성 부족
5. 부적절한 등화, 표지판, 표지
6. 교차로 출발(Intersection departures)
7. 작업(WIP)
8. 평행 유도로 이용
9. 출발허가의 수정 또는 지연 발부
10. 시간의 압박(Time pressure)
11. 유도로 및 활주로 형상과 구성
12. 지상이동 경로의 활주로 이용

② 공항운영자는 안전팀에서 기동지역에서 잘못된 활주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없도록 완화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1. 주의지점(Hot spots)의 적절한 식별 및 공표
2. 활주로 진입을 위한 유도로의 크기 및 폭 감소
3. 특정 활주로 진입을 위한 유도로의 폐쇄
4. 작업 중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지판은 가릴 것
5. 유도로 지상 등화 경로 격리
6. 시인성이 향상된 표지 사용

③ 공항운영자는 안전팀이 제2항에 따라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요소를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4조(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 ① 활주로 운영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쇄 절차는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 업무기관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절차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1. 역할과 책임
  - 2. 정보의 공표 방법 및 활주로 운영 권고 조항
- ②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른 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폐쇄 및 운영 재개에 대한 결정을 하며,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폐쇄 및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하루 중 또는 연중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절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제145조(자체 안전점검)**

- ① 공항운영자는 이 기준과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입주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에 포함되어야할 최소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의 관리·운영
  - 2.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관리·운영
  - 3. 계류장 안전관리
  - 4. 시각지원시설의 관리·운영
  - 5.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 6.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 7. 야생동물위험 관리
- 8. 장애물
- 9. 위험물 관리
- 10. 설빙관리(동절기에 한함)
- 11. 구조 및 소방
- 12. 안전관리시스템

**제146조(점검 시기)** 제14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ClassIV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공사 작업 중이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인 때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 3.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필요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분야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4. 제43조에 따른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제51조에 따른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한 후 특별점검을 실시 할 것

**제147조(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공항운영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각 공항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 2.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절차, 시설·장비
- 3. 점검 절차
- 4. 점검 중에 발견된 장애 상황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보고체계

**제148조(점검 결과의 확인)**

- ① 공항운영자는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검사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보고서에는 점검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49조(점검기록의 보관)** 공항운영자는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절 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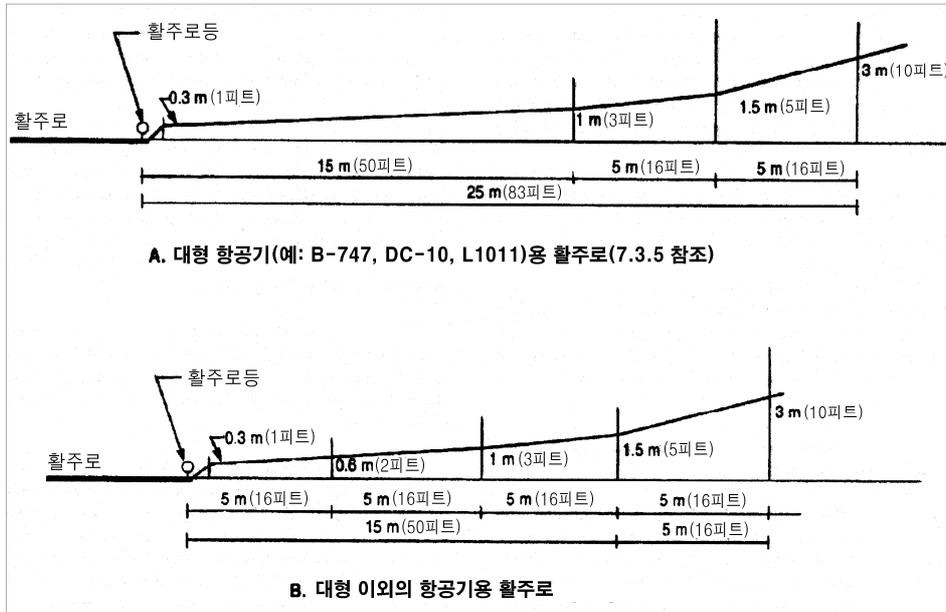
### 제150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동절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빙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계획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눈, 진창,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IV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 사용자, 구조 및 소방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사용하는 활주로
    - 나. 사용하는 활주로의 연결된 유도로
    - 다. 계류장
    - 라. 대기구역
    - 마. 기타지역
  3. 공항운영자는 기상이변에 의한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금속 부식성이 높은 제설제 또는 공항 환경 및 포장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공항 제설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회람(AIC) 발행 요청 및 공항 내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보유중인 장비의 세부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ClassIV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공항운영자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설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공항이용객에게 신속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1조(공항 제설계획 수립)**

- ① 공항운영자는 매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시작 최소 1개월 전에 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설기간은 해당 공항의 계절특성 및 공항운영 상태에 따라 동절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제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항운영자, 공항기상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의 사전 협의 및 협의결과 반영(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제설구역·방법·정보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사항 포함)
  - 2. 제설작업 책임부서 지정 및 부서 간 업무분담, 비상연락 및 명령체계 등 공항 운영자의 제설대책반 운영
  - 3. 공항 운영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공항기상업무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통신망 등)
  - 4. 제설작업에 이용 가능한 장비
  - 5.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대응계획
  - 6.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의 통보 방법
  - 7. 활주로 마찰측정장비의 사용 (마찰계수표 등)
  - 8.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장소 지정
  - 9. 모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수 있는 경보체계
  - 10. 제설장비의 정비인력 운영계획 및 지원절차 (작업 교대조의 편성 및 소집절차 등을 포함)
  - 11. 장비의 배치 및 세부 제설작업방법(제설작업 능력 산출근거 포함)
  - 12. 제설작업을 위한 활주로 폐쇄시기 결정 등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절차
  - 13. 적정한 제설제 확보, 보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설제 산출근거 포함)
  - 14. 필요시, 제설 협력업체 지정 및 추가 동원장비

**제152조(눈더미의 허용높이 기준)**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인접지역의 눈더미(Snowbank)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눈더미의 최대 허용높이 기준

**제153조(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공항운영자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을 확인하고 제설작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 모든 제설장비의 정비 및 수리
2. 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3. 제설자재 및 도구 준비
4. 눈 덮인 활주로의 가장자리 표시물(Marker)의 준비 등(제설 대상 활주로의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설 협력업체 지원 현황 검토 확인 등

### 제19절 공항 비상계획

#### 제154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 8k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항기능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항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다른 공항 비상계획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 문서로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개정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계요원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동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자의 임무를 절차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항 비상계획의 세부내용은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행해지는 운항 및 그 외 활동과 조화된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공항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상황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조에 관한 사항
  - 2. 기후 및 근무환경(현장지휘관 등)에 관한 사항
  - 3. 현장 활동시 주변 환경요인 고려에 관한 사항
  - 4. 구조 및 소방시 조별협동에 관한 사항 등

**제155조(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비상사태의 유형
  - 2.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기관 및 업체
  - 3. 각각의 비상유형별 비상운영센터, 지휘본부,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
  - 4.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
  - 5. 공항 격자지도
-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절차를 공항 비상계획에 수록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비상지원 협정기관(의료시설, 구조 및 소방, 중장비)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
    - 다. 부상자, 사망자 및 기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내의 수용시설 또는 인접지역의 수용시설
    -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일반인 통제업무를 제공키로 합의한 기관의 명칭 및 위치
    - 마.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책임부서와 기관의 명칭, 위치와 전화번호
    - 바. 그 밖의 공항 비상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
  - 2. 다음 각 목의 업무절차
    - 가. 비상운영센터 및 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절차

- 나.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과 보행 가능한 부상자에 대한 분류, 안내, 수송 및 보호절차
- 다.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절차
- 라. 비상경보체계 및 절차
- 마. 비상대응과 관련하여 공항운영자와 관제탑 간의 협조절차
- 바. 비상계획과 관련된 기관 및 직원에게 항공기 사고지점, 사고관련자의 수 및 기타 사고의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는 절차
- 사. 수상 또는 늪지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해당 공항의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 범위 내에 접근·출발구역이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 아. 공항 인근에 수상, 늪지 또는 위험지형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계획의 점검 및 평가절차

**제156조(비상사태의 유형)** 제15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서 대비하여야 할 비상사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내에서의 항공기 사고
2.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
3. 비행중인 항공기의 고장 등 (완전 비상사태 및 준비상사태)
4. 건물 등 시설물 화재
5.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파위협 등
6.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
7. 자연 재해
8. 위험물(dangerous goods) 관련 사고
9. 수상의 항공기 사고(해당 공항의 이·착륙로가 폭 1,0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10. 국제항공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공항에 한한다)

**제157조(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이동지휘소(mobile command post)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달리 지휘 통제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에 지휘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초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운영센터는 공항시설에 상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업무 총괄 및 전체적인 협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지휘소는 비상상황 발생장소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관련기관(부서) 간의 국지적 협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운영특성에 맞게 이동지휘소의 형태나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8조(비상통신시스템)**

① 공항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를 포함하여 모든 비상대응 관련기관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비상시 지원 출동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적정수의 무선통신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무선통신기 및 전화망 등 통신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9조(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지방항공청, 항공사, 경찰, 구조 소방기관, 의료기관 공항의 주요 상주기관 및 모든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기관 및 관련자가 비상계획의 수립 및 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에 관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관계자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적절히 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공항의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훈련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3년 주기로 모듈을 구성하여 첫해에 첫 번째 모듈테스트를 시작하여 3년이 되는 마

지막 해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비상 또는 종합·부분훈련 이후 발견된 문제점은 공항 비상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3. 도상훈련 : 6개월 1회 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훈련을 실시한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주1) 종합훈련의 주된 목적은 공항 비상계획이 각종 유형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부분훈련은 통신체계와 같은 공항 비상계획의 일부 또는 개별기관의 대응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2) 모듈러테스트의 목적은 수립된 비상계획의 특정요소에 노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⑥ 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의 따른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일 최소 14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훈련 실시계획을 알리고,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비상연락망 관리)** 공항운영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기관 및 업체에 신속·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할 것
2. 비상연락 전화번호는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번호로 제한할 것
3.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할 것(점검자 및 점검일시 포함)
4. 비상연락망이 변경되는 때에는 수정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서에 즉시 배포할 것

**제161조(공항 격자지도(Airport Grid Map))**

①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의 첨부물로서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준비하여야 할 공항 격자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 내부 격자지도
  - 가. 유도로

- 나. 급수전의 위치
  - 다. 집결지 및 대기구역
  - 라. 공항 접근도로
  - 마. 공항 경계
  - 바. 개정일자 등
2. 공항반경 8km지역까지의 공항 외부 격자지도
- 가. 공항의 경계
  - 나. 주변 지역
  - 다. 접근도로
  - 라. 집결지
  - 마. 의료기관 (치료범위 및 이용 가능한 병상 수 포함)
  - 바. 개정일자 등
-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한 격자지도를 소방 및 구조, 경찰, 의료기관 등 비상지원 협정기관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격자지도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차량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관제탑, 계류장관제소 및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접근 관제소)
  2. 항공정보업무기관
  3. 소방대
  4. 구조 및 소방차량
  5. 비상에 대응하는 모든 차량

**제162조(격리주기위치의 지정)**

- ① 공항운영자는 불법간섭행위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의 처리 등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주기장, 건물 및 기타 사람이 많은 장소로부터 최소한 100m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지하에 항공연료, 전기 및 통신케이블과 같은 시설이 매설된 곳은 피할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의 특성 상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하의 항공연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장 공항안전관리시스템

## 제5장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 제163조(일반)

-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의 국가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업무운영상 통제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조직구조 내에서의 직원의 의무, 권한, 책임 사항이 명시된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및 지상조업과 관련한 해당 공항의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취급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공항안전과 관련해서 공항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상주기관 및 입주업체 등 모든 공항 사용자들에게 안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항공안전장애 발생 등 안전상의 사고 등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요구와 외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입주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사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제164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 ①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와 안전 수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획득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다음의 필수 요소들이 해당 공항의 공항안전관리 시스템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과정과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적용 가능한 안전정책
  2. 안전 이슈에 대한 개인 및 그룹 책임의 구성과 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조나 조직
  3. 안전 수행 목표 수립,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의 배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제1권의 표준 및 권고방식과 국내 법규 및 표준, 규칙, 또는 훈령의 관점에서 항상 위험을 합리적 실제적인 수준으로 가장 낮게 통제하기 위한 형태를 제공과 같은 안전관리시스템(SMS) 전략 및 계획
  4. 능률적인 안전 메시지의 소통과 안전 요구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방법, 절차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실행
  5.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통합(안전업무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중요 안전

지역에 대한 시행 시스템

6. 사고, 사건, 불평, 결함, 실수, 차이점, 실패,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의 분석 및 관리가 포함된 안전도 향상, 사고 예방 및 위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측정
  7. 안전에 대한 질적 통제를 위한 내부 안전 감사와 검토 시스템
  8. 항공기 포장 강도와 공항 등화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공항 운영 및 유지관리 기록은 물론 공항 시설 안전에 관련된 모든 안전자료의 문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차트를 포함한 기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의 훈련과 그 자격을 시험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포함한 훈련과 자격
  10. 공항에서의 건설작업을 위한 계약서 상에 안전 관련된 조항의 통합과 시행
-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정책 및 목표
  - 가.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 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 다.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
  - 라. 비상대응계획 조정
  - 마. 안전관리시스템 문서화
2. 위험 관리
  - 가. 위해요인 식별
  - 나. 위험 평가 및 경감
3. 안전 보증
  - 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 나. 변화 관리
  - 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4. 안전 증진
  - 가. 안전훈련 및 교육
  - 나. 안전정보의 소통

**제165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 ①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경영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최고 관리자(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철학, 정책방향,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기관”의 안전 관련 책무 등을 반영한 안전정책(Safety Policy)을 수립한다.
2. 안전정책은 기관의 관리자(경영자, accountable executive)가 서명하여야 하며, 증서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간 또는 게시 한다.
3. 안전정책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2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4. “공항운영자”는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국가 안전정책·항공 안전목표·안전 기준 등 달성을 위한 자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항의 규모나 운영환경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의 구성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
3. 공항운영규정에 다음 각 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의 명시

- 가. 안전성 향상계획의 수립 및 관리
- 나. 원활한 위험요인관리와 위험성 평가
- 다. 안전문제에 관한 조언
- 라. 위급상황 대처 계획수립
- 마. 사고와 준사고의 초등조치
- 바. 적절한 안전 정보의 전파
- 사. 직원의 안전교육과 자격관리
- 아. 안전관리 문서화의 조정

자. 안전관리조직(예 : 안전위원회,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등)에의 참여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명확한 의사소통 및 보고 경로와 책임을 가질 것
5. 안전조직 (Safety Organization)

- 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한다.
- 나.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최고 관리자(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직보·조언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효과적인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개별 단위 조직별 또는 조직내에서 안전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안전관리자의 수는 “공항운영자”의 규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6. 안전위원회 (Safety Committee)

가. 안전목표, 안전계획의 심의, 안전성과에 대한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및 심의, 결정 등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나. 안전위원회는 고위 관리자(경영진)로 구성되며,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특정한 문제점의 논의 및 안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준비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나.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시스템 요소에 관한 사항

라. 내부 시스템과 국내외 표준 간 차이점 분석에 관한 사항

마. 고위 경영자, 안전관리자, 직원의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바. 비처벌 안전보고제도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사. 안전요인 의견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

아. 안전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등

2. 능률적인 안전 메시지의 소통과 안전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방법, 절차를 포함한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실행

⑤ 공항운영자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협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시 다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 한다.

가. 정상 운영환경에서 비상 운영환경으로의 효과적인 전환

나. 비상상황 책임자(authority)의 지정

다. 비상상황에서 책임 지정

라. 비상상황에서 대응활동의 조정

마. 운영의 지속적 안전성 또는 정상 운영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

2. 비상대응계획(ERP)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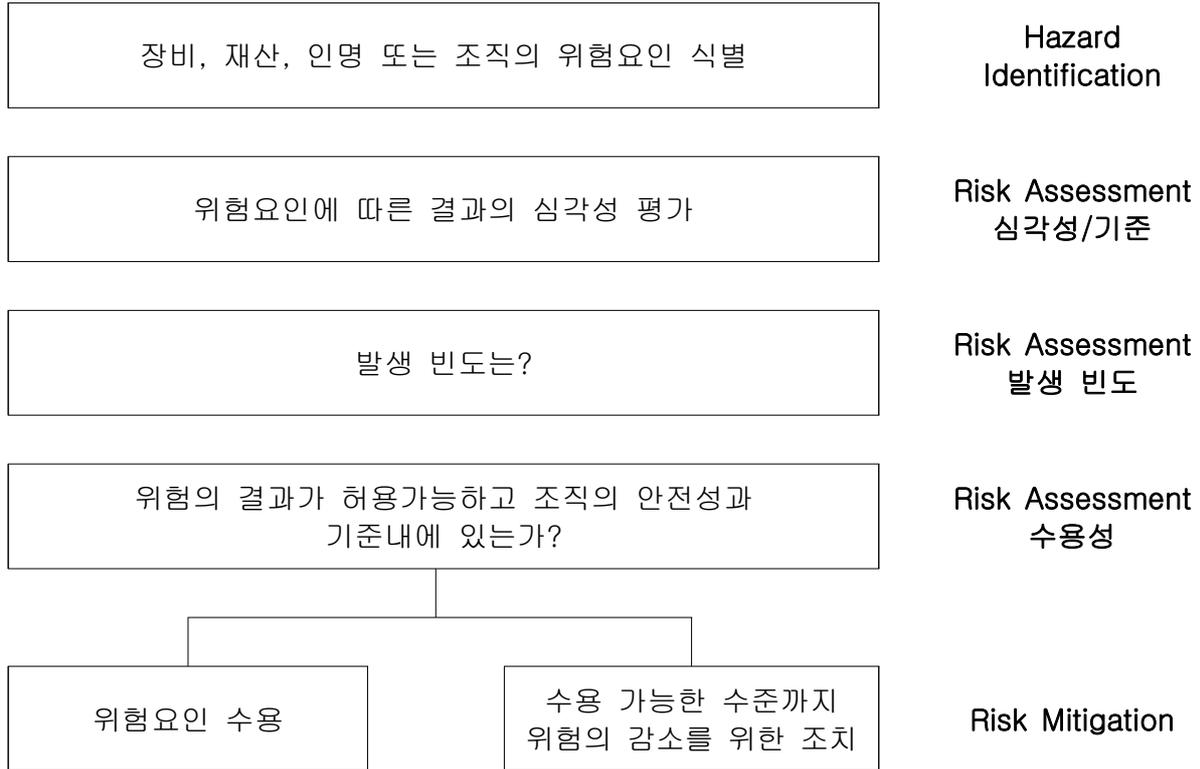
⑥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정책(Safety Policy)
  2. 안전목표(Safety Goal)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요건, 절차 및 프로세스
  4. 절차에 대한 책임 및 권한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성과물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등
- ⑦ 공항운영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 가. 피드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상 업무에 관련된 사항
    - 나.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반 시설(Infrastructure) 또는 장비(Equipment)의 특성 변경
    - 다. 기동지역에 위치한 시설(Facilities) 및 시스템의 특성 변경
    - 라. 접근 방식, 활주로 기반 시설, 체공 위치와 같은 활주로 운영상의 변경
    - 마. 전기 및 통신망 등의 비행장 네트워크에 대한 변경
    - 바. 공항운영증명(Aerodrome's certificate)에 명시된 항목에 영향을 주는 변경
    - 사. 계약된 제3자와 연관된 장기적인 변경(급유장비 변경 도입 등)
    - 아. 비행장 조직 구조의 변경
    - 자. 비행장 운영 절차의 변경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고려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비행장 배치(활주로 길이, 경사, 표고, 유도로, 주기장, 탑승교, 시각 지원시설, 소방구조업무 시설 및 기능 등)
    - 나. 항공기 유형, 비행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항공기의 규격 및 성능 특성
    - 다. 항공교통량 밀도 및 분포
    - 라. 지상조업업무(Aerodrome ground service)
    - 마. 공대지 통신, 음성 및 데이터 링크 통신을 위한 시간 변수
    - 바. 감시체계의 종류 및 기능, 관제사 지원 및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 사. 계기비행절차 및 관련 장비(Flight instrument procedures and related aerodrome equipment)

- 아. 협력적 의사결정과 같은 복잡한 운영절차
  - 자. 지상 이동경로 안내 시스템(A-SMGCS) 또는 기타 항행지원시설
  - 차.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 또는 위험한 활동
  - 카. 비행장 및 주변의 계획된 공사 또는 유지보수 업무
  - 타. 국지적 또는 지역적 악기상 조건(윈드시어)
  - 파. 운영패턴 또는 동일한 공역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공역의 복잡도, 항공교통업무(ATS) 항로 구조 및 공역 분리
4. 안전평가는 다음의 4단계의 안전평가 처리절차(별표 14)에 따라 진행된다.
- 가. 제1단계 : 안전고려사항 정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나. 제2단계 : 위험요소 식별절차 이행
  - 다. 제3단계 : 위험평가 및 위험저감절차 이행
  - 라. 제4단계 : 위험저감 방안 이행 계획 마련 및 수행된 안전평가에 대한 결론 도출
5. 안전고려사항 정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6. 위험요소 식별절차(Hazard Identification Procedure)
- 가. 공항운영자는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인 안전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통하여 위험요소의 효과적인 수집, 기록, 조치 및 피드백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나.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별표 13에서 정한 공항운영분야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일시 및 장소
    - (2) 관련자 정보사항
    - (3) 발생내용(요약)
    - (4) 추정되는 원인
    - (5) 기타 필요한 사항
  - 다.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이동지역 통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무단으로 유도로를 침범한 경우
    - (3) 무단으로 활주로를 침범한 경우
    - (4) 이동지역 포장면의 파손 및 침하를 발견한 경우
    - (5) 공항 내에서 화재를 목격한 경우
    - (6) 항공기 급유 중 기름이 유출된 경우

- (7) 이동지역에서 항공기의 부품·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을 발견한 경우
- (8)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목격한 경우

<위험 관리절차 (Risk Managemen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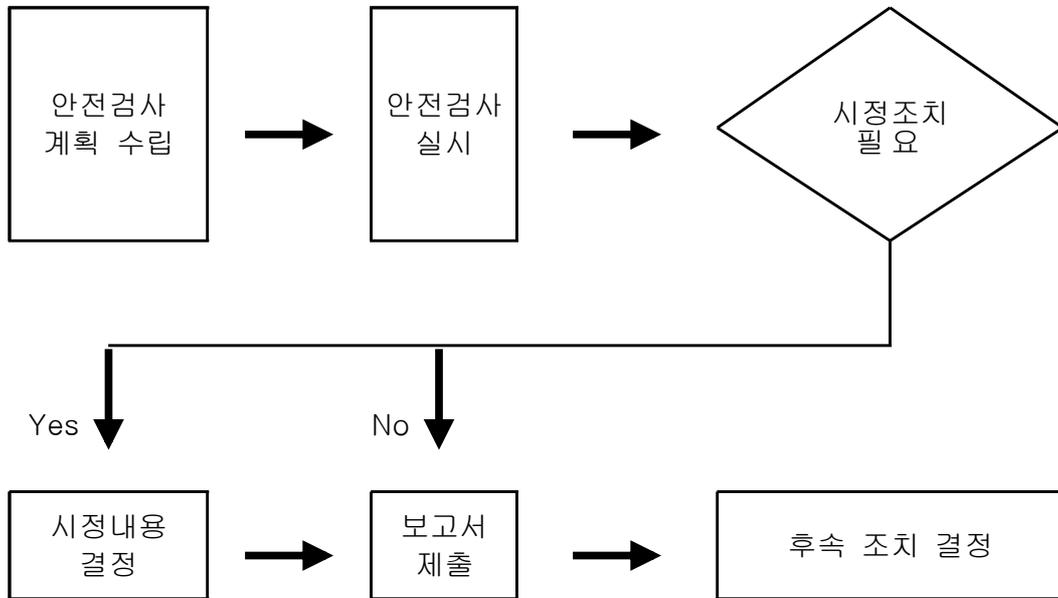
- 7. 위험 평가 및 저감절차(Risk Assessment) : 공항운영자는 위험요소의 식별,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8. 이동지역 등에서의 공항안전상태를 항상 감시(Monitoring)하고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 경향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9. 제2호에 따른 수용성 검토는 제4호에서 제시된 안전평가 처리절차를 따른다. 다만, 2단계 위험요소 식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용성검토표(별표 15)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항공기의 물리적 및 운영상 특성
  - 나. 적용되는 규제적 요구사항
  - 다. 새로운 항공기의 필요조건에 대한 비행장 기반시설 및 설비
- ⑧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모니터링 및 측정

- 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의한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 등 안전성과 모니터링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안전성과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안전도가 기준 이하로 기록될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 및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 다. 항공안전보고제도의 수립 및 운영
  - (1)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항공안전보고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항공안전보고제도는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 System)와 자율보고제도(Voluntary Reporting System)로 구성한다.
  - (3) 자율보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및 비처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수집된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분석,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 가. 공항운영자 관리조직 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시행(Practices)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안전 감사를 실시한다.
- 나. 내부 안전감사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조직관리 :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관리자의 지정, 커뮤니케이션 절차, 보고제도 운영, 안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사항 등
  - (2) 관리 시스템 : 인수·합병, 안전관리자의 이동·이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성 평가 등
  - (3) 안전관리자 선발 및 훈련 : 이력, 경험 등의 선발기준, 안전교육훈련 이수현황, 정기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 다. 위 2항의 사항을 감사하는 자는 해당분야의 표준 및 권고사항, 안전운영절차 및 인적요인에 관한 교육훈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감사절차 및 감사내용
  - (1) 감사절차



(2) 감사내용

- (가) 감사계획 : 1인 이상의 적절한 자격조건과 경험을 가진 자로 감사팀 구성, 세부계획 및 일정수립
- (나) 감사실시 : 내부감사에는 입주업체의 안전 관련 작업을 포함한 문서 감사와 업무감사를 시행하여,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 재검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행

3. 변경관리절차(The Management of change) : 공항설계, 운영절차, 장비 등 변경 시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성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변경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지속 개선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MS)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자체 안전조직에서 별표 12에 정한 점검항목을 연1회 이상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

⑨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증진활동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 가. 안전문화의 조성, 촉진 및 안전관리(SM)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나.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신규 임용(초기), 정기,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분야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기교육, 정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초기교육 : 신규 담당자에게 SMS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3일 이상을 시행한다.
    - (나) 정기 및 보수교육 : 초기교육의 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2일 이상을 시행한다.

2. 커뮤니케이션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에 대한 운영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전달, 제도의 신설·변경 등 도입에 따른 설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 활용한다.

- 가. 안전정책
- 나. 안전절차
- 다. 회보
- 라. 게시물
- 마. 인터넷

3. 협력적인 안전문화의 진흥

가.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실천하는 문화적 자세를 견지한다.

- (1) 하위 직원의 비판, 의견 제시, 피드백 수용 분위기 조성
- (2) 경영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 (3) 발견된 결함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 (4) 비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 조성

나. 공항운영자는 안전문화의 내재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5가지 적극문화(Positive Culture)를 증진 한다.

- (1) 정보화문화 (Informed Culture) : 사고 잠재요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법 등을 전파
- (2) 학습문화 (Learning Culture) : 안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의식
- (3) 보고문화 (Reporting Culture) :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전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 (4) 공정문화 (Just Culture) :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식, 구별하여 실행하는 문화
- (5) 적응문화 (Flexible Culture) : 다양한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문화

## 제6장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

## 제6장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

### 제1절 차량등의 관리

#### 제166조(차량등의 등록)

- ① 차량 및 장비(이하 이 장에서는 “차량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차량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소유자”라 한다)가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을 사용하려면 공항운영자에게 차량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격납고, 정비고 등 일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차량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7조(등록번호 등의 표시)

- ①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량등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등에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차량등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또는 등록번호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의 등록번호판, 등록번호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미등록된 장비에 대해서도 공항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제168조(안전검사)

- ①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166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차량등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이「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되어 계속 검사를 받는 경우와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등을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운전자 관리

### 제169조(운전자의 승인)

- ① 소유자는 제16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을 운전 또는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자 승인을 받고 운전·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등의 운전·사용에 필요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승인에 필요한 사항,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0조(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거나 취소된 자
2.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운전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71조(운전승인현황 관리)

- ① 공항운영자는 제169조에 따라 운전승인을 한때에는 소속별 운전자 현황을 기록대장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미승인 운전자의 운행여부에 대하여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는 운전승인을 받은 소속 운전자 현황을 기록대장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2조(운전자 변경신고)** 소유자는 운전승인을 받은 소속 운전자의 퇴직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절 이동지역 안전교육

**제173조(수행자에 대한 교육)**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2.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3.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규정” 등 공항 보호 구역 관련 규정
4. 공항 보호구역 항공업무 수행자가 지상조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74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① 공항운영자는 제169조에 따라 신규로 공항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받으려는 운전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신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운전자에게 제173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시정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은 저시정운영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 및 구조
2. 표시물, 표지, 표지판(Signs) 및 등화
3. 무선교신 방법
4. 표음식 알파벳(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
5.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 규칙
6. 당해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
7. 규칙 제5조의 항행안전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호구역 위치 등에 관한 사항
8. 공항에서 사용되는 격자지도 및 다른 표준지도상에서 표시된 지점 확인에 관한 사항
9. 이동지역 경계에 관한 사항
10. 관제탑 빔총신호에 관한 사항
11. 비상지원차량을 위한 경로 설정에 관한 사항

- 12. 항공기 후류의 위험에 관한 사항
  - 13. 비행장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특정 경로에 관한 사항
  - 14.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
-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공항보호구역 관련규정을 위반한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규정 위반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절 차량등의 운행

#### 제175조(교통안전시설)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및 차량등의 통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표시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오손된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등으로 제176조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이를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지체없이 교육하여야 한다.

#### 제176조(통행방법)

- ① 차량등의 운전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등으로부터 운전자가 이탈하는 행위
  - 2.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
  - 3.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다만, 관제탑의 통제에 따라 차량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제외함)
  - 4. 난폭운전
- ② 공항운영자는 제175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제한속도
  - 2. 차량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

3. 차량통행로(전용차선 및 주변도로 등)
  4. 차량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5. 항공기, 비상 차량등, 그 밖의 차량등의 통행우선권
  6. 차량등이 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장소
  7. 기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8. 일시방문차량 운행 시의 이동통제방법
  9. 차량등이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
  10. 차량등의 견인방법
  11. 차량등과 항공기의 안전거리
  12.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
  13. 주차구역 및 수하물 작업장에서 도로로의 진출 또는 진입 시의 통행방법
  14. 그 밖에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사람 또는 차량등은 공항보호구역에서 공항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77조(차량등의 사용 및 취급)**

- ① 소유자는 격납고, 정비고 등 격리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등에 방화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차량등의 청소 및 급유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등의 경미한 수선은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변환경 피해예방조치를 취한 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행할 수 있다.

**제178조(출입제한)**

-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등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등이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기동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 전 감독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기동지역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감독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솔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관제탑과 상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79조(안전조치)**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의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사람, 항공기 및 차량등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행제한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절 지상안전사고

#### 제180조(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

-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공항 내 항공정보실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접수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25의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징구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1조(지상안전사고의 조사)

-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지상안전사고는 감독기관장이 조사한다.
- ② 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관련자의 음주·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 기타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항운영자 및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감독기관장의 지상안전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감독기관장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의 발생경위, 처리결과 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82조(지상안전사고 예방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매뉴얼에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지상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2. 강풍, 저시정, 강설 등의 기상상황에 따른 특별점검 및 순찰
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와 공항 보호구역에서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등의 노후, 고장에 따른 위험 방지대책
2.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대책
3. 불안정한 조업방법 및 조업절차의 개선
4. 추락, 구조물의 붕괴, 물체낙하 등에 대한 방지대책
5. 과로 방지 등 근무 환경 개선 대책

### 제6절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

#### 제183조(항공기 엔진 시운전 장소)

①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에 항공기 정비 목적의 엔진 시운전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장소의 출입절차, 운영시간, 안전대책, 장애발생시 조치사항,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이동지역에서 엔진 시운전작업자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엔진 시운전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엔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제반 안전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4조(긴급차량 출동보고)**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출동시 이를 지체없이 감독기관장 및 항공정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5조(위험물 수송)

① 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수송 차량 및 장비의 소유자(이하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라 한다)에게 위험물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장소 확보, 이동경로 지정 등 위험물의 지상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지정·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색, 깃발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타 차량 및 장비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에 관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86조(이물질 제거)

① 누구든지 이동지역에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동지역에 방치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은 항공정보실(소)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제탑과 무선 교신하여 허가를 받고 제거 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수거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이 항공기와 관련된 부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공정보실에 보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7조(급유작업 등)

①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급유작업은 규칙 제19조제1항 및 이 기준 제62조에 따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급유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는지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와 급유 차량·장비 소유자는 급유 또는 배유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에 부합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급유관련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절차
2. 종사원 교육 및 관리 절차
3. 정전기 방지 절차

- 4. 오염 방지 절차
- 5. 화재 예방 절차
- 6. 관련 기록 유지 절차

**제188조 (공항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보호구역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 보호구역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절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

**제189조(이의신청)** 법 제3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0조(규정 위반자 제지 및 퇴거)**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차량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공항 보호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승인 및 차량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91조(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항공업무 수행자는 문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규정 위반 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의 규정 위반 사례를 관련 전직원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절 보칙

#### 제192조(협의회 구성·운영)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보호구역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

영을 위하여 관련항공사, 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제193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 공항운영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공항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배포·공지하여야 한다.

## 제7장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 제7장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 제1절 시설 운영

#### 제194조(운영자의 책무)

-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사용자가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책임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제21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받았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항공유 품질관리)** 운영자는 항공유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공유 출고 전 밀도, 수분, 외양, 전기전도도 등을 검사한 출하시험 성적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
2. 운영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하 항공유에 대한 제조사 성분검사서 및 출하시험성적서 등 품질 증빙자료를 제공
3. 별표 26에서 항공유 품질과 관계된 여러 점검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보관
4. 항공유 배관급유시스템(hydrant system) 설비가 구축된 공항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유배관 플러싱(flushing) 청소를 실시
5. 항공유 저장탱크는 주기적으로 내부검사, 청소를 실시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기 급유 기준(JIG)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준용

**제196조(종사자 근무계획)** 운영자는 필요시 항공기 급유시설의 24시간 운용체제에 맞도록 종사자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7조(고장보고)**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의 파손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현장책임자 및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8조(근무제한)** 현장책임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또는 근무 전 술을 마신 사람
2. 당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11조에 따른 별표 27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199조(운영지침서 비치)**

- ① 현장책임자는 종사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절차서와 매뉴얼 등이 포함된 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이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00조(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항공기 급유시설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트, 탱크 또는 다른 위험지역의 무단출입을 피하고, 통제할 것
2.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기여부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3. 작업자는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를 갖출 것
4.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
5. 항공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201조(비상대응절차 수립)**

-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유시설에서 항공유 대량 유출 상황
  2. 급유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상황
  3.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상황
- ②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서 및 관계기관과 긴급동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2조(비상훈련 실시)**

-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비상대응절차서에 기술된 주요 상황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공항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실제연습을 실시하되, 실제연습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실제연습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비상대응절차서를 숙지하고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3조(비상훈련 결과의 반영)** 운영자는 비상훈련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대응절차서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04조(사고 시 조치 및 보고)**

-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중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사고 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낙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고를 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② 급유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유지보수**

**제205조(유지보수 계획 수립)** 급유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급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 2.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 3. 유지보수 및 연간 정기점검 계획

4. 계량장비 및 예비품 확보 계획
5. 시설개선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6조(이력관리)**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기 급유시설 이력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운전·점검·정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설비 고유명
2. 설비 제원
3. 점검·정비 및 주요 고장내역

**제207조(정기점검)**

①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
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
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
4. 분기점검 : 매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
5. 연간점검 : 매년하는 점검 및 정비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따른 기준 및 별표 26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8조(특별점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인명 또는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항공청장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을 경우

②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제3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9조(공구 및 예비품)**

- ① 운영자는 운용 중인 설비에 적합한 공구 및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적정 보유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 등의 성능을 유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훈련 등**

**제210조(교육훈련 운영)**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1조(교육훈련 계획)** 현장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결과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12조(교육훈련 과정)**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7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초기교육훈련 :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2. 정기교육훈련 :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213조(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는 별표 27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중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기 급유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별표 27의 교육훈련과정 중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은 각각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4조(교관의 자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을 교육훈련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전산, 소방, 화공 또는 위험물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급유시설에서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제215조(교관의 임무)**

- ①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사자 교육훈련과정 개발
  2. 교육훈련 기자재 및 교재훈련 준비
  3.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4. 교육훈련생 평가
  5.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
- ② 교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에게 출장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6조(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결과 부적합(U)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2개월 이내에 동일과정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 ④ 운영자는 제3항의 재교육 불가능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제4절 안전관리**

**제217조(안전교육)**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 전원

- 2. 교육시간 : 월 2시간 이상
- 3. 교육형태 : 강의식, 시청각, 실습, 토의, 회람 및 전파교육 등

**제218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9조(운전정지 명령)**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급유시설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 1. 인명피해 발생 및 시설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2. 안전운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220조(급유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급유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안전사고 예방등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절 보칙

**제222조(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운영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급유 시 항공유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
- 3.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작업을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장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제8장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제1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구축·관리·운영

**제223조(공사 시 안전관리)** 공항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후 지하관로시설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하여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지하관로시설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와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방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주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노출된 지하관로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5. 지하관로시설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4조(운영 시 안전관리)** 지하관로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관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관로시설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정 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관로시설의 설치시기, 노후화 등을 판단하여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로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하관로시설의 노출, 파손, 이상징후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관로시설이 파손이나 훼손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관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5조(지하관로시설의 자료수집 및 관리)**

- ① 관리주체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지하관로시설에 관한 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지하관로시설에 관한 자료를 분실, 도난,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6조(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 지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
  - 가.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나. 공항별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지하관로시설의 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시행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시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준공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항공청은 지하관로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는 각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7조(자료의 검토처리)**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성 여부를 검토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자료의 보완이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8조(보고의무)**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지하관로시설의 관리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관로시설의 관리·운영 체계
2.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의 관리·운영실태

- 3. 공간정보 제공현황
- 4. 기타 지하관로시설의 관리·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계획 등

**제2절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운영**

**제229조(준용 규정)**

-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을 준용한다.
-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관련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30조(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 ① 관리주체의 장이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 ②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및 최신의 공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에게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1조(공간정보의 갱신)**

-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통보받지 못한 갱신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수집·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의 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하관로시설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및 공사비 등 공사현황
  - 2.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및 위치, 매설 깊이, 규격, 재질 등
  - 3. 지하관로시설의 공간정보화 유무 및 변경사항
  - 4. 지하관로시설의 유지보수사항
  - 5. 기타 공간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관로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내용을 공사시행전에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최종 정보를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갱신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에게 정확히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⑥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2조(자료의 복구)**

-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자료가 파손·멸실·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33조(장애 대책 및 조치)**

-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4조(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공간정보 이용을 위한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승인 및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발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항내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공간정보의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 2. 화재, 방재, 재난, 재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3.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관리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 이용을 해당 공항 및 해당 업무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 및 열람·전송·저장·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관리주체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⑦ 관리주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증설·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35조(프로그램 관리 등)

-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의 변경이력에 대해 사용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용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공간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변경 또는 개선을 건의 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제236조(자료제공)

- ①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에게 출력물 등으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2. 공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신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타당성
2. 활용 후 관리대책
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4. 보안상 자료의 제공 가능성 여부
5.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④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7조(자료제공의 제한)**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39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훼손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5. 관리주체의 장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절 보안관리

**제238조(보안관리)**

- ① 이 기준 시행에 따른 보안관리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 ② 관리주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4조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제·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절 보칙

**제239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지하관로시설의 구축·운영·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라 연1회 이

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관로시설 구축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2. 지하관로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표지 관리상태
3. 지하관로시설의 유지·관리의 적정성
4. 공간정보 갱신의 적정성
5.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안관리의 적정성
6. 기타 지하관로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0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운영시스템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시스템의 아이디어 발급
5.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현황조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의 장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의 갱신,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관리주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 업무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주체의 장이 정한다.

### 제241조(외주용역)

① 관리주체의 장은 제24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에는 관리주체의「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취득업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공간정보를 갱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제242조(예산지원)**

① 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표준화되고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장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제9장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제1절 일반사항

**제244조(세부기준 및 절차)**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BHS”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고시 등 타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따로 자체 운영기준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절 시설의 운영

**제245조(운영자의 책무)** 운영자는 BHS를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6조(관리자의 책무)

- ①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이하 이 장에서는 “관리자”라 한다)는 사용자의 BHS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BHS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운전책임자 및 보수책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7조(운전책임자의 의무)

- ① 운전책임자는 BHS를 안정적으로 운전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운전책임자는 BHS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 등으로 보수책임자로부터 BHS의 작동 중지요청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인명·수하물 및 BHS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8조(보수책임자의 의무)

- ① 보수책임자는 BHS 운용과 관련하여 보수자를 지휘·감독하고 안정적인 BHS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BHS 운용

에 따른 인명 및 시설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보수책임자는 인명 및 BHS 피해발생 등 BHS 작동을 중지하여야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및 응급조치사항 등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운전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종사자의 의무)**

① 종사자는 BHS의 안전운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수하물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BHS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운전책임자 또는 보수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BHS 이용시 운영자가 제시한 수하물 규격 및 종류 등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수하물을 투입하여 수하물처리시설의 파손·고장 등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BH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운전 및 보수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수하물의 접수, 수하물 내용의 조사, 수하물의 운송, 수하물의 인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사용자는 수하물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수하물 취급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체크인카운터 등 수하물 투입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BHS 이용시 불편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 20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취급자가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1조(취급자의 의무)**

① 취급자는 BHS에 의한 수하물의 운반 중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으로부터 수하물 파손 및 BHS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의 가방끈, 포장끈 또는 손잡이 등을 사전 정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컨베이어벨트에 안정된 상태로 적재·투입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판독불량 또는 오분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 등에

이전에 부착된 꼬리표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인쇄상태가 양호한 새로운 꼬리표를 판독이 용이하도록 부착하여 컨베이어벨트에 적재·투입하는 등 취급자 수하물 처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252조(종사자 근무계획)** 관리자는 필요시 BHS의 24시간 운용체제에 맞도록 종사자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3조(제어실 설치·운영)**

- ① 운영자는 필요시 BHS의 운전상태 등을 확인,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제어실(이하 “제어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제어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어실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254조(제어실 보안)** ① 운전책임자는 제어실의 출입문을 항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운전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운전책임자는 근무자 이외의 자가 제어실을 출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BHS 제어실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5조(BHS 고장보고)**

- ① 운전자는 BHS 운전 중 수하물의 파손 또는 BHS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운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자 또는 보수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운전책임자는 수하물 파손 또는 BHS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6조(근무 제한)** 운전책임자, 보수책임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 및 취급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또는 근무 전 술을 마신 자
2. 해당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제257조(운영지침서 비치)**

- ①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BHS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절차서 및 운전·유지보수에 필요한 매뉴얼, 정비조정 (Trouble-shooting) 등이 포함된 지침서 등을 비치하여 운전 및 보수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BHS의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58조(수하물의 안전조치)** BHS에서 운반 중인 수하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작업에 의한 위치변경 및 이동·운반 등 수하물에 접근 및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1. BHS의 장애발생 등 작동 중지로 운전책임자가 수작업에 의한 이동·운반을 통지한 때
2. BHS에서 운송 중인 수하물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낙하 등으로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이탈 하였을 때
3. 운송 중인 수하물에 의해 BHS가 위해하거나, 위해가 우려될 때
4. 운송 중인 수하물 내에 위험물질이 감지되었을 때
5. 인명 등 그 밖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제259조(예비운영절차 수립·시행)**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운영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BHS 장애발생시 수하물 비상운송 처리절차
2. 그 밖의 비정상 상황 등

② 관리자는 예비운영절차서를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60조(비상대비 연습훈련 실시)**

① 관리자는 BHS의 예비운영절차에 기술된 주요 상황에 대하여 매년 초에 비상대비 연습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실제연습을 실시하되, 실제연습 실시가 곤란한 상황은 도상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실제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BHS 사용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비상대비 연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예비운영절차를 숙지하는 등 BHS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1조(비상대비 연습훈련 결과의 반영)** 운영자는 비상대비 연습훈련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BHS 예비운영절차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62조(사고 조치 및 보고)**

- ① 관리자는 BHS 운용 중 인명피해 또는 BHS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피해 및 BHS 운용 중단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고수습 또는 복구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② 관리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지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유지보수**

**제263조(유지보수 계획 수립)** 보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1.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 2.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 3. 유지보수 및 연간 정기점검계획
- 4. 계측장비 및 예비품 확보 계획
- 5. 시설개선계획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4조(BHS 이력관리)** 운전 또는 보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BHS 이력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기록 유지하여 운전·점검·정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 1. 설비고유명
- 2. 설비 제원
- 3. 점검·정비 및 주요 고장내역

**제265조(점검 구분)** 수하물처리시설의 점검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6조(정기점검)**

- ①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
  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
  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
  4. 분기점검 : 매 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
  5. 연간점검 : 매 년하는 점검 및 정비
- ② 운전책임자 또는 보수책임자는 수하물처리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정한 기준 및 별표 29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수하물처리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처리 등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7조(특별점검)**

-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HS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인명 또는 BHS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3. BHS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지방항공청장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을 경우
- ② 관리자는 BHS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제1항제4호에 대한 특별점검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8조(공구 및 예비품)**

- ① 관리자는 운용중인 설비에 적합한 공구 및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적정 보유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운전 또는 보수책임자는 BHS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 등의 성능을 유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

야 한다.

**제269조(폐기물 관리)** 운전 또는 보수책임자는 BHS 운용 중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절 교육훈련 등

##### 제270조(교육훈련 운영)

- ① 관리자는 BHS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및 취급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등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1조(교육훈련계획)**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272조(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 ① 관리자는 종사자의 과거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 결과에 따라 초기교육훈련과정의 과목 및 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의 단축은 BHS 운전 또는 유지보수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의 교육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초기교육훈련 과정의 이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 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 2. BHS 시설의 제작·설치자가 실시하는 운전 및 보수과정으로 정해진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한 경우
- ④ 제273조에 따라 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3조(교관의 자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를 BHS 교육훈련 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BHS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 운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외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의 제작·설계·설치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최근 5년 이내 BHS 설치공사 감독업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제274조(교관의 임무)**

- ①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BHS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2. 교육 기자재 및 교재 준비
  3. BHS 종사자 교육실시
  4. 교육생 평가
  5.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
- ② 교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에게 출장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5조(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교육훈련 평가 보고서)에 따라 작성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기본교육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절 안전관리

**제276조(안전교육)** 관리자는 BHS 운용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 BHS 운용 및 종사자 모두
2. 교육시간 : 월 1시간 이상
3. 교육형태 : 강의식, 시청각, 실습, 토의, 회람 및 전파교육 등

**제277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BHS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8조(BHS 운전정지 명령)**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BHS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1. 인명피해 발생 및 시설의 파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안전운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9조(안전관리)** 운영자는 BHS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0조(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운영자는 사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BHS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BHS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BHS 운용을 방해하거나 운송중인 수하물을 임의로 수동운반 또는 이동하였을 경우
3. BHS의 규격 및 형태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제정한 수하물의 규격 및 종류를 위반하여 BHS에 투입한 경우

## 제10장 보칙

## 제10장 보칙

**제28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2003. 11.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2항의제2호·3호, 제50조의별표5의제21호 및 제138조제3항에 대하여는 2005.1.1부터 시행하며, 제50조의별표5의제2호내지제11호, 제117조내지제122조 및 제145조제3항에 대하여는 2006.1.1부터 시행하며, 제141조제4항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3호·제5호의나목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주기장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별표5, 제23호에 의한 주기된 항공기와 물체 간 최소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항공기 후미의 이격거리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계 착수 또는 신설되는 공항에 적용한다.

**제3조(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의 종전의“지상이동통제시스템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운항 91240-233, 2002.11.30.)”에 의거“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을 승인받은 공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05. 2.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내지제94조에 대하여는 2005.7.1부터, 제150조내지제152조 및 별표2의제5호나목에 대하여는 2005.11.24부터, 제12조의2제1항, 제50조의별표5의제11-1호 및 제117조에 대하여는 2006.1.1부터, 제43조의2, 제51조제7호내지제9호 및 제77조제3호에 대하여는 2006.7.1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별표1

의2의 제2지역·제3지역 내의 장애물은 2007.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자체검사자로 임명된 자는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에 적용한다.

**부칙(2005. 12.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 공항의 시설기준은 기존·신설공항에 적용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존공항의 착륙대·유도로대 폭 및 전파고도계 운용구역과 동 지역의 정지, 경사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적용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미충족 시설이 기준에 충족되도록 개선되는 경우 공항운영규정 변경 인가 및 신고

**부칙(200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주기장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최초 제정시 규정한 부칙2조 (항공기주기장표지에 관한 적용례)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55조 제7항제2호가목에 의한 주기된 항공기와 물체간 최소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항공기 후미의 이격거리기준은 이 기준 제정일(2003.11.10.) 이후 최초로 설계 착수 또는 신설되는 공항에 적용한다.

**부칙(2007. 2.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부양장비 확보 기준 적용)** 제1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기부양 장비 확보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6.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4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제3호 표10의 보조소화제에 분사율에 관한 규정은 민군공용공항(김해국제공항 제외)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주기장표지에 관한 적용례)**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5조제7항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주기장 표지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이 기준 고시일 이후에 신설 또는 변경되는 주기장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주기장 중에서 항공기주기장 유도선과 장애물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또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보완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등 타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인허가 서류제출) 이 기준 제16조 제3항에 의한 공항운영규정 인가를 위한 제출 서류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항신설·확장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항에 적용한다.

**부칙(2013. 4.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10호는 2015년 1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제3조제64호, 제68호, 제40조제2호 및 제4호, 별표 1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6.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12호, 제120호, 제44조제2호 및 제4호, 별표 1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5호),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90호),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1호),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95호), 공항 수하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96호)은 폐지한다.

[별표 1] 포장의 지지강도(ACN/PCN) 분류기준(제10조, 제44조 제2호 관련)

1. 항공기가 이동하는 지역의 포장은 지지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계류장의 포장 강도는 항공기 등급번호-포장 등급번호(ACN/PCN)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포장 등급번호(PCN)
  - 나. ACN-PCN 결정을 위한 포장의 형태
  - 다. 노상강도의 분류
  - 라. 최대 허용 타이어 압력범위와 최대 허용 타이어 압력치
  - 마. 평가방법
3. 보고된 포장 등급번호(PCN)는 보고된 PCN으로 동등 또는 그 이하의 항공기 등급번호(ACN)를 가진 항공기가 타이어 압력의 제한 혹은 특정 항공기의 전비(全備)중량에 따라 포장 위를 운항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4. 항공기의 ACN은 ACN-PCN 방식과 관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ACN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포장의 성질은 강성 또는 연성구조와 동등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6. ACN-PCN 결정, 노상강도 분류, 허용 최대 타이어압 및 평가 기법에 대한 포장 형태에 관한 정보는 다음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 ACN-PCN 결정을 위한 포장형태
    - (1) 강성포장 : R
    - (2) 연성포장 : F
  - 나. 노상강도의 분류
    - (1) 고강도(A)
      - (나) 강성포장의 경우  $K=150\text{MN}/\text{m}^3$ 의 특성을 가지고,  $120\text{MN}/\text{m}^3$  이상 모든 K 값을 나타내는 포장
      - (나) 연성포장의 경우  $\text{CBR}=15$ 의 특성을 가지고, 13이상 모든 CBR 값을 나타내는 포장
    - (2) 중강도(B)
      - (가) 강성포장의 경우  $K=80\text{MN}/\text{m}^3$ 의 특성을 가지고,  $60\sim 120\text{MN}/\text{m}^3$ 의

K 값을 나타내는 포장

(나) 연성포장의 경우 CBR=10의 특성을 가지고, 8~13의 CBR 값을 나타내는 포장

(3) 저장도(C)

(가) 강성포장의 경우  $K=40\text{MN}/\text{m}^3$ 의 특성을 가지고,  $25\sim 60\text{MN}/\text{m}^3$ 의 K 값을 나타내는 포장

(나) 연성포장의 경우 CBR=6의 특성을 가지고, 4~8의 CBR 값을 나타내는 포장

(4) 초저장도(D)

(가) 강성포장의 경우  $K=20\text{MN}/\text{m}^3$ 의 특성을 가지고,  $25\text{MN}/\text{m}^3$ 이하의 모든 K 값을 나타내는 포장

(나) 연성포장의 경우 CBR=3의 특성을 가지고, 4이하의 모든 CBR 값을 나타내는 포장

다. 허용 최대 타이어압 분류

- (1) 고(W) : 압력제한 없음
- (2) 중(X) : 압력은 1.75MPa까지 제한
- (3) 저(Y) : 압력은 1.25MPa까지 제한
- (4) 초저(Z) : 압력은 0.50MPa까지 제한

라. 평가방법

- (1) 기술적 평가(T) : 포장특성의 특정연구 및 포장기술의 응용을 나타낸다.
- (2) 항공기 사용경험(U) : 특정형식 또는 중량의 항공기가 정규 사용시 만족스럽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예1) 중강도 노상에 위치한 강성포장의 지지력이 기술평가에 의해 PCN80으로 산출되고, 타이어압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PCN80R/B/W/T”로 표기한다.

(예2) 연성포장의 성질을 갖고, 고강도 노상에 위치한 합성포장의 지지력이 항공기 경험을 사용하여 PCN50으로 산출되고, 허용 최고 타이어압이 1.25MPa인 경우에는 “PCN50F/A/Y/U”로 표기한다.

7. 5,700kg 이하의 항공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계류장의 포장강도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최대 허용 항공기 중량
- 나. 최대 허용 타이어압

<표 1-1> ACN/PCN의 표시에 사용되는 기호

구 분		기호	내 용	
포장형태		R	Rigid Pavement (강성포장)	
		F	Flexible Pavement (연성포장)	
노상 강도	고강도	A	강성포장	K = 120 MN/m <sup>3</sup> 이상 (기준 150)
			연성포장	CBR = 13이상 (기준 15)
	중강도	B	강성포장	K = 60~120 MN/m <sup>3</sup> (기준 80)
			연성포장	CBR = 8~13 (기준 10)
	저강도	C	강성포장	K = 25~60 MN/m <sup>3</sup> (기준 40)
			연성포장	CBR = 4~8 (기준 6)
	초저강도	D	강성포장	K = 25 MN/m <sup>3</sup> 이하 (기준 20)
			연성포장	CBR = 4이하 (기준 3)
허용최대 타이어압력		W	High	제한 없음
		X	Medium	1.00 ~ 1.50 Mpa
		Y	Low	0.50 ~ 1.00 Mpa
		Z	Very Low	0.50 Mpa 이하
평가방법		T	기술적 평가 (Technical Evaluation) 포장의 성질과 상태 등의 검토	
		U	항공기 사용 경험으로 판단 (Using aircraft Experience) 항공기가 규칙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상태에서 포장이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항공기의 기종 및 중량을 경험으로 판단	

[별표 1] 포장의 지지강도(ACR/PCR) 분류기준(제10조, 제44조 제2호 관련)  
 <시행 2024. 11. 28.>

1. 항공기가 이동하는 지역의 포장은 지지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계류장의 포장 강도는 항공기 분류등급-포장 분류등급(ACR/PCR)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포장 분류등급(PCR)
  - 나. ACR-PCR 결정을 위한 포장의 형태
  - 다. 노상강도의 분류
  - 라. 최대 허용 타이어 압력범위와 최대 허용 타이어 압력치
  - 마. 평가방법
3. 보고된 포장 분류등급(PCR)은 보고된 PCR으로 동등 또는 그 이하의 항공기 분류등급(ACR)을 가진 항공기가 타이어 압력의 제한 혹은 특정 항공기의 전비(全備)중량에 따라 포장 위를 운항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4. 항공기의 ACR은 ACR-PCR 방식과 관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ACR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포장의 성질은 강성 또는 연성구조와 동등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6. ACR-PCR 결정, 노상강도 분류, 허용 최대 타이어압 및 평가 기법에 대한 포장 형태에 관한 정보는 다음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 ACR-PCR 결정을 위한 포장형태
    - (1) 강성포장 : R
    - (2) 연성포장 : F
  - 나. 노상강도의 분류
    - (1) 고강도(A) :  $E^1=200\text{MPa}$ 의 특성을 가지고, 150MPa 이상의 모든 E 값을 나타내는 포장
    - (2) 중강도(B) :  $E=120\text{MPa}$ 의 특성을 가지고, 100MPa 이상 ~ 150MPa 미만의 모든 E 값을 나타내는 포장
    - (3) 저강도(C) :  $E=80\text{MPa}$ 의 특성을 가지고, 60MPa 이상 ~ 100MPa 미만의 모든 E 값을 나타내는 포장
    - (4) 초저강도(D) : 강성 및 연성포장의 경우 :  $E=50\text{MPa}$ 의 특성을 가지고, 60MPa 미만의 모든 E 값을 나타내는 포장
  - 다. 허용 최대 타이어압 분류

1) E(Modulus of elasticity) : 탄성계수

- (1) 고(W) : 압력제한 없음
- (2) 중(X) : 압력은 1.75MPa까지 제한
- (3) 저(Y) : 압력은 1.25MPa까지 제한
- (4) 초저(Z) : 압력은 0.50MPa까지 제한

라. 평가방법

- (1) 기술적 평가(T) : 포장특성의 특정연구 및 포장도로가 제공될 항공기의 기종을 나타낸다.
- (2) 항공기 사용경험(U) : 특정 형식 및 중량의 항공기가 규칙적인 사용하에서 만족스럽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예1) 중강도 노상에 위치한 강성포장의 지지력이 기술평가에 의해 PCR760으로 산출되고, 타이어압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PCR760/R/B/W/T”로 표기한다.

(예2) 연성포장의 성질을 갖고, 고강도 노상에 위치한 합성포장의 지지력이 항공기 경험을 사용하여 PCR550으로 산출되고, 허용 최고 타이어압이 1.25MPa인 경우에는 “PCR550/F/A/Y/U”로 표기한다.

7. 5,700kg 이하의 항공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계류장의 포장강도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최대 허용 항공기 중량

나. 최대 허용 타이어압

<표 1-1> ACR/PCR의 표시에 사용되는 기호

구분		기호	내용	
포장형태		R	Rigid Pavement (강성포장)	
		F	Flexible Pavement (연성포장)	
노상강도	고강도	A	E = 150MPa 이상 (기준 200)	
	중강도	B	E = 100MPa 이상 150 MPa 미만 (기준 120)	
	저강도	C	E = 60MPa 이상 100MPa (기준 80)	
	초저강도	D	E = 60MPa 미만 (기준 50)	
허용최대 타이어압력		W	High	제한 없음
		X	Medium	1.00 ~ 1.50 Mpa
		Y	Low	0.50 ~ 1.00 Mpa
		Z	Very Low	0.50 Mpa 이하
평가방법		T	기술적 평가 (Technical Evaluation) 포장의 성질과 상태 등의 검토	
		U	항공기 사용 경험으로 판단(Using aircraft Experience) 항공기가 규칙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상태에서 포장이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항공기의 기종 및 중량을 경험으로 판단	

**[별표 2] 공항운영규정 세부사항(제21조, 제22조 관련)**

**1. 제1장 - 일반사항(General)**

- 가. 공항운영규정의 목적, 범위 및 용어정의
- 나. 공항운영증명과 공항운영규정에 대한 법적 요건
- 다. 이용 가능한 항공정보시스템과 항공정보 공표절차
- 라. 항공기 이동정보(Aircraft movements)를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
- 마. 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2. 제2장 - 공항부지정보(Airport site details)**

- 가. 각 풍향등의 위치를 포함하여 공항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을 나타내는 공항 도면
- 나. 공항의 경계를 나타내는 공항도면
- 다. 공항과 인접한 도시 및 다른 인구 조밀지역과의 거리를 표시하고 공항경계 외곽에 위치한 공항시설과 장비를 나타내는 도면
- 라. 공항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공항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점유지의 소유권과 공항의 위치 및 경계를 보여주는 도면

**3. 제3장 - 공항시설정보(Airport dimensions and related information)**

- 가. 일반정보
  - (1) 공항의 명칭
  - (2) 공항의 위치(시청 또는 도청으로부터 공항표점까지의 거리)
  - (3) WGS-84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공항표점의 지리적 좌표 및 자기편차
  - (4) 공항표고 및 지오이드의 기복
  - (5) 각 활주로의 표고 및 지오이드의 기복, 활주로 종단의 표고, 활주로 상의 특히 높고 낮은 지점에 대한 표고, 정밀진입활주로 접지구역의 가장 높은 표고
  - (6) 공항표준온도
  - (7) 비행장등대에 관한 세부사항
  - (8) 공항운영자 직책, 공항운영자와 항상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 나. 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 (1) 활주로 : 진방위 및 자방위, 활주로명칭번호, 길이, 폭, 활주로의 위치, 경사도(종경사도 및 횡경사도), 표면종류, 활주로종류,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무장애구역의 형태

- (2) 착륙대의 길이, 폭, 표면종류, 활주로종단안전구역, 정지로
  - (3) 유도로의 길이, 폭, 표면종류
  - (4) 계류장 표면종류와 항공기 주기장
  - (5) 개방구역 길이와 형태
  - (6)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접근절차용 시각지원시설
    - (가) 진입등시스템 및 진입각지시등(PAPI/APAPI)의 종류
    - (나) 활주로·유도로·계류장의 표지와 등화
    - (다) 기타 활주로경계등, 일시정지위치등, 정지선등(Stop bars)을 포함한 유도로 및 계류장의 시각적 안내 및 통제시설
    - (라)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의 위치와 형식
    - (마) 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의 가용성
  - (7) VOR 체크포인트의 위치 및 주파수
  - (8) 유도로의 위치와 명칭
  - (9) 활주로서단의 좌표
  - (10) 항공기 주기장별 좌표
  - (11) 항공기 주기장별 사용가능한 최대기종
  - (12) 접근 및 이륙지역, 공항부근의 선회구역의 중요 장애물의 좌표와 높이
  - (13) 항공기 등급번호를 사용한 포장면 종류와 강도-포장 등급번호(ACN-PCN) 방식
  - (14) 계류장에 설치된 비행전 고도계확인(Altimeter check) 위치 및 고도
  - (15) 공시거리 :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이륙가용거리(TODA),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착륙가용거리(LDA)
  - (16)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 이동지역이나 그 주변으로부터의 기동불능 항공기의 제거를 위한 책임자의 전화, 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기동불능 항공기의 제거 작업 능력에 관한 정보 - 공항에서 제거할 수 있는 항공기 주요 기종을 명시
  - (17) 중요항공기 형식
- 다. 구조 및 소방 : 공항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 및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화제의 종류와 보유량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 및 소방 등급으로 보호수준을 표시

#### 4. 제4장 - 공항운영절차(Airport operating procedures)

- 가. 공항상태보고 : AIP에 등재된 공항정보에 대한 변경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 (1) 공항의 정상운영시간 동안 또는 그 외의 시간에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보고, 변경기록에 관한 조치절차와 담당 부서 위치/전화번호

- (2) 공항의 정상운영시간 동안 또는 그 외의 시간에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책임자의 직책, 임무, 전화번호

나. 이동지역 접근통제 :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를 방지하고, 인원·차량·장비 등이 허가 없이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절차를 수록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 지상조업사, 공항보안담당기관, 지방항공청,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 (2) 공항접근 통제업무 책임자의 직책과 임무, 일과 중 또는 일과 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다. 공항 비상계획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항 비상계획의 세부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1) 제154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 (2) 비상훈련과 기타 비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항비상협의회에 관한 사항
- (3) 비상상황 총괄을 위한 현장지휘자(On-scene commander) 지정
- (4)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사항

라. 항공기 구조 및 소방

- (1) 항공기 구조소방 등급의 결정근거(항공기의 전장, 최대동체 폭, 기종 포함)
- (2) 항공기구조 및 소방업무담당자의 직책과 임무
- (3) 항공기구조 및 소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업무절차에 관한 세부사항(비상절차를 포함한다)

주) 이 사항은 공항 비상계획에도 적절한 수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4) 그 밖에 제121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 절차

마.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항 이동지역과 장애물 제한표면의 검사를 위한 절차의 세부사항

- (1) 공항의 정상운영시간이나 그 외 시간동안 활주로나찰, 활주로나 유도로의 고인 물 깊이(Water-depth) 측정을 포함한 점검절차
- (2) 점검하는 동안 관제탑과의 통신대책 및 수단
- (3) 점검일지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와 일지위치
- (4) 점검 주기와 시간의 세부사항

- (5) 점검표
  - (6) 점검결과 보고 및 불안전한 상태의 시정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절차
  - (7) 점검책임자의 직책, 역할, 근무 중이나 후의 연락 전화번호
  - (8) 그 밖의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 바. 시각지원시설 및 전력시설 등 : 시각지원시설(단, 표지 제외) 및 전력 시설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 (1) 정상 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동안 점검수행절차
  - (2) 검사결과 기록 및 문제 상태 시정을 위한 후속조치 절차
  - (3) 일상정비와 긴급정비 수행 절차
  - (4) 예비전원 공급절차 및 전체 전기시스템 고장시 대책
  - (5) 시각지원시설, 전력시설 등의 점검 및 정비 책임자의 직책
  - (6) 그 밖의 제83조, 제84조, 제86조 내지 제95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 사. 이동지역 유지보수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항 포장상태의 세부사항과 이동지역 초지의 표면상태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 (1) 포장지역의 유지관리 대책 및 절차
  - (2) 착륙대·유도로대 유지관리 대책 및 절차
  - (3) 비포장지역(잔디지역) 유지관리 대책 및 절차
  - (4) 배수시설 유지관리 대책 및 절차
  - (5) 그 밖의 제38조 내지 제47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 아. 이동지역 작업통제 및 안전조치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 및 그 주위에서의 건설 및 유지보수업무 안전관리 절차(간단한 통보로 수행되는 작업들을 포함한다.)
- (1) 작업 중 관제탑과의 통신을 위한 대책 및 절차
  - (2)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수행기관, 관련책임자 직책·전화번호·임무 및 상시 연락절차
  - (3) 작업내용을 통보해야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 지상조업사의 직책과 일과 중 또는 일과 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4) 작업계획 배포부서 목록
  - (5) 그 밖의 제48조 내지 제52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 자. 계류장관리업무 및 기타 안전조치 : 계류장 관리업무의 수행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음의 절차
- (1) 제57조 내지 제65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 (2) 공항관제탑과 계류장관리업무 담당부서 간 항공기 이양 등에 관한 협조절차(이 경우 공항관제탑이 항공기 및 차량의 교통통제 등 계류

장관리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차.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통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 또는 그 인근의 지상 차량통제 절차

- (1) 교통규칙 세부사항(속도제한 및 단속수단을 포함)
- (2) 이동지역 운행허가서 발행 방법
- (3) 그 밖의 제53조 내지 제56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카. 야생동물 위험 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조류 등 야생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의 세부사항

- (1) 야생동물 위험 평가 절차
- (2) 야생동물 관리계획
- (3) 야생동물 관리책임자 직책, 임무, 일과 중 또는 일과 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4) 그 밖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타. 장애물 통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절차의 세부사항

- (1) 장애물 제한표면의 경계 내에 위치한 건물 또는 구조물 등 장애물의 높이 감시
- (2) 공항운영자의 관리범위에 속한 장애물 통제절차
- (3) AIP 개정을 위한 통보절차 및 장애물 관련 지방항공청과 협의 절차
- (4) 그 밖의 제72조 내지 제75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파.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 또는 그 인근의 기동불능 항공기의 제거를 위한 세부절차

- (1) 공항운영자와 항공기등록증 소유자의 임무
- (2) 항공기등록증 소유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절차
- (3) 항공교통관제기관 연락절차
- (4) 기동불능 항공기 제거를 위한 필요장비·인원 확보대책
- (5) 기동불능 항공기 제거 책임자의 직책, 임무 및 전화번호
- (6) 그 밖의 제115조 내지 제120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하. 위험물의 취급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항내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보관을 위한 세부절차

- (1) 인화성 액체물질(항공연료를 포함)과 기타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공항의 특별구역 지정
- (2) 위험물의 운반, 저장, 분배와 취급을 위해 준수해야 할 방법

주) 위험물에는 인화성이 강한 액체, 고체, 부식성 액체, 압축가스와 자

성이나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다. 위험물의 우발적인 유출을 취급하는 업무는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의 제110조 내지 제114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거. 제설계획

(1) 이동지역에서의 눈과 얼음의 신속한 제거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들의 직책과 역할을 포함한 설빙관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장비·인력·절차의 세부사항

(2) 그 밖의 제150조 내지 제153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너.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저시정 상태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측정 및 보고 등을 포함한 저시정운영절차 및 활주로 가시범위(RVR) 측정 담당부서와 주·야간 연락처

(2) 그 밖의 제66조 내지 제71조 규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항행안전시설의 보호 :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보호를 위한 세부절차

러.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의 세부내용

(1) 자체검사자의 직책, 성명, 임무

(2)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포함한 자체점검 주기, 각 점검내용 및 점검절차 등이 포함된 자체점검계획

(3) 그 밖의 제145조 내지 제149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머. 교육훈련프로그램 : 제28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으로서 교육훈련 방침,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등

**5. 제5장 - 공항행정(Airport administration) 및 안전관리시스템**

가. 공항행정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항행정에 관한 세부사항

(1) 주요 간부직원의 직책과, 책임을 나타내는 공항조직도(아래의 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분야의 책임자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책, 임무, 연락처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 관리업무 운영 책임자의 직책, 임무, 연락처

(다) 구조·소방업무 책임자의 직책, 임무, 연락처

(라) 보안업무 책임자의 직책, 임무, 연락처

(3) 공항의 제한사항

나. 안전관리시스템

- (1) 안전과 관련된 조직구조와 조직구조 내에서의 직원의 의무, 권한, 책임사항 등과 조직도
- (2) 자체 직무를 포함해서 공항 시설 및 장비검사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계획
- (3) 공항시설, 서비스, 장비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점검에 적합한 자격관리를 위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 (4) 그 밖의 제163조 내지 제165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6. 제6장 - 제한사항

가. 공항사용의 제한

나.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1) 면제사항

관련 기준	면제사항 (기간)	승인근거	조치 사항	비고

(2) 예외사항

관련 기준	예외사항 (기간)	승인근거	조치 사항	비고

다.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시설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관련 기준	기준 미흡사항	개선계획		대체운영절차		비고
		기간	개선내용 (사업비포함)	비행안전 확인 결과 (시행기간 포함)	대체운영절차 (대체시설 포함)	

**[별표 3]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신호의 종류, 의미 및 기준(제84조 관련)**

1. 설치조건 : 모든 공항에는 지향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 관제탑과 계류장관제소에 설치한다.
3. 특성
  - 가. 불빛은 적색, 녹색 및 백색신호로 하여야 한다.
  - 나. 필요한 어떤 목표에 수동으로 조준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광선의 폭은 1도 이상, 3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주간 광도(intensity)는 6,000칸델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신호의 종류 및 의미는 <표3-1>과 같다.

**<표 3-1> 신호의 종류 및 의미**

신호의 종류	의 미		
	비행 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신호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 함	통과 또는 진행할 것
연속되는 적색신호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녹색신호	착륙을 준비할 것	지상활주를 허가함	
깜박이는 적색신호	착륙하지 말 것	사용 중인 착륙 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백색신호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공항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공항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별표 4]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기준(제85조 관련)**

1. 설치조건 : 모든 공항에는 풍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 가. 활주로 중앙부로서 계류장 부근 혹은 접지구역 부근과 같이 비행 중 이거나 이동지역상에 있는 항공기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가까운 물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다. 주변 지형으로 인해 현저히 다른 풍향 및 풍속이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양 시단 부근에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다.
  - 라. 풍향등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향등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성
  - 가. 섬유제품의 길이는 3.6m이상이고 넓은 쪽의 지름은 0.9m이상으로 하며, 좁은 쪽의 지름은 0.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색상은 적어도 300m 고도에서 명료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배경을 고려하여 오렌지색 또는 백색의 단일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경우에 따라서는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 또는 흑색과 백색의 색상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 (2)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섯줄의 무늬로서 배열을 하되, 처음과 마지막의 줄무늬는 다른 색상보다 어두운 색으로 하여야 한다.
  - 다. 풍향등이 위치한 곳 중 적어도 한 곳에는 내경의 지름이 15m이고 폭이 1.2m인 원형띠로 둘러 표기하되, 이 띠는 가능한 한 눈에 잘 띄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야간운영 공항에는 조명등이 장치된 풍향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표시물(Marker) 기준(제95조, 제97조, 제100조 관련)

1. 일반요건

- 가. 표시물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시물은 프로펠러 및 제트기 엔진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낮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표시물이 파손되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표시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정 장치 또는 체인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2.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stopway edge marker)

- 가. 정지로의 범위가 주위의 지상에 비해 외관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은 활주로 가장자리표시물과 혼동되지 않도록 서로 상이하여야 한다.

3. 눈으로 덮인 활주로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Edge marker for snow-covered runways) : 눈으로 덮인 활주로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은 그 활주로의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용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가. 위치

- (1) 눈으로 덮인 활주로의 가장자리표시물은 활주로의 양 측면에 따라 1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눈으로 덮인 활주로의 가장자리표시물은 항공기 날개 끝이나 동력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활주로중심선에 대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표시물은 활주로서단 및 종단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특성 : 눈으로 덮인 활주로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은 높이 약 1.5m의 초록색 나무 또는 가벼운 표시물로 눈에 잘 띄는 물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유도로 가장자리표시물(Taxiway edge marker) : 분류번호 1 또는 2인 곳에서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 표시물중 어느 한 가지도 제공되지 않는 유도로 상에 유도로 가장자리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위치 : 유도로 가장자리 표시물은 적어도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특성

- (1) 유도로 가장자리표시물은 원통형으로써 청색의 역반사체이어야 한다.
- (2) 조종사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된 면은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면적은 150cm<sup>2</sup>이어야 한다.
- (3) 유도로 가장자리 표시물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
- (4)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 포드와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낮아야 한다.

5. 유도로 중심선표시물(Taxiway centre line marker)

- 가. 유도로 중심선표시물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곳에서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또는 유도로 가장자리표시물중 어느 한 가지도 제공되지 않은 유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곳에서 유도로중심선등은 없고 유도로중심선표지에 의하여 안내 제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유도로 상에 유도로 중심선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치

- (1) 유도로 중심선표시물은 적어도 유도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유도로 중심선표시물은 일반적으로 유도로중심선표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위에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못한 곳에서는 30cm이하로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특성

- (1) 유도로 중심선표시물은 원통형으로써 녹색의 역반사체이어야 한다.
- (2) 조종사들이 볼 수 있는 표시된 면은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면적 20cm<sup>2</sup>이어야 한다.
- (3) 유도로 중심선표시물은 항공기나 표시물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의 차륜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 및 고정되어야 한다.

6. 금지구역표시물(Unserviceability marker)

- 가. 적용 :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지역의 일부분이 항공기 이동에는 부적합하지만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는 장소에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한다.
- 나. 위치 : 금지구역표시물은 금지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간격을 충분한 만큼 조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특성 : 금지구역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시설로 하되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1) 깃발은 한 변이 0.5m 이상인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어떤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이어야 한다.
- (2) 원추체는 0.5m 이상의 높이로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어떤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이어야 한다.
- (3) 표지판은 높이 0.5m 이상, 길이 0.9m 이상으로 적색과 백색이나 오렌지색과 백색으로 번갈아서 세로 줄무늬로 하여야 한다.

### 7. 비포장 활주로 가장자리 표시물

가. 적용 : 비포장 활주로의 범위가 외관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 활주로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표시물은 활주로조명과 함께 설치하여야 하고 활주로조명이 없는 곳에서의 표시물은 활주로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편평한 직사각형 또는 원추형 형태의 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성

- (1) 편평한 직사각형 표시물의 크기는 3m×1m로 긴 변이 활주로중심선에 평행되어야 한다.
- (2) 원추형 형태의 표시물의 높이는 50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8. 비포장 유도로 가장자리 표시물

가. 적용 : 비포장 유도로의 확장으로 유도로가 명확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치 : 유도로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표시물은 유도로조명과 함께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로조명이 없는 곳에서의 표시물은 유도로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추형 형태의 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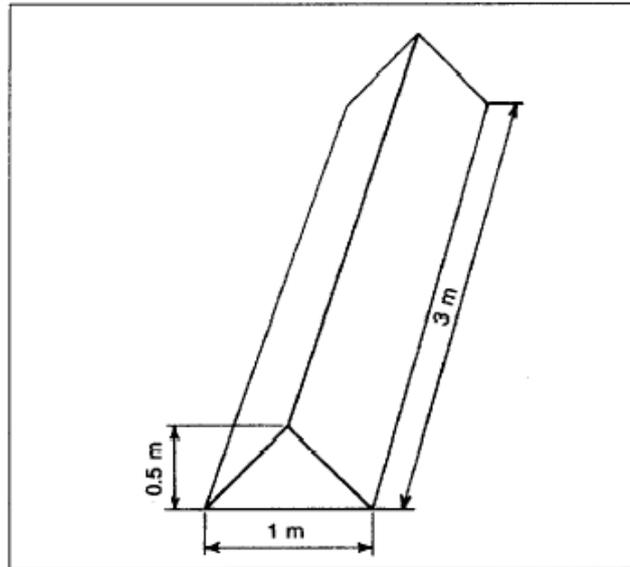
### 9. 경계표시물

가. 적용 : 경계표시물은 착륙지역이 활주로가 없는 공항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위치 : 경계표시물은 착륙지역의 경계에 따라 [그림5-1]의 표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20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각 모서리에 원추형 표시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9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성

- (1) 경계표시물은 [그림5-1]과 비슷한 형태이거나 또는 베이스 직경 75cm이상, 높이 50cm이상의 원추형이어야 한다.
- (2) 표시물은 주위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단일색, 오렌지색, 적색, 두 가지 대조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5-1> 경계표시물

**[별표 6]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제96조 관련)**

1. 이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
  - 가.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서비스 차량과 장비
  - 나.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 다. 계류장 가장자리선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 라. 항공기 주기장과 건물 및 울타리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2. 이동지역 내의 노출형 항공등화 (여객청사 등 건물에 인접 설치되어 있고,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규칙 별표2)에 저촉되지 않는 계류장 조명탑은 제외한다.)
3.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
4. 진입표면 내측 가장자리로부터 3,000m 이내에 진입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에 한함)
5. 장애물외에 진입표면에 인접한 고정 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에 한함)
6. 수평표면 위의 고정 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에 한함)
7. 장애물 보호표면(obstacle protection surface) 위로 돌출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에 한함)
8. 고가선, 가공케이블 등(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에 한함)
9. 기타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에 대한 표지 및 조명은 공항시설법령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7]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기준(제97조 관련)

1. 개 요

가. 표시되어야 할 모든 고정 물체(fixed objects)는 색채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고정 물체를 색채로 표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물 또는 깃발을 고정물체 상에 설치
- (2) 고정물체의 형태, 크기 또는 색채에 의하여 눈에 잘 띄는 물체

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이동물체는 색채 또는 깃발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색채의 사용(Use of colours)

가. 물체가 연속적인 표면(unbroken surface)을 가지고 수직면상에 물체의 투영이 가로, 세로 각4.5m이상일 경우에는 체크무늬형태의 색채로 표지하여야 한다.

나. 체크무늬형태는 직사각형 한 변이 1.5m이상과 3m이하의 직사각형으로 되어야 하고 모퉁이는 좀 더 어두운 색채로 표지하여야 한다.

다. 체크무늬형태의 색채는 다른 색채 및 바탕과 대조를 이루어야 하며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의 색채가 바탕에 흡수되어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그림7-1 참조)

라. 다음과 같은 물체는 교대로 대조되는 줄무늬가 보이도록 채색하여야 한다.

- (1) 연속적인 표면을 가진 1개의 치수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1.5m이상과 다른 치수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4.5m이하 : 또는
- (2) 수직 또는 수평 중 1개소의 치수가 1.5m이상 크기를 갖는 골격형 구조

마. 줄무늬는 가장 긴 변에 직각이어야 하고 가장 긴 변의 약1/7 또는 30m중에서 작은 쪽의 폭을 가져야 한다.

바. 줄무늬의 색상은 주위 배경 및 바탕과 대조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렌지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7-1과 그림 7-2 참조)

사. 수직면상에 물체의 투영크기가 가로, 세로 모두 1.5m 미만인 경우 이 물체는 눈에 잘 띄는 오렌지색 또는 적색의 단일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렌지색 또는 적색이 주위배경과 융합되어 눈에 잘 띄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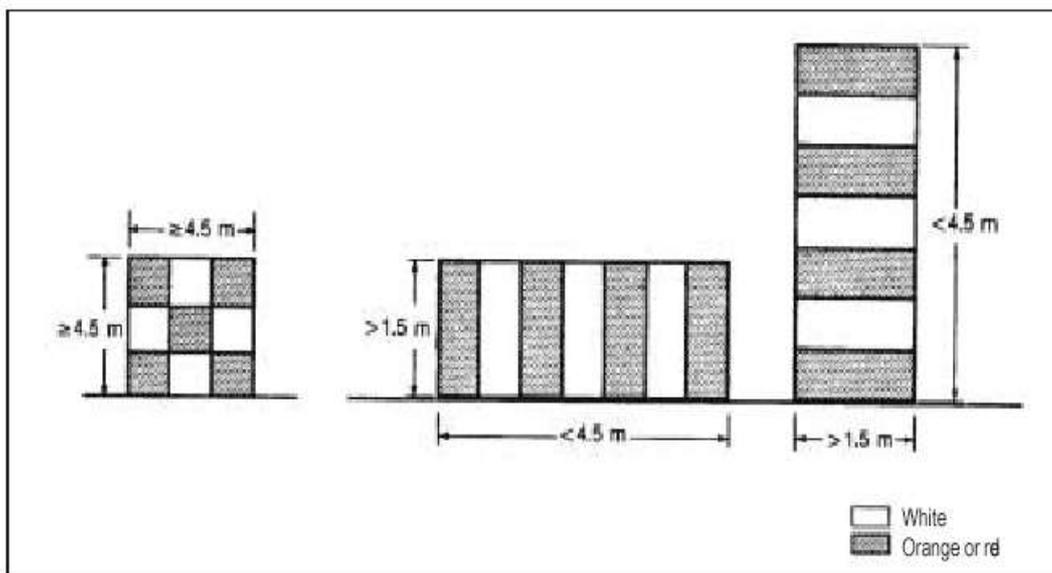
아. 응급차량은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하되 가급적 적색 또는 황색을

뎨 녹색을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차량은 황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취급업체 등이 계류장내에서만 운용하는 차량장비로서 해당 사업자가 고유한 색상을 선정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이동장애물 식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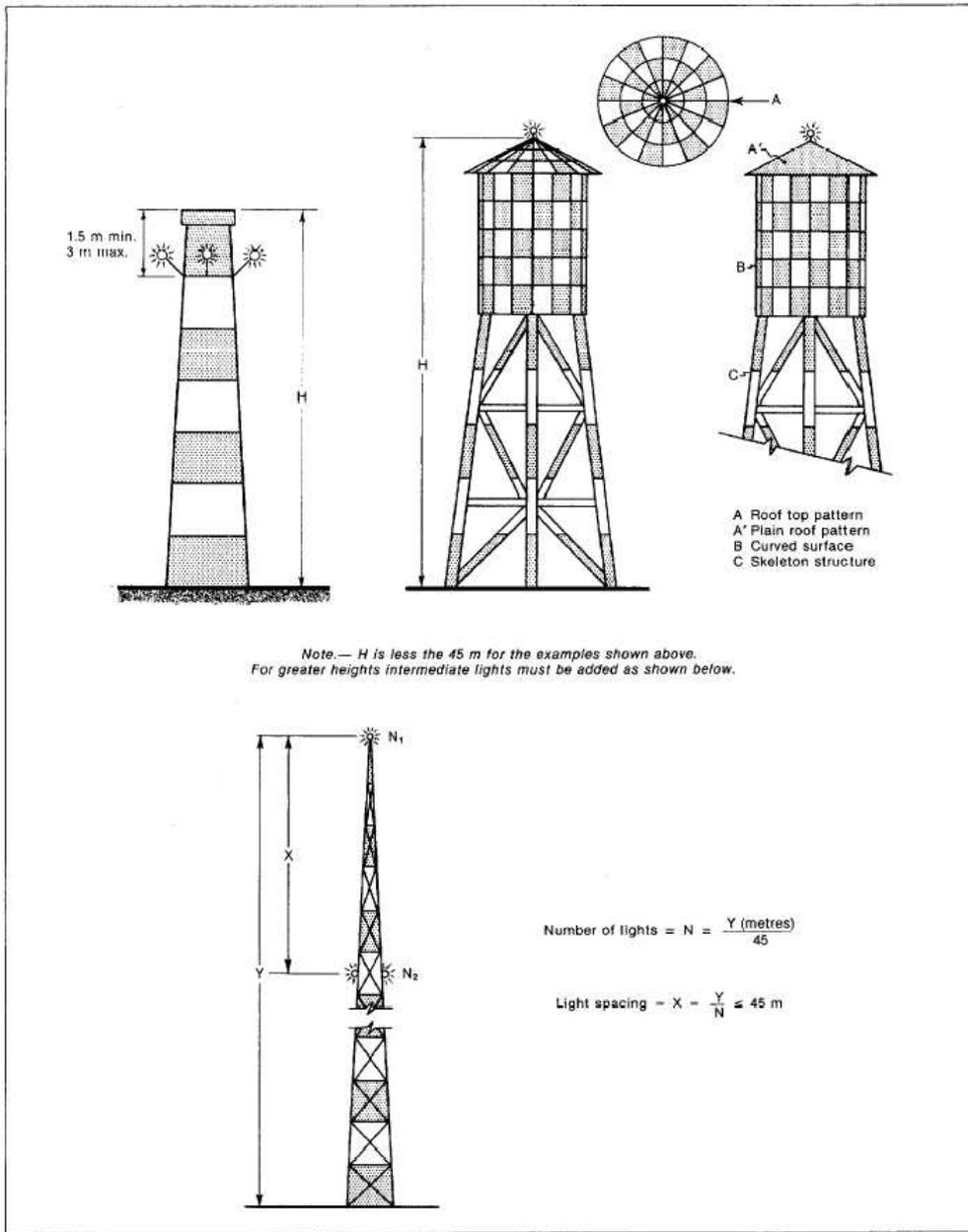
자. <표 7-1>에서는 줄무늬의 폭과 줄무늬 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과 최상부와 최하단부의 줄무늬가 좀 더 어두운 색으로 하여야 한다.

<표 7-1> 줄무늬 표지의 폭

최대크기(m)		줄무늬의 폭	
이 상	이 하		
1.5m	210m	최대 길이의	1/7
210m	270m	"	1/9
270m	330m	"	1/11
330m	390m	"	1/13
390m	450m	"	1/15
450m	510m	"	1/17
510m	570m	"	1/19
570m	630m	"	1/21



<그림 7-1> 장애물 표지의 기본형태



<그림 7-2> 높은 구조물의 조명과 장애물 표시의 예

3. 표시물 사용(Use of markers)

- 가. 물체의 인접 또는 위에 설치된 표시물은 그 물체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항공기가 물체로 진입할 때 청명한 날씨에 모든 방향에서 지상에서는 300m 이상 거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공중에서는 1,000m 이상 거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다. 표시물의 형태는 다른 정보전달용 표시물과 오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물체에 의해 생기는 위험도는 표시물에 의해 증가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라. 가공선, 케이블 등에 의해 설치된 표시물은 원형이어야 하고 직경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 2개의 연속 표시물 또는 표시물과 지지철탑 사이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1) 표시물 직경이 점차 증가하여 60cm가 되는 곳에서는 30m이하
- (2) 표시물 직경이 80cm 및 점차 증가하는 곳에서는 35m이하
- (3) 표시물 직경이 130cm 이상인 곳에서는 40m이하

바. 복합전선, 케이블 등이 있는 곳의 표시물을 가장 높은 전선에 표시된 지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표시물은 단일 색채로 하여야 한다.

아. 표시물의 색채를 백색과 적색 또는 백색과 오렌지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대로 나타내야 하며 색채의 선택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주위배경과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 4. 깃발의 사용(Use of flags)

가. 움직이는 물체 또는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깃발은 물체의 주위, 꼭대기 또는 가장 높은 가장자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움직이는 무렵에 의해 생기는 위험도는 깃발에 의해 증가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깃발은 양 측면으로 0.6m 이상이어야 하고 이동 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깃발은 양 측면으로 0.9m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깃발은 오렌지색 또는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의 2개 삼각부분으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색채가 주위배경에 의하여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잘 보이는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깃발은 각 변에 0.3m 이상의 정방형 체크무늬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형태의 색채는 각 변과 주위배경과 비교하여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색채가 주위배경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8] 공항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 분류(제122조 관련)

항 공 기	전 장 (m)	최대 동체 폭 (m)
구조소방 5 등급 이하	$0 \leq L < 28$	$W \leq 4$
Beech Bonanza 35	7.67	1.07*
Cessna 150	7.01	1.05*
Cessna 210H Centurion	8.61	1.08*
Aero Commander 500A	10.69	1.32*
Beaver DHC-2	9.22	1.30*
Beechcraft Model 18	10.71	1.32*
Beech Duke 60	10.21	1.28*
Cessna 310	9.74	1.30*
Islander BN2	10.87	1.19*
Piper Navajo PA-31	9.92	1.30*
Beech 99 Airliner	13.58	1.40
Dassault Fan Jet Falcon	17.15	1.87*
Handley Page Jetstream HP 137	14.37	1.85*
Hansa Jet HFB320	16.61	1.90*
Hawker Siddeley HS125, Srs 3	14.45	1.80*
Heron DH-114	14.68	1.90*
Otter DHC-3	12.75	1.58*
Short Skyvan, Srs 3	12.21	1.98*
Twin Otter DH-6, Srs 300	15.77	1.61
Antonov AN24V, Srs 11	23.53	2.76*
Canadair CL 600/601	20.85	2.69
Ilyushin IL-14	22.25	2.50*
Lockheed Jet Star	18.42	2.16*
BAe ATP	26.00	2.46
BAe 146 Srs 100	26.16	3.56*
Dash 8 DHC-8	22.25	2.69
Fairchild Packet	26.38	3.00*
Fokker Fellowship F-28, MK 1000	27.40	3.30
Fokker F-50	25.25	2.70
Grumman Gulfstream II	24.36	2.39

항 공 기	전 장 (m)	최대 동체 폭 (m)
<b>구조소방 5 등급 이하</b>	<b>0 ≤ L &lt; 28</b>	<b>W ≤ 4</b>
C560	14.91	1.50
C525	12.98	1.49
G-IV	26.92	2.39
CL-601	20.86	2.69
C172S	8.29	1.00
PA34-220T	8.71	1.30
C90GT	10.85	1.36
M20J	7.51	1.10
AT502	9.99	1.98
T207A	9.80	1.07
C152	7.33	2.13
R172	8.22	2.43
SF-600	12.21	1.47
C208	12.06	1.57
TB-9	7.72	2.13
PA44-180	8.41	1.01
P68C	9.55	1.16
<b>구조소방 6 등급</b>	<b>28 ≤ L &lt; 39</b>	<b>W ≤ 5</b>
Airbus A320	37.57	3.95
BAC One-Eleven Except Srs 500	28.50	3.40
BAC One-Eleven Srs 500	32.61	3.40
BAe 146 Srs 200	28.55	3.56
Boeing 737-100	28.65	3.76
Boeing 737-200	30.48	3.76
Boeing 737-300	33.40	3.76
Boeing 737-400	36.45	3.76
DC 9-10, 20	31.82	3.34
DC 9-30	36.36	3.34
DC 9-40	38.28	3.34
Fokker Fellowship F-28, MK 2000	29.61	3.30
Fokker F100	35.53	3.30
Ilyushin IL-18	35.90	3.23
Tupolev TU-104A	38.50	3.20*
Tupolev TU-124	30.58	2.70*
Tupolev TU-134A	34.30	2.71*
Vickers Vanguard 950	37.41	3.26*
BD700-1A10	30.33	2.51
B737-600	31.2	3.8
B737-700	33.6	3.8
A319	33.02	3.95
A320-200	37.57	3.95

항 공 기	전 장 (m)	최대 동체 폭 (m)
<b>구조소방 7 등급</b>	<b>39 ≤ L &lt; 49</b>	<b>W ≤ 5</b>
BAC VC 10	48.36	3.76
Boeing 707-120	44.22	3.76
Boeing 707-120	44.04	3.76
Boeing 707-320, 320B.C, 420	46.61	3.76
Boeing 720	41.50	3.76
Boeing 720B	41.68	3.76
Boeing 727-100, 100C	40.59	3.76
Boeing 727-200	46.68	3.76
Convair CL-44 J	41.70	3.66
Convair 880	39.44	3.25*
Convair 990 Coronado	42.50	3.25*
DC 8 Srs 10 to 50	45.87	3.75
DC 8-62, 62F	47.98	3.75
DC 8-55, 55F	45.90	3.75
DC 9-50	40.72	3.34
Trident HS121, Srs 3B	39.98	3.70
Tupolev TU-154	47.90	3.80
B757-200	47.30	3.80
B737-800	39.5	3.76
B737-900	42.1	3.76
A321-100, A321-200	44.51	3.95
TU-204	40.19	3.8
<b>구조소방 8 등급</b>	<b>49 ≤ L &lt; 61</b>	<b>W ≤ 7</b>
Airbus A 300 B, Model B2SB4	53.61	5.64
Airbus A 310	46.66	5.64
BAC Super VC 10	52.32	3.76
Boeing 747 SP	56.31	6.50
Boeing 767-200	48.50	5.03
DC 8-61, 61F, 63, 63F	57.12	3.73
DC 10 Srs 10	55.55	6.02
DC 10 Srs 30, 30 CF	55.35	6.02
DC 10 Srs 40, 40 CF	55.54	6.02
Ilyushin IL-62	53.12	3.75
Lockheed L-1011 Tristar	54.44	5.97
Tupolev TU-114	54.00	3.92*
Ilyushin IL 86	59.54	6.08
A300-600F	53.85	5.6
A300-600R	54.08	5.64
A330-200	58.69	5.64
B767-300, B767-300F	54.94	5.03
MD11F	58.65	6.02

항 공 기	전 장 (m)	최대 동체 폭 (m)
<b>구조소방 9 등급</b>	<b>61 ≤ L &lt; 76</b>	<b>W ≤ 7</b>
A330-300	63.69	5.64
B747, B747Combi, B747BCF, B747F, B747ER, B-747ERF	70.66	6.5
Tupolev TU-144	65.70	2.70*
B777-200, B777-200ER	63.73	6.2
B777-300, B777-300ER	73.9	6.2
A340-600	73.9	6.2
<b>구조소방 10 등급</b>	<b>76 ≤ L &lt; 90</b>	<b>W ≤ 8</b>
<b>AN-225</b>	<b>84.00</b>	<b>6.40</b>
AN-124	69.9	7.3
C-5	75.5	7.1
B747-8	76.3	6.5
A380-800	72.7	7.1

\* 약 (근사값)

[별표 9]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할 최소 구조장비목록  
(제127조, 제132조 관련)

구조용 장비	공항구조소방등급			
	1~2등급	3~5등급	6~7등급	8~10등급
조절형 렌치	1	1	1	1
도끼 (구조용, 대형, non-wedge 형)	-	1	1	1
도끼 (구조용, 소형, non-wedge/항공기용)	1	2	4	4
볼트(bolt)절단기 61cm	1	1	1	1
금속 지렛대 : 95cm	1	1	1	1
금속 지렛대 : 1.65m	-	-	1	1
치즐(끌) : 2.5cm	-	1	1	1
플레쉬/손전등	2	3	4	8
해머 : 1.8kg	-	1	1	1
구조용 흑 (집게식)	1	1	1	1
톱 (금속절단/쇠톱, 강력한 성능, 스페어 날 처리)	1	1	1	1
방화 담요	1	1	2	3
연장형 사다리 (사용 항공기에 적합한 전체길이)	-	1	2	2~3
밧줄 : 15m	1	1	-	-
밧줄 : 30m	-	-	1	1
플라이어 side cutting : 17.8cm	1	1	1	1
플라이어 slip joint 25cm	1	1	1	1
각종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1	1	1	1
절단기(Snippers) : 주석	1	1	1	1
초크(Chocks) : 15cm	-	-	1	1
초크(Chocks) : 10cm	1	1	-	-
동력절단기(스페어 날2개포함)/기체형 일체식 구조 끌	1	1	1	2
좌석 벨트/장구 절단 도구	1	2	3	4
방화 장갑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2	3	4	8
호흡기와 실린더	근무요원1인당 1세트			
산소호흡기	-	1	1	1
유압/기압으로 작동되는 구조장비	-	1	1	1
의료 응급 키트	1	1	2	3
방수천(Tarpaulin)	1	1	2	3
환기, 냉각용 팬		1	2	3
보호복	근무요원 1인당 1세트			
들것	1	2	2	2

[별표 10] 구조 및 소방 차량의 최소 성능요건(제132조 관련)

번호	기능	4,500 L 이하 차량	4,500 L 초과 차량
1	모니터	구조소방 1~2등급 : 선택 구조소방 3~10등급 : 필요	필요
2	설계 특징	고방출 능력	고, 저 방출능력
3	범위	공항에서 운용중인 가장 긴 항공기에 적절한 범위	공항에서 운용중인 가장 긴 항공기에 적절한 범위
4	수동 호스	필요	필요
5	트럭하부 노즐	선택	필요
6	범퍼 포탑	선택	선택
7	가속	정상적 운용온도에서 25초 이내에서 80km/h	정상적 운용온도에서 40초 이내에서 80km/h
8	최고 속도	최소 105km/h	최소 100km/h
9	모든 바퀴의 구동력 (All wheel drive)	필요	필요
10	자동 또는 반자동 변속	필요	필요
11	단일 뒷바퀴 구성	구조소방 1~2등급 : 선택 구조소방 3~10등급 : 필요	필요
12	접근과 이탈 최소 각	30°	30°
13	경사(정지) 최소 각	30°	28°
14	전천후 기동가능 타이어	필요	필요

주) 제9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요건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최소 비상의료장비(제127조 관련)**

1. 의료시설이 있는 공항에서 갖추어야 할 비상 의료장비

- 가. 분류표지 500개
- 나. 들것 : 최대기종 좌석의 25%
- 다. 척추골절 환자를 위한 백보드 10개
- 라. 다양한 형태의 골절상을 위한 일반적 또는 부풀릴 수 있는 부목 50개
- 마. 지혈패드, 지혈대, 호흡튜브, 가위, 붕대 및 소독된 화상 팩 각 50개  
또는 해당 품목들로 구성된 구급키트 50개
- 바. 20명 이상의 부상자에게 현장에서 산소공급을 하기 위한 삼관과 산소  
마스크 20개
- 사. 자동 산소 소생기 2~3개
- 아. 사망자를 위한 플라스틱 가방 플라스틱 가방, 관 또는 시신 낭 : 최대  
기종 좌석의 25%

2. 의료시설이 없는 공항에서 갖추어야 할 비상의료장비

- 가. 들것 : 최대기종 좌석의 25%
- 나. 지혈제 7개
- 다. 일반붕대 (15cm 2개, 7.5cm 6개, 5cm 8개) 16개
- 라. 압박붕대 (7.5cm x 215cm, 10cm x 215cm) 3개
- 마. 복부패드 (2개짜리 5팩) 10개
- 바. 10cm x 10cm 거즈패드 (10개짜리 4팩) 40개
- 사. 지혈대 2개
- 아. 대형 붕대가위 2개
- 자. 알콜 스폰지 팩 12개
- 차. 반창고 2롤
- 카. 화상 키트 1세트
- 타. 100개들이 밴드 상자
- 파. 혈압커프와 거즈 1개
- 하. 클립보드 (22cm x 28cm) 2개
- 거. 연필 6개
- 너. 충분한 수의 부상자 인식표
- 더. 부풀릴 수 있는 부목 1셀
- 러. 호흡튜브 1개

- 머. 짧은 척추보드 1개
  - 버. 후레쉬 1개
  - 서. 목보호대 2개
  - 어. 바이트 블록 1개
  - 저. 고정 매트리스 1개
  - 처. 일회용 산과 도구 1개
  - 커. 인공 통풍로 1개
  - 터. 일회용 통풍로(각각 2번, 4번, 5번) 3개
  - 퍼. 도뇨관과 함께 1개의 진공 주사기 2개 (12번, 14번FR)
  - 허. 23번GA 1.6cm 바늘에 20개의 일회용 주사기
- 주) 제2호의 “처”목 내지 “허”목은 공항으로부터 8km거리이내에 위치한 지원협정 병원에서 해당 품목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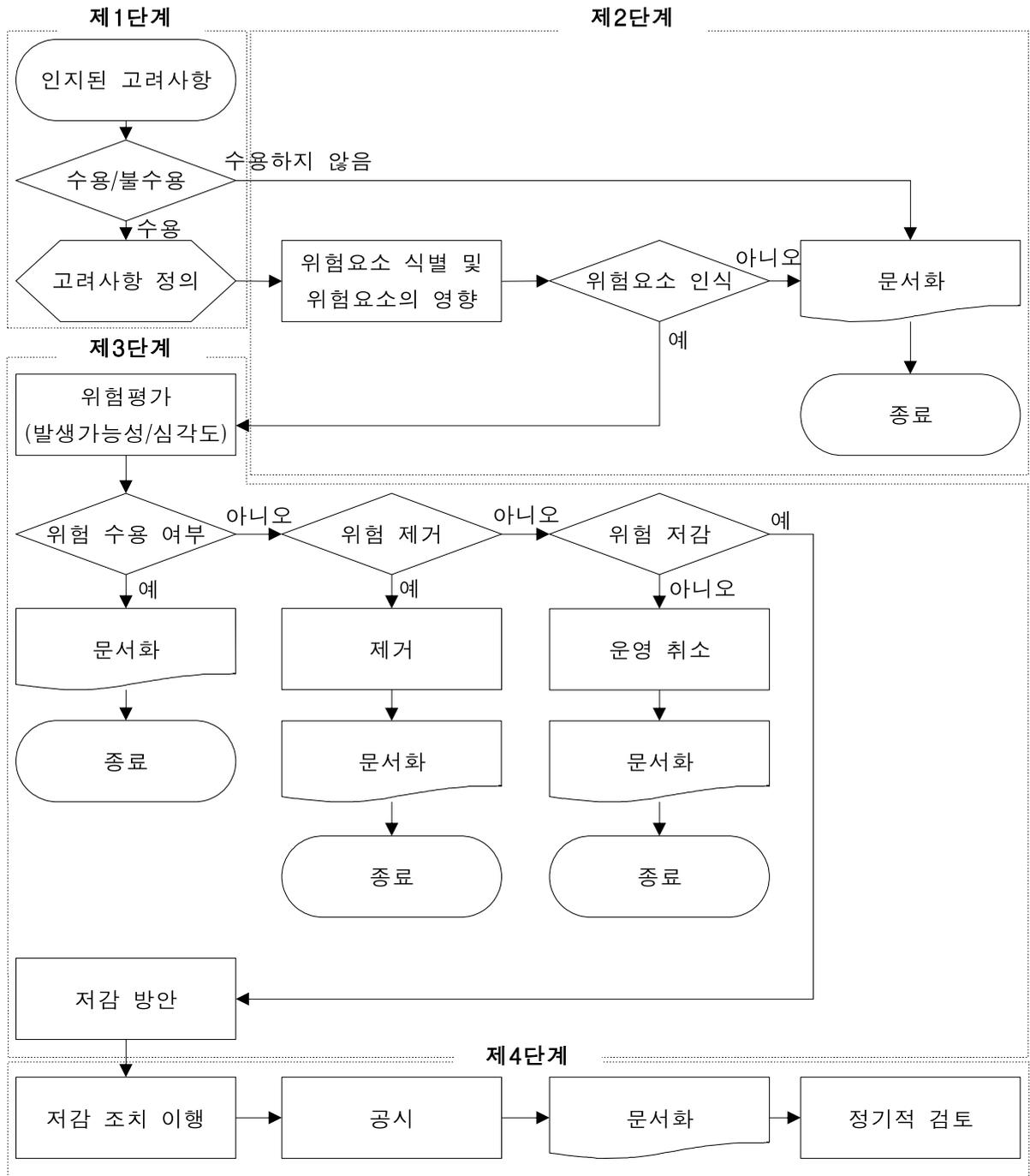
**[별표 12]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점검 항목(제165조 관련)**

1. 안전정책 및 목표에 대하여 공식적인 서면문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안전정책 및 목표가 조직 내에 적절히 배포되었는가?
3. 안전정책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지원은 적절한가?
4. 안전부서 또는 안전관리자(SM)를 확보하고 있는가?
5. 안전관리자가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6. 안전보고서나 회보의 정기적인 발행을 지원하는가?
7. 외부로부터 접수한 안전보고서나 회보를 배포하는가?
8. 관리자와 직원 간에 정기적으로 안전정보 의견교환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9. 주기적으로 안전회의를 개최하고 있는가?
10. 사고준사고 발생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조사결과가 관리자 및 직원에게 통보되는가?

**[별표 13] 공항운영분야 안전성과 관리대상 항목(제165조 관련)**

1.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2.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4. 항공기 급유 중 항공기 정상운항을 지연시킬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
5.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부품·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이 발견된 경우
6. 주기 중인 항공기와 차량(장비) 또는 물체 등이 충돌한 경우
7.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 장비, 사람, 시설이 상호 충돌하여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14] 안전평가 처리절차(제165조 관련)



[별표 15] 수용성 검토표(제165조 관련)

1. 공항 물리적 특성

구분	항 목
활주로	1. 활주로 길이, 폭, 갓길 2. 활주로 회전 패드 3. 착륙대 규모 4. 착륙대 내 장애물 5.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RESA) 6. 포장강도
유도로	1. 유도로 길이, 폭, 갓길 2. 유도로 곡선부 3. 유도로(교량위 설치된 경우) 4. 포장강도
계류장	1. 포장강도
최소 이격거리	1. 활주로-유도로 2. 유도로-유도로 3. 계류장내 항공기이동
기타	1. 제·방빙 시설

2. 중요 항공기 특성

항 목
1. 동체길이(FUSELAGE LENGTH) 2. 동체너비(FUSELAGE WIDTH) 3. 문 턱 높이(DOOR SILL HEIGHT) 4. 항공기 앞부분 특성(AEROPLANE NOSE CHARACTERISTICS) 5. 꼬리 높이(TAIL HEIGHT) 6. 날개 길이(WINGSPAN) 7. 날개 끝 수직 분리(WING TIP VERTICAL CLEARANCE) 8. 조종석 시야(COCKPIT VIEW) 9. 조종사 눈 위치에서 전방착륙장치까지의 거리(DISTANCE FROM THE PILOT'S EYE POSITION TO THE NOSE LANDING GEAR) 10. 착륙장치 설계(LANDING GEAR DESIGN) 11. 외측 메인기어 바퀴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12. 바퀴 간격(WHEELBASE) 13. 방향 조정 장치(GEAR STEERING SYSTEM) 14. 최대 항공기 중량(MAXIMUM AEROPLANE MASS) 15. 착륙장치의 기하학적 구조, 타이어 압력 및 항공기 분류번호(ACN) 수치(LANDING GEAR GEOMETRY, TIRE PRESSURE AND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 VALUES) 16. 엔진 특성(ENGINE CHARACTERISTICS) 17. 최대 승객 및 연료 적재량(MAXIMUM PASSENGER-AND FUEL-CARRYING CAPACITY) 18. 비행 성능(FLIGHT PERFORMANCE)

### 3. 항공기 지상작업 요건

항 목
1. 지상 전력(GROUND POWER)
2. 승객 탑승 및 하기(PASSENGERS EMBARKING AND DISEMBARKING)
3. 화물 하역(CARGO LOADING AND UNLOADING)
4. 연료 주입(FUELLING)
5. 후방견인 및 끌기(PUSHBACK AND TOWING)
6. 제빙(DE-ICING)
7. 지상이동 및 유도(TAXIING AND MARSHALLING)
8. 항공기 정비(AEROPLANE MAINTENANCE)
9. 구조소방(RFF)
10. 장비정치장(EQUIPMENT AREAS)
11. 주기장 배정(STAND ALLOCATION)
12.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DISABLED AIRCRAFT REMOVAL)

[별표 16] 활주로 상태보고 절차(제29조, 제36조 관련)

1. 제36조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활주로 상태보고(RCR)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을 따른다.
  - 가. 활주로 상태보고는 활주로의 3분의 1 부분마다 활주로 상태부호(RWYCC)를 측정하여야 한다.
  - 나. 측정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동지역 상태의 측정 및 보고
    - (2) 측정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양식으로 보고
    - (3) 중요 변경사항의 신속한 보고
  - 다. 보고할 정보는 다음으로 구성된 활주로 상태보고 형식에 따라야 한다.
    - (1) 항공기 성능 계산 부분
    - (2) 상황인식 부분
  - 라. 활주로 상태보고는 항공정보 체계에 맞는 문자로 다음 순서에 따라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항공기 성능 계산 부분
      - (가) 공항 코드
      - (나) 평가 날짜 및 시간
      - (다) 낮은 활주로 지정 번호
      - (라)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활주로 상태부호(RWYCC)
      - (마)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오염범위 백분율
      - (바)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흩어져 있는 오염물질(Loose Contaminant)의 깊이
      - (사) 공시된 활주로의 폭보다 활주로 상태부호가 적용되는 폭이 작은 경우, 활주로 상태부호가 적용되는 폭
    - (2) 상황인식 부분
      - (가) 감소된 활주로의 길이
      - (나) 활주로 상의 떠다니는 눈
      - (다) 활주로 상의 흩어져 있는 모래(Loose sand)
      - (라) 활주로 상의 화학적 처리
      - (마) 활주로상의 눈더미
      - (바) 유도로상의 눈더미
      - (사) 활주로에 인접한 눈더미
      - (아) 유도로 상태

(자) 계류장 상태

(차) 제47조에 따른 장비로 측정된 마찰계수

(카) 비고

마.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태보고 내용을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 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활주로 상태보고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 성능 계산 부분

(1) 공항 코드(필수) : Doc 7910에 따른 ICAO 지정 4자리 공항 코드를 표시한다.

형식 : nnnn

예시 : RKSS (김포)

RKSI (인천)

(2) 평가 날짜 및 시간(필수) : 업무담당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국제 표준 날짜 및 시간(UTC)을 표시한다.

형식 : MMDDhhmm

예시 : 09111357 (9월 11일 13시 57분)

(3) 낮은 활주로 번호(필수) : 측정이 이루어지고 보고되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문자를 표시한다.

형식 : nn[L] 또는 nn[C] 또는 nn[R]

예시 : 15R (33L-15R 활주로의 경우)

(4)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활주로 상태부호(RWYCC) (필수)

(가) 활주로 상태부호는 "/"로 구분되는 3개의 문자 그룹으로 보고하며, 3등분한 구역을 나열하는 순서는 낮은 활주로 번호에서 보는 순서대로 한다.

(나) 단,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활주로 표면상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때에는 접근 위치와 가까운 순서대로 한다. (그림 16-1, 그림 16-2 참조)

형식 : n/n/n

예시 : 5/5/2

(5)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오염 범위 백분율 (조건부)

(가) 오염범위 백분율은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에 대해 "/"로 구분되는 최대 9개 문자 그룹으로 보고하며, 평가는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내의 오염물이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표 16-1의 지침을 활용한다.

(나) 건조하거나 오염범위가 10% 미만인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에 대

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NR”로 표기한다.

- (다) 활주로 상에 오염물질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있는 경우, 상황인식 부분의 비고란에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형식 : [n]nn/[n]nn/[n]nn

예시 : 25/50/100

NR/50/100 (활주로를 3등분한 첫 번째 구역의 오염범위가 10% 미만)

25/NR/100 (활주로를 3등분한 두 번째 구역의 오염범위가 10% 미만)

25/50/NR (활주로를 3등분한 세 번째 구역의 오염범위가 10% 미만)

- (6)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흩어져 있는 오염물질(건조한 눈, 젖은 눈, 진창, 고인 물)의 깊이(조건부)

- (가)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오염물질의 깊이를 밀리미터(mm) 단위로 나타내는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로 보고하며, 깊이는 표 16-2에 따라 “/”로 구분되는 6~9자리 문자 그룹으로 보고한다.

- (나) 이 정보는 건조한 눈, 젖은 눈, 진창 눈, 고인 물이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있을 때 보고하며, 이 외의 오염물질의 깊이는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되지 않는 정보는 “NR”로 표기한다.

- (다) 오염물질의 깊이가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상황인식 부분의 비고란에 추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함의 기준은 표 16-2의 3열의 깊이의 2배를 넘는 수평 방향 깊이를 뜻한다. 자세한 사항은 ICAO Circular 3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 : [n]nn/[n]nn/[n]nn

예시 : 04/06/12 [STANDING WATER]

02/04/09 [SLUSH]

02/05/10 [WET SNOW 또는 WET SNOW ON TOP OF ...]

02/20/100 [DRY SNOW 또는 DRY SNOW ON TOP OF ...]

NR/NR/100 [DRY SNOW in the last third only]

- (7)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상태 설명(필수) :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 각각의 상태 설명을 국제 표준으로 정해진 아래 용어의 대문자로 보고하며, 3등분한 구역은 “/”로 구분한다.

COMPACTED SNOW

DRY

DRY SNOW

DRY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DRY SNOW ON TOP OF ICE

FROST

ICE  
 SLUSH  
 STANDING WATER  
 WATER ON TOP OF COMPACTED SNOW  
 WET  
 WET ICE  
 WET SNOW  
 WET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WET SNOW ON TOP OF ICE  
 CHEMICALLY TREATED  
 LOOSE SAND

형식 : nnnn/nnnn/nnnn

예시 : DRY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WET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WATER ON TOP OF  
 COMPACTED SNOW

(8) 공시된 활주로 폭보다 활주로 상태부호(RWYCC)가 적용되는 폭이 작은 경우, 활주로 상태부호(RWYCC)가 적용되는 폭(선택)

(가) 오염되지 않은 활주로의 폭이 공시된 활주로의 폭보다 작은 경우, 오염되지 않은 활주로의 폭을 미터(m)단위로 나타내는 두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나) 오염되지 않은 활주로의 폭이 중심선을 따라 대칭이 아닌 경우, 상황인식 부분의 비고란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형식 : nn

예시 : 30

(9) (4) ~ (7)에 해당되는 항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의 보고 예시

(가) 활주로 상태의 첫 번째 측정 이후, 다음과 같은 첫 번째 활주로 상태보고가 생성된다.

5/5/5 100/100/100 02/02/02 SLUSH/SLUSH/SLUSH

[활주로 상태부호(RWYCC) : 5, 활주로 오염범위 : 100%, 오염 깊이 : 2mm, 활주로 상태 : SLUSH(진창)]

(나) 지속적인 강수로 인해 이후 측정에서 활주로 상태부호에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활주로 상태보고가 생성되어 아래와 같은 두 번째 활주로 상태보고가 생성된다.

2/2/2 100/100/100 03/03/03 SLUSH/SLUSH/SLUSH

[활주로 상태부호(RWYCC) : 2, 활주로 오염범위 : 100%, 오염 깊이

: 3mm, 활주로 상태 : SLUSH(진창)]

- (다) 더 많은 강수로 인해 이후 측정에서 활주로 전체의 강수 깊이가 3mm에서 5mm로 증가하였으나, 활주로 상태부호의 변화는 없으므로 새로운 활주로 상태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깊이 변화가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기 위한 최소값인 3mm보다 작음)
- (라) 강수에 대한 최종 측정에서 깊이가 7mm로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 활주로 상태보고(두 번째 활주로 상태보고)로부터의 깊이 변화가 3mm에서 7mm로 변화하여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는 최소값인 3mm보다 크기 때문에 새로운 활주로 상태보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 번째 활주로 상태보고가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2/2/2 100/100/100 07/07/07 SLUSH/SLUSH/SLUSH

[활주로 상태부호(RWYCC) : 2, 활주로 오염범위 : 100%, 오염 깊이 : 7mm, 활주로 상태 : SLUSH(진창)]

나. 상황인식 부분

- (1) 감소된 활주로 길이(조건부) : 감소된 착륙가용거리(LDA)가 NOTAM에 발행된 경우 착륙가용거리(LDA)를 표기한다.  
형식 : RWY nn[L] or nn[C] or [R] LDA REDUCED TO [n]nn  
예시 : RWY 22L LDA REDUCED TO 1450.
- (2) 활주로상의 흘날리는 눈(선택)  
형식 : DRIFTING SNOW.  
예시 : DRIFTING SNOW.
- (3) 활주로상의 흩어져 있는 모래(선택)  
형식 : RWY nn[L] or nn[C] or nn[R] LOOSE SAND  
예시 : RWY 02R LOOSE SAND.
- (4) 활주로상의 화학적 처리(필수)  
형식 : RWY nn[L] or nn[C] or nn[R] CHEMICALLY TREATED  
예시 : RWY 06 CHEMICALLY TREATED.
- (5) 활주로상의 눈더미(선택) : 미터(m) 단위의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이격된 거리를 표시한다.  
형식 : RWY nn[L] or nn[C] or nn[R] SNOWBANK Lnn or Rnn or LRnn FM CL  
예시 : RWY 06L SNOWBANK LR19 FM CL.
- (6) 유도로상의 눈더미(선택) : 미터(m) 단위의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이격된 거리를 표시한다.  
형식 : TWY nn[n] SNOWBANK Lnn or Rnn or LRnn FM CL

예시 : TWY A SNOWBANK LR20 FM CL.

(7) 공항 제설계획에 설정된 높이를 초과하는 활주로에 인접한 눈더미(선택)

형식 : RWY nn[L] or nn[C] or nn[R] ADJACENT SNOWBANKS

예시 : RWY 06R ADJACENT SNOWBANKS.

(8) 유도로 상태(선택)

형식 : TWY [nn]n POOR

예시 : TWY B POOR.

(9) 계류장 상태(선택)

형식 : APRON [nnnn] POOR

예시 : APRON NORTH POOR.

(10) 제43조에 따른 장비로 측정된 마찰계수(선택)

형식 : 제43조의 형식 및 관련 절차에 따름

예시 : 제43조의 형식 및 관련 절차에 따름

(11) 허용된 문자로만 표현된 비고란(선택) : 가능한 표준화 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허용된 문자는 다음과 같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빗금)", "(.온점)", "(공란)"

형식 : 상기 허용된 문자로 이루어진 메시지만 가능하며 메시지는 "."으로 종료  
다. 활주로 상태보고 전체 전문 예시

[COM header and Abbreviated header]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의해 완성되는 부분)

GG EADBZQZX EADNZQZX EADSZQZX

070645 EADDYNYX

SWEA0151 EADD 02170055SNOWTAM 0151

[Aeroplane performance calculation section]

EADD 02170055 09L 5/5/5 100/100/100 NR/NR/NR WET/WET/WET

EADD 02170135 09R 5/4/3 100/50/75 NR/06/06 WET/SLUSH/SLUSH

EADD 02170225 09C 3/2/1 75/100/100 06/12/12 SLUSH/WET SNOW/WET SNOW

[Situational awareness section]

RWY 09L SNOWBANK R20 FM CL. RWY 09R ADJ SNOWBANKS.

TWY B POOR. APRON NORTH POOR.

3.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 및 활주로 상태부호(RWYCC) 배정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의 25% 이하 면적이 오염물질로 덮여있는 경우,

활주로 상태부호(RWYCC)는 6을 배정한다.

- 나. 오염물질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질로 덮여있거나 젖어 있는 부분의 위치를 활주로 상태보고의 상황인식 부분의 비고란에 기술하여야 한다.
- 다. 활주로 표면상태에 대한 설명은 표 16-3의 용어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기술하여야 한다.
- 라. 활주로를 3등분한 어느 한 구역의 전체 오염범위가 25%를 초과하나, 단일 오염물질만으로는 25%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활주로 상태부호는 훈련된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다. 이 경우, 평가자는 어떤 오염물질이 항공기에 더 노출이 많이 되는지 또는 항공기 성능에 더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여야 한다.
- 마. 활주로 상태부호는 표 16-3을 참고하여 결정하며, 활주로 상태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오염물질의 종류
  - (2) 오염물질의 깊이
  - (3) 외부 온도(가급적 활주로 표면 온도 사용)
- 바. 활주로 상태부호의 상향 및 하향 조정은 다음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활주로 상태부호가 5, 4, 3 또는 2로 배정된 경우, 상향조정 될 수 없다.
  - (2) 활주로 상태부호가 1 또는 0으로 배정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다.
    - (가) 제47조에 따른 장비를 활용한 다른 모든 활주로 상태 관측이 훈련된 평가자가 판단한 더 높은 RWYCC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 (나) RWYCC 1 또는 0의 상향조정 결정은 하나의 활주로 상태 평가방법에만 근거할 수 없으며, 활주로의 미끄러움 정도를 평가하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 (다) RWYCC 1 또는 0이 상향조정 되는 경우, RWYCC가 적용되는 동안 활주로 표면상태를 자주 측정하여 활주로 표면상태가 지정된 코드 아래로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활주로 표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 1) 강수 상태
      - 2) 온도 변화
      - 3) 바람의 영향
      - 4) 활주로의 이용 빈도
      - 5)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

- (3) (2)에 따라 활주로 상태부호를 상향조정할 경우, 활주로 상태부호를 3을 초과하여 상향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모래나 다른 활주로 처리방법을 사용하여 활주로 상태부호를 상향할 경우, 활주로 표면을 자주 측정하여 활주로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여야 한다.
- (5) 활주로 상태부호는 표 16-4에 제시된 기준을 포함하여 활주로 미끄러움 정도를 평가하는 사용 가능한 다른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 하향될 수 있다. 표 16-4는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의 보고와 활주로 상태부호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6) 활주로 상태부호는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의 보고를 고려하여 표 16-5의 절차에 따라 하향 및 상향조정 될 수 있다. 단, 상향조정 의 경우에는 조종사 보고와 다른 정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7) 활주로 상태부호 2 이상이 보고된 상태에서, 조종사의 연속된 2개의 활주로 제동에 대한 보고가 "POOR"인 경우, 새로운 활주로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8)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의 보고가 "LESS THAN POOR"인 경우, 정보 전파 및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활주로의 운용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9) 표 16-3과 표 16-4가 조합된 표 16-5는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으로,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아래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가) 평가조건
  - (나) 하향 평가조건

<표 16-1> 오염물질 범위 백분율

측정 백분율(%)	보고 백분율(%)
10 - 25	25
26 - 50	50
51 - 75	75
76 - 100	100

<표 16-2> 오염물질 깊이 측정

오염물질	최소 보고값	중대한 변화
STANDING WATER(고여있는 물)	04(4mm), 이후 측정값	3mm 이상 15mm 이하
SLUSH(진창)	03(3mm), 이후 측정값	3mm 이상 15mm 이하
WET SNOW(젖은 눈)	03(3mm), 이후 측정값	5mm
DRY SNOW(건조한 눈)	03(3mm), 이후 측정값	20mm

- 주1) 고인 물의 경우 최소 보고값은 04(4mm)로 한다. (3mm 이하는 습윤(WET)으로 간주)
- 주2) 진창, 젖은 눈, 건조한 눈의 경우 최소 보고값은 03(3mm)로 한다.
- 주3) 4mm를 초과하는 고인 물, 3mm를 초과하는 진창, 젖은 눈, 건조한 눈은 보고되어야 하며, 평가된 값에서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표 16-3> 활주로 상태부호(RWYCC) 평가

활주로 상태	활주로 상태부호 (RWYCC)
DRY	6
FROST WET (The runway surface is covered by any visible dampness or water up to and including 3 mm deep.) SLUSH (up to and including 3 mm depth) DRY SNOW (up to and including 3 mm depth) WET SNOW (up to and including 3 mm depth)	5
COMPACTED SNOW (Outside air temperature minus 15 degrees Celsius and below)	4
WET ("Slippery wet" runway) DRY SNOW (more than 3 mm depth) WET SNOW (more than 3 mm depth) DRY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Any depth) WET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Any depth) COMPACTED SNOW (Outside air temperature above minus 15 degrees Celsius)	3
STANDING WATER (more than 3 mm depth) SLUSH (more than 3 mm depth)	2
ICE	1
WET ICE WATER ON TOP OF COMPACTED SNOW DRY SNOW OR WET SNOW ON TOP OF ICE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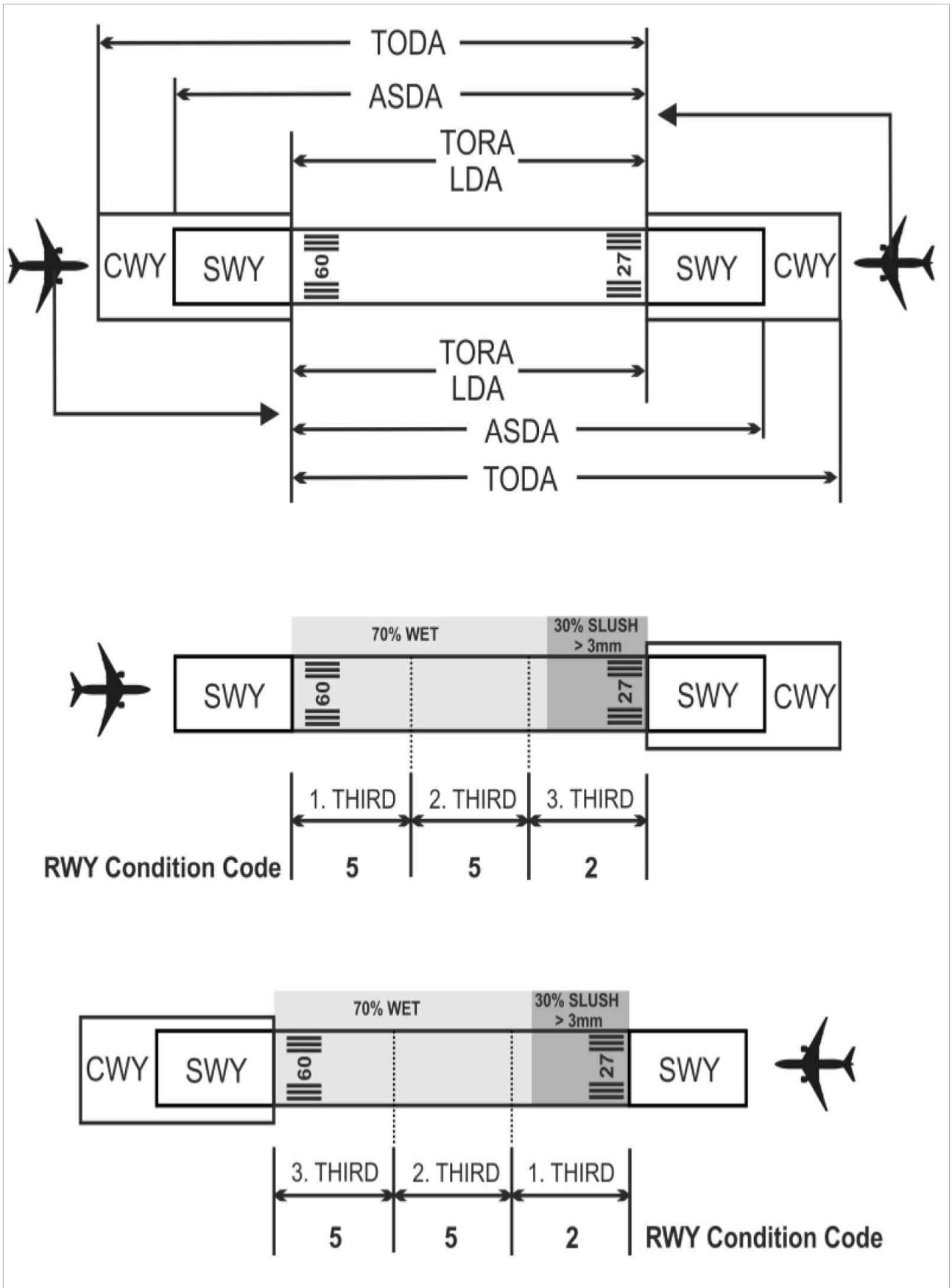
<표 16-4>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 보고와 활주로 상태부호와의 상관관계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 보고	설명	활주로 상태부호 (RWYCC)
N/A	-	6
GOOD	제동 감속 및 방향 제어 정상	5
GOOD TO MEDIUM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정상과 중간 사이	4
MEDIUM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눈에 띄게 감소	3
MEDIUM TO POOR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중간과 나쁨 사이	2
POOR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매우 크게 감소	1
LESS THAN POOR	제동 감속 효과가 없거나 방향 제어가 불가능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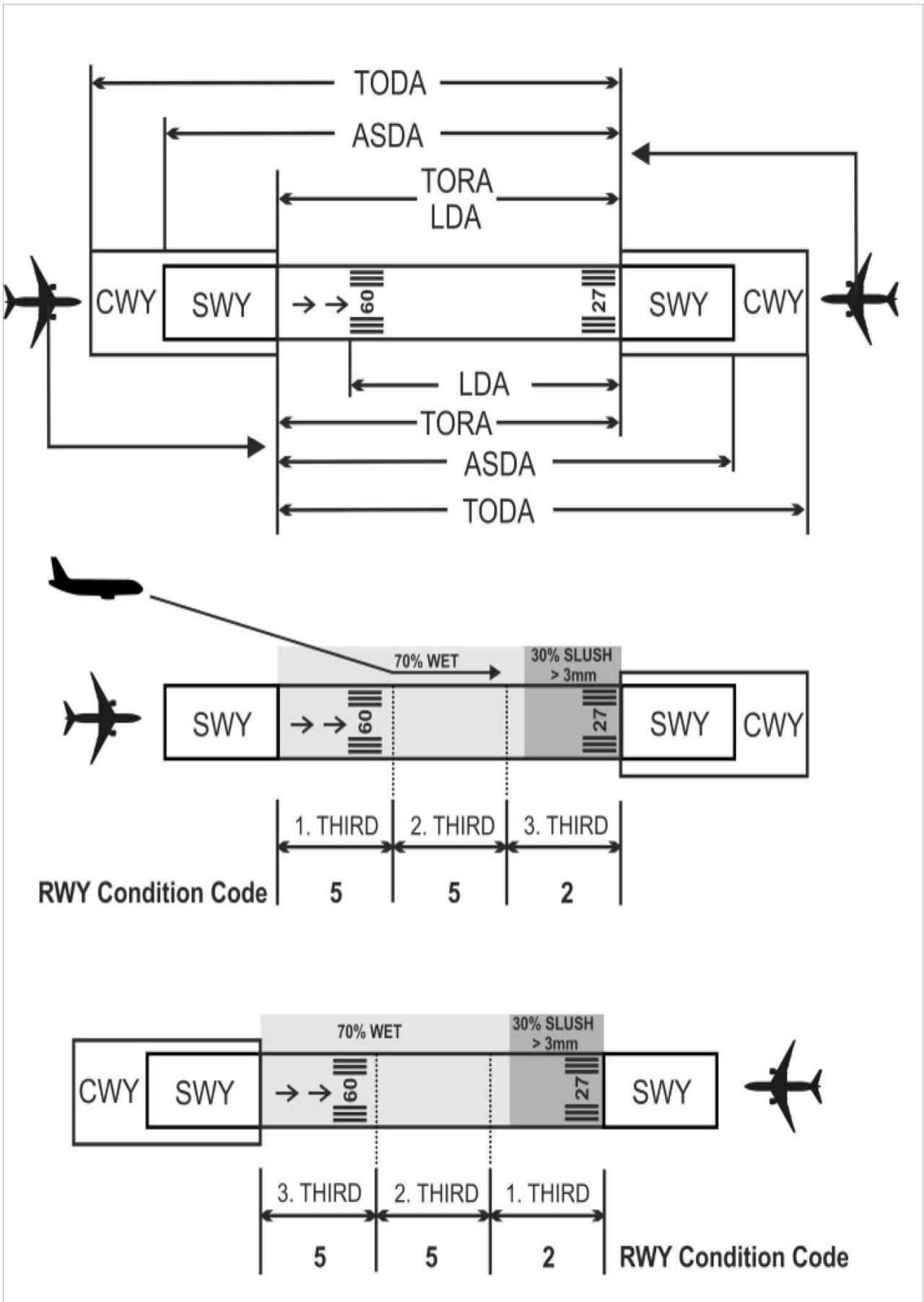
<표 16-5>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 Runway condition assessment matrix)

평가 기준		하향 평가 기준	
활주로 상태부호 (RWYCC)	활주로 표면상태	항공기 감속 또는 방향 제어 관측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 보고
6	* DRY	-	N/A
5	* FROST * WET (The runway surface is covered by any visible dampness or water up to and including 3 mm depth) <b>Up to and including 3 mm depth:</b> * SLUSH * DRY SNOW * WET SNOW	제동 감속 및 방향 제어 정상	GOOD
4	<b>-15°C and Lower outside air temperature:</b> * COMPACTED SNOW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정상과 중간 사이	GOOD TO MEDIUM
3	* WET (“Slippery wet” runway) * DRY SNOW or WET SNOW (Any depth) ON TOP OF COMPACTED SNOW <b>More than 3 mm depth:</b> * DRY SNOW * WET SNOW <b>Higher than -15°C outside air temperature1:</b> * COMPACTED SNOW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눈에 띄게 감소	MEDIUM
2	<b>More than 3 mm depth of water or slush:</b> * STANDING WATER * SLUSH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중간과 나쁨 사이	MEDIUM TO POOR
1	* ICE	제동 감속 또는 방향 제어가 매우 크게 감소	POOR
0	* WET ICE * WATER ON TOP OF COMPACTED SNOW * DRY SNOW or WET SNOW ON TOP OF ICE	제동 감속 효과가 없거나 방향 제어가 불가능	LESS THAN POOR

주) 외기온도는 가급적 활주로 표면온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6-1>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에 대한 활주로 상태부호 보고



<그림 16-2>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이설시단이 있는 활주로를 3등분한 구역에 대한 활주로 상태부호 보고

**[별표 17] 이동지역 점검 및 보고(제30조, 제31조 관련)**

**1. 절차 및 보고**

가. 이동지역 점검절차는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 진입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하는 중에는 적절한 무선통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 (1) 점검 중 활주로를 비우라는 관제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은 신속히 활주로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점검자는 특정 허가를 받을 때까지 활주로에 다시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점검팀은 계기착륙시설(ILS) 임계/민감구역을 가로질러 활주로를 벗어나면 안 된다.
- (2) 활주를 횡단하거나 진입하기 전에는 관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활주로 점검은 운항 항공기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이·착륙하는 반대 방향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 (4) 활주로 점검이 최종 종료되면 관제탑에 점검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의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5) 점검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활주로 점검 중 위험한 고장이 발견되면(예: 손상된 배수구 덮개 또는 부서진 등화), 즉시 무선통신(RTF)을 통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점검 중 고장이 발견되었지만, 활주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장인 경우,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점검 일지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장에 대한 설명 및 정확한 위치
- (2)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추가 분석을 위한 이벤트 기록(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일부 포함) 및 추가 조치를 위한 유지보수 부서에 통보와 같이 필요하거나 실시한 개선 조치의 세부사항
- (3) 작업 또는 추가 조치를 수행할 책임자에 대한 확인
- (4)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 확인

**2. 검사 수준**

가. 이동지역 점검은 일일점검과 정기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일일점검 : 전체 이동지역 및 공항 경계에 인접한 구역을 점검
- (2) 정기점검 : 전문 인력에 의해 모든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점검

- 나. 모든 점검은 점검일지가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점검 간격 및 시간 세부사항
  - (2) 점검 수행자의 성명
  - (3) 점검 결과 및 관측 사항
- 다. 점검 후 확인된 모든 개선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조치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 3. 일일점검

- 가. 일일점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1) 주간 운항 전 첫 등화 점검
  - (2) 야간 운항 전 마지막 등화 점검
  - (3) 이외의 점검은 위의 두 점검 사이에 계획할 수 있으며, 점검 빈도는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따라 결정
- 나. 추가 일일점검(특히 활주로와 관련된 점검)은 공항 상황, 위험 식별 및 분석, 안전 위험 평가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점검 구역을 잊지 않도록 표준 점검 경로를 설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라. 점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 마. 일일점검을 수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항공기 엔진에 흡입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지장물(FOD) 및 활주로 청결상태(활주로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한 이물질 또는 활주로 마찰 작업(gritting) 후 남아있는 모래 및 타이어 고무 퇴적물)
  - (2) 콘크리트의 균열 및 파열, 접합 밀봉 상태, 아스팔트 표면의 균열 및 골재 풀림 또는 마찰 과정의 파손을 포함한 포장 표면 손상 징후.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노후화는 유지보수 부서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손상이 심각한 경우, 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역은 항공기 폐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비가 온 이후, 침수 지역을 확인하고 표시
  - (4) 등화설비의 손상
  - (5) 활주로 표지의 청결도 및 가시성
  - (6) 배수구 덮개의 상태 및 유격

<표 17-1> 일일점검 점검항목

구 분	내 용
<p><b>활주로</b></p>	<p>가. 활주로와 활주로 갭길의 청결도, 고무 퇴적물, 배수구 덮개                      나. 활주로 청결도. 특히 엔진 흡입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FOD                      다. 활주로 마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존재                      라. 콘크리트의 균열 및 파열, 골재의 느슨함과 같은 포장 표면 손상의 징후                      마. 활주로 표지판 및 표지의 손상 및 마모                      사. 착륙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RESA)과 그 배수 시설                      아.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경계등, 시단 연장등 및 기타 모든 활주로 등화의 고장                      자. 착륙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체                      차. 활주로 또는 활주로 인접구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작업                      카. 주간/야간 운항을 위한 모든 풍향지시기의 상태                      타. 활주로 또는 활주로 부근에서의 야생동물 활동</p>
<p><b>유도로 및 유도로선</b></p>	<p>가. 모든 유도로 포장 표면. 특히 손상, 청결도 및 FOD에 관한 포장면                      나. 모든 유도로 표지판 및 표지에 대한 손상 또는 마모                      다. 유도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체 또는 함몰지역                      라. 유도로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인접 구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작업                      마. 모든 유도로중심선 또는 유도로등 등화설비 및 표지                      사. 배수구 및 덮개의 일반적 상태                      아. 모든 침수 지역을 포함한 잔디 가장자리의 상태</p>
<p><b>계류장</b></p>	<p>가. 모든 계류장 포장 표면. 특히 손상, 청결도(연료/오일 유출) 및 FOD에 관한 포장면                      나. 모든 계류장 표지판 및 표지의 손상 또는 마모                      다. 모든 항공기, 차량, 장비, 승객 탑승교의 잘못된 주차                      라. 모든 작업 구역                      마. 배수구 및 덮개의 일반적 상태</p>
<p><b>공항 등화</b></p>	<p>가. 모든 활주로진입등(Category III 보조 시스템 포함)은 야간 운항 이전에 매일 일몰 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결함이 보고되어야 함                      나. 모든 활주로 등화는 등화를 켜 후 가능한 한 빨리 점검하며 꺼진 등화와 회로 고장 각각에 대해 보고                      다. 모든 유도로 등화는 가능한 한 빨리 점검해야 하며, 모든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정지선등, 활주로경계등, 활주로유도등에 대해 점검                      라. 야간에는 모든 계류장 등화를 점검하고 결함을 보고</p>
<p><b>잔디구역 (또는 유도로 시스템과 인접한 지역)</b></p>	<p>가. 초목의 일반적인 상태(특히 항공기 제트분사로 인한 침식 구역)                      나. 잔디 길이 및 잡초의 양(특히 등화 및 표지판 부근)                      다. 고여있는 물이 존재하는 모든 구역(특히 침수된 잔디 구역은 조류가 선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고 보고)                      라. 함몰 또는 항공기 휠 트랙                      마. 포장 표면 가장자리의 높이가 크게 다를 경우                      바. FOD와 관련된 지역의 청결도                      사. 모든 작업 구역</p>

- 바. 활주로 시단은 항공기 제트분사에 의한 진입등, 표지 원뿔(marker cones), 시단등의 손상, 청결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장애물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 사. 잔디를 깎는 주된 목적은 높은 초목에 의해 등화와 표지판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새와 다른 야생동물을 공항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엔진으로 이물질 흡입이 예측되는 지역에 절단된 잔디 더미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항 경계 밖의 구역**

- 가. 어떤 물체도 보호 표면(특히, 모든 활주로의 접근 및 출발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 운영 담당자는 공항 주변을 육안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나. 승인된 장애물에 대한 조명 및 표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다. 시정조치를 위해 승인되지 않은 장애물과 승인된 장애물의 표시 및 조명의 결함을 발견한 즉시 담당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

- 가. 정기점검은 일일점검보다 이동지역 및 관련 시설의 상태에 대한 보다 상세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도보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정기점검 절차는 공항 크기에 따라 이동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여야 하며, 각 구역은 정해진 일정한 간격으로 자세히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주기장 수요, 사용 중인 활주로 또는 기타 운영 요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
- 다.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시각지원시설의 정기점검은 다른 활주로보다 더 자주 상세히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손상이 감지된 경우 손상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마. 점검팀은 다음 항목의 사용 가능성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1) 활주로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빈도 내에서, 3개월 마다 또는 활주로 사용량에 근거해 감소된 빈도에 따라 자세히 점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활주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점검 당일의 이동량에 따라 여러 구역들은 <표 17-2>와 같이 점

- 검하여야 한다.
- (2) 항공기 이동과 사용 중인 활주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유도로 구역의 각 부분을 도보로 점검하여야 한다. 모든 결함 사항은 해당 구역 특정 지도 및 도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유도로는 <표 17-2>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 (3) 계류장과 주기장 구역을 점검하고 해당 구역 특정 지도 및 도표에 모든 결함이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계류장과 주기장은 <표 17-2>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표 17-2> 정기점검 점검항목

구 분	내 용
<p><b>활주로</b></p>	<p>가. 활주로 표면, 활주로 전체 길이 및 폭                      나. FOD, 균열 및 파손 등을 포함한 활주로 표면의 문제                      다. 접지구역 상태 및 고무 퇴적물, 활주로 회전패드                      라. 표지판, 표지, 등화 및 등화설비의 안전성                      마. 착륙대, 정지구역, 활주로중단안전구역(RESA)                      바. 활주로 진입등시스템(전선, 설비, 기타 구조물 포함) (연간 2회 분석)                      사. 공항 주변구역(최소한 일주일에 1회), 특히, 접근 및 출발구역에 대해 보호표면을 침범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p>
<p><b>유도로</b></p>	<p>가. 유도로 갓길을 포함한 모든 유도로 표면 - 균열, 노후화, FOD 유무                      나. 표지판, 표지, 등화 및 등화설비의 안전성                      다. 유도로 주변지역 및 유도로대, 잔디 또는 기타 포장된 지역, 특히 장애물과 표면상태와 관련해서 활주로의 정지구역이 점검되는 방법과 유사하게 점검</p>
<p><b>계류장 및 주기장</b></p>	<p>가. 모든 계류장 및 주기장의 표면, 관련 장비의 주차 구역, FOD가 발생하는 경우 표면 파손 여부                      나. 표지판, 표지 및 조명, 항공기 이동 및 주차와 관련된 모든 표면 페인트 표시를 검사하고 재도장 요구사항을 기록                      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A-VDGS)과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지 및 조명                      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 및 장비 주차 구역(일반적인 청결 및 주차 규칙에 대해 점검)                      마. 설치된 경우, 비상전화의 작동 여부</p>

[별표 18]이동지역 작업(WIP)(제72조 관련)

1. 이동지역에서는 공사 및 유지보수 작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항공기 운항이 현장 주변에서 계속되거나 이동지역을 통한 진입이 필요한 경우, 공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WIP)에는 작업장 및 작업자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공항운영자는 계획된 주요 작업이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진행 중인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작업과 연관된 효과적인 안전관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조정된 시기적절하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4. 작업 시작 전, 운영 변경사항을 적시에 통지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내에서 작업이 진행 중일 때 공항 운영 안전관리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6. 작업 안전관리 절차는 다음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 가. 작업에 대한 허가
  - 나. 운영 시설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이행
  - 다. 시설이 정상 운영에서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날짜와 시간
  - 라. 변경사항이 공표되는 방법
  - 마.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
  - 바. 관련된 모든 이동지역 안전 규칙의 준수
7. 작업 중에 공항 운영 안전관리 절차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작업 계획 절차
  - 나. 운영 또는 시스템의 계획된 변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
  - 다. 작업 허가 절차
  - 라. 작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절차
  - 마. 작업장 설치 및 항공기 운항 복귀 절차
  - 바. 작업의 모니터링, 감독 및 제어를 위한 절차
8. 작업 계획 절차는 공항 운영의 안전, 용량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역 작업의 계획 및 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절차 계획 시 제안된 작업 중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건을 고려하도록 공항 운영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항공교통업무기관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9. 공항운영자는 계획된 작업에 대한 안전평가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대한 위험을 이해 당사자와 협력하여 식별하여야 하여야 한다. 안전평가는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완화조치를 포함하여 사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10. 작업 과정, 절차, 조치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은 작업과 관련되거나 운영 변경사항의 영향을 받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되어야 한다.
11. 시행하기 전에, 운영절차 초안, 지침 또는 공표될 기타 정보는 이해관계자와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안된 방식에 대한 실제 점검은 작업의 운영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담당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2. 작업으로 인하여 활주로 길이 감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가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 작업 시작 전,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공항운영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승인 문서는 특정 허가 및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항운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된 문서이어야 한다. 이 문서는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제한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14.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지정할 때와 작업기간 동안에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도로, 계류장, 대기지역 일부분이 항공기 이동에 적합하지 않지만 해당지역을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불가 표지판을 표시  
나. 작업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표지는 가리거나 경로를 폐쇄
  - 다. 야간이나 저시정 시에는 사용 불가를 나타내는 등화가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지역 내 항공등화는 끄거나 가려야 함
  - 라. 제트 분사와 FOD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내에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
  - 마. 작업장 주변은 특히 야간 또는 시정이 저하된 동안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조명되어야 함
15. 작업장 개시 전 현장 회의를 열어 안전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작업자와 운영자 간 잠재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이동지역 작업과 관련된 안전 의식
  - 나.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요건
  - 다. 보안 요건

- 라. 제트 분사 및 소음을 포함하는 공항 위험요소로부터의 작업자 보호
  - 마. 화재, 유출, 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상 대응자를 신속히 호출하는 절차
  - 바. 작업자와 공항운영자 간 상호 작용을 위한 운영 브리핑(예 : 사용중인 활주로, 예상 가시성 조건, 기상 조건, 안전문제)
16. 지속적인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항 및 작업장에 근접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9] 활주로 길이 축소 운영 및 작업장 통제 절차(제72조 관련)**

1. 활주로 길이 축소 운영

가. 작업으로 인해 활주로 길이가 지정된 거리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활주로 길이 감소 운영 전, 중 그리고 중단 시 또는 작업 진행 중에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여야 한다.
- (2) 필요한 경우, 변경된 착륙대, 활주로 중단안전구역, 접근 및 이륙 상승 표면과 같은 장애물 제한표면을 계산하고 설정하여야 한다.
- (3) 사용중인 활주로의와 작업 중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활주로 사이에 안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4)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정된 감소된 활주로 거리의 세부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항공고시보를 통해 발행하고 가능하다면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TIS)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실행 가능할 경우, 실행 전 절차의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6) 가용 활주로거리 감소 및 작업과 관련된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7) 안전구역과 작업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표시와 등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 (8) 항공기 출입이 금지되고 작업 관련자가 사용하는 이동지역에 명확한 표시, 조명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항공, 공항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자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 주변에서의 이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10) RFF 및 비상 업무의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다루어야 한다.
- (11) 관련된 모든 운영 정보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적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는 활주로(필요한 경우 기타 이동지역) 및 작업의 개방 또는 폐쇄를 조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항공기 운항이 운영절차(긴급한 안전 특성제외)에서 벗어난 경우, 공항운영자와 조정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근접한 공항과 항공기 운항 안전 모니터링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할 때 적시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공

항운영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운영상의 변화 또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때 특히 중요하다.

## 2. 작업장 통제절차

가. 이동지역 작업에 대한 통제와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1) 모든 계약된 운전자는 자격을 갖춘 차량 운영자의 호위를 받거나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훈련 및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2) 차량 교통량에 따라 기존의 도로배치를 변경하여야 할 수도 있다.
- (3) 직원의 진입 경로는 사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진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작업 수행 시간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5) 작업 시작 전에 전선 또는 배관이 손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6) 금연구역임을 공지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 (7) 집중 작업 제한(hot work restrictions)이 설명되어야 하고, 이행 및 감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집중 작업 제한 허가를 포함할 수 있음)
- (8) 작업에 적합한 훈련과 함께 감시 장치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항공교통업무기관 주파수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
- (9)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등화가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 높이가 보호표면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 (10) 건설 작업이 어두운 곳이나 저시정 조건에서 진행되는 경우, 작업 장소의 위치와 필요성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1) 필요한 경우, 유도로 횡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12) 모든 계약자는 모든 우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FOD, 소음 및 분진 제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3)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이동지역에 진흙이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14) 위험기상 조건(예 : 낙뢰, 강풍, 눈) 또는 항공기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경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작업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 (15) 작업장 투광 조명(조명 방향, 높이)이 항공기 운항 및 관제업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고객 서비스 및 시설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이 너무 많은 주기장 또는 운항 구역을 한꺼번에 제한하지 않도록 일정계획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다. 표지 또는 등화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라. 교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교대조가 적절하고 완전하게 보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마. 공항운영자는 계약자가 정상 근무 시간 외에도 연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0] 지장물(FOD) 관리(제30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이동지역에 FOD가 있을 경우, 항공기 운항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FOD는 비행의 중요 단계에서 항공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인명 및 기체의 손실과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FOD 위험은 FOD 예방, 감지, 제거 및 평가를 포함하는 FOD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 나. 이동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직원은 FOD 예방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FOD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동지역에 진입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초기 교육훈련 중 일부이다.
- 다. 이동지역의 FOD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FOD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라. FOD는 특히 점검 및 유지보수 담당자, 지상 조업자와 같이 이동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직원이 FOD를 잠재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 마. 공항운영자는 지역 운영 조건에 적합하고 평가된 위험에 상응하는 FOD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예방, 감지, 제거 및 평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 바. FOD 예방은 FOD 인식과 교육훈련도 포함되어야 한다.
- 사. FOD 탐지는 이동지역 모니터링 및 점검을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 이동지역에서 FOD를 제거, 방지 및 폐기하기 위해 적용되는 운영 절차와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자. FOD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정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출처와 추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FOD 인식

- 가.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FOD 관리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 직원은 잠재적 FOD 위험을 확인하고, 관측된 FOD를 제거하며, 안전위험을 완화하는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 나.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FOD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다. FOD 관리 프로그램은 이동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공항운영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FOD 발생상황의 결정 및 수집된 FOD 데이터의 평가를 포함하여 FOD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FOD 위원회 설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상조업자,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계약자 대표 등과 같이 FOD를 발생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 3. FOD 교육훈련

- 가. FOD 교육훈련의 주요 목적은 FOD로 인한 손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업무 수행 중 FOD를 제거하는 데 있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 나. FOD 교육훈련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FOD와 관련된 항공기, 직원, 승객의 안전
  - (2) 공항에서 시행 중인 FOD 관리 프로그램의 개요
  - (3) FOD의 원인과 주요 기여요인
  - (4) FOD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 및 FOD 예방의 이점
  - (5) 청소 습관과 작업 구역의 일반적 청결 및 점검 기준
  - (6) 적절한 탐지기술 사용을 포함한 FOD 탐지 절차(해당되는 경우)
  - (7) 이동지역 정기점검 및 청소를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
  - (8) FOD 제거 절차
  - (9) 유지보수 중 또는 공항 표면 위 항공기 주변에서 사용되는 재료, 구성품 또는 장비의 적절한 관리, 사용 및 보관
  - (10) 작업 수행 시 FOD 관리(예 : 수하물, 등화 장비 및 건설 자재와 관련된 품목)
  - (11) 개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관리
  - (12) 도구 및 장비의 적절한 통제·책임 및 관리
  - (13) FOD 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를 보고하는 방법
  - (14) 잠재적 FOD 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4. FOD 예방 방법

확인된 안전위험에 상응하는 FOD 발생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예방조치는 공항의 FOD 관리 프로그램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 5. FOD 탐지

- 가. FOD 탐지 절차에는 FOD를 적시에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출처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나. FOD 탐지는 점검 체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 다. 항공기 주기장 점검은 존재하는 FOD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 출·도착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 라. 공항운영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력하여 FOD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마. 공항운영자는 탐지된 FOD를 제거하기 위해 공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이 식별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 모든 유형의 FOD가 활주로 폐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모든 상황에서 FOD가 야기하는 안전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공항운영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아. 활주로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FOD 탐지기술을 사용할 경우 물체가 탐지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FOD의 위치나 특성이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일정이 가능한대로 즉시 물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FOD의 위치 또는 특성이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FOD 관리 프로그램은 위험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활주로 운영이 일시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FOD 제거

- 가. 탐지된 FOD는 실행 가능한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 나. FOD 관리 프로그램은 운항에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탐지된 FOD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FOD의 제거는 공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 7. FOD 평가

가. 공항에서 식별되고 수집된 모든 FOD는 기록, 분석 및 평가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FOD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공항에서 FOD를 발생시키는 활동과 위치를 포함하여 FOD의 출처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FOD 관리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과 FOD 동향 및 문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다. FOD 관리 프로그램은 공항에서 수집된 FOD 평가를 통해 식별된 데이터와 동향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되어야 한다.

[별표 21] 야생동물 위험관리(제145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공항 주변과 내부에 야생동물(새 및 기타 동물)이 있으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적극적인 점검, 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
- 나.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Wildlife Hazard Management Program, WHMP)은 야생동물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운영자가 합리적인 야생동물 위험 통제 조치로 채택하는 방법이다.
- 다. 공항 주변의 토지는 가능한 한 야생동물을 끌어들이는 서식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라. 공항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안전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현지 환경에 맞추어 구축되어야 하며 야생동물 안전 위험평가에 상응하여야 한다.
- 바.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에는 공항의 야생동물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야생동물 위험 감소 조치 및 절차는 공항운영자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에 통합되어야 한다.

2.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WHMP)

- 가.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효과적인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및 실증해야 하며, 확인된 야생동물 위험과 위험평가를 고려하여 공항의 크기와 복잡성 수준, 항공기 이동 수와 종류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나.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조직, 역할, 업무에 대한 설명
  - (2) 야생동물 충돌과 관측된 야생동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보고, 기록을 위한 절차
  - (3) 연간 검토를 포함한 야생동물 안전 위험 평가방법 및 절차
  - (4) 서식지 및 토지 관리를 위한 절차, 수단 및 담당자
  - (5) 야생동물의 퇴출 및 억제를 위한 절차, 수단 및 담당자
  - (6)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절차
  - (7) 직원 훈련을 위한 절차, 수단 및 규정

3.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역할 및 과제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역할과 업무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나.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일상 활동 감독  
다. 위험한 야생동물 퇴출 및 억제

라. 관련된 경우, 야생동물이 좋아할 만한 요소의 제거

4. 야생동물 충돌과 관측된 야생동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보고 및 기록

가. 효과적인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야생동물 충돌과 야생동물 관측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공항과 그 주변의 위험을 식별하고 현존하는 야생동물 충돌 방지 방법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된다.

나. 공항운영자는 공항 및 그 인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의 충돌을 공항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록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공항운영자의 보고 절차에는 모든 관련된 제3자와 공항 직원이 야생동물 충돌, 공항 점검 중 발견한 야생동물 사체 및 기타 위험원을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사고 보고서를 포함한 야생동물 활동은 야생동물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일지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람의 성명
- (2) 관측 날짜 및 시간
- (3) 관측된 야생동물의 위치, 종 및 수
- (4) 현재의 야생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취한 사전 예방적 및 사후 대응적 조치와 그 결과
- (5) 기상 및 조명 상태

마. 기록 일지는 야생동물 행동 및 기타 관련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동 횟수와 활주로가 사용되는 횟수에 비례하는 간격으로 권한을 가진 통제 직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야생동물이 언제 어떤 기상조건에서 위험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공항운영자는 충돌한 야생동물의 종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공항 내 각 야생동물의 종들이 항공기 운항에 나타내는 안전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정확한 야생동물 관측과 충돌 통계는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개선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 야생동물 안전 위험평가

가. 공항운영자는 야생동물 상황에 대한 특정 안전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야생동물 관리조치를 하며,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평가된 위험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의 야생동물 안전 위험평가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항 전체뿐 아니라 공항 주변을 포함하는 안전 위험평가 구역을 정의
- (2) 각 야생동물 종의 존재 정보, 개체 수, 생물학 보고서에 따른 충돌 데이터를 사용하여 충돌 확률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데이터와 확률을 갱신
- (3) 충돌로 발생하는 손상의 심각성을 각 야생동물 종에 대해서 평가
- (4) 각 야생동물 종에 대한 위험을 결정
- (5) 각 야생동물 위험의 원인(유인 요소, 이동 경로)을 파악

다. 공항운영자는 가장 빈번하고 피해 정도가 큰 야생동물 종에 대해 관리 조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6. 서식지 및 토지 이용 관리

가.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한 서식지 및 토지 이용 관리는 적절한 조치로 공항에 야생동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공항운영자는 공항 주변의 지정된 반경 내에 야생동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이동지역과 접근 및 출발 경로에 가까운 장소를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반경(즉, 공항 주변)은 공항 기준점 주위로 13km가 되어야 하며, 공항 주변의 야생동물 평가에 따라 반경이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다. 공항운영자는 야생동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항 및 그 주변에 대한 특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와 존재하는 위험한 야생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해당 영역에 대한 물리적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라. 공항 개발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끌어들이지 않고 건설 중에 동물들이 선호할 만한 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위험한 야생동물이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야생동물 위험 통제가 건설 및 복원 단계 중 이루어져야 하며, 야생동물 위험관리 통제는 승인 과정의 일부로 시행

되어야 한다.

- 마. 적절한 높이, 강도 및 구조의 울타리는 새를 제외한 위험한 야생동물이 공항 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된 방법이다. 울타리와 출입구는 닫혀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울타리는 굴을 파는 동물들이 공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에 적합해야 한다.
- 바. 위험한 야생동물에게 먹이가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공항 환경관리를 통해 동물들이 이용 가능한 먹이 공급원을 방지하여야 한다.
- 사. 초목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끌어들이지 않는 높이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항의 식물이 야생동물의 활동을 도와서는 안 된다.
- 아. 농업 작물 및 관련 활동(쟁기질, 씨뿌리기)이 위험한 야생동물에 식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작물은 공항 환경에서 제거해야 한다.
- 자. 움푹 들어간 곳, 열린 배수로, 연못 및 호수와 같은 수역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배수와 매설된 배수관으로 교체, 야생동물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그물망 및 울타리 설치와 측면을 가파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완화조치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

7. 야생동물 퇴출 및 억제

- 가. 야생동물 퇴출 및 억제방법은 공항과 그 주변의 야생동물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1) 야생동물 순찰
  - (2) 조난 및 경보 호출 시뮬레이터, 특정 신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울음 소리와 같은 음향 효과
  - (3) 중장거리 카트리지 및 그와 같은 폭약류
  - (4) 레이저 장치, 깃발 및 스트리머, 조명, 포식자 모델, 갈매기 모델, 매, 연, 풍선과 같은 광학 및 시각적 구조물
  - (5) 총기, 화학 방충제, 살상 화학 물질, 훈련된 포식자(개 또는 매), 가스 대포, 덫 및 이주 방법과 같은 기타 기법
- 나. 야생동물 통제 담당자는 야생동물의 종, 현존하는 수, 통제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적절한 야생동물 억제, 분산 또는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거나 간단한 통지를 통해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전 예방조치가 시행된 후에도 위험한 야생동물이 여전히 공항에 유인되는 경우, 그들을 포획하거나 살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

- 라. 야생동물 위험관리의 어려움은 일부 야생동물들이 특정 예방기법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자가 사용 중인 통제 및 분산 조치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공항 운영자는 기존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야생동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법이나 새로운 효과적인 방법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마.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공항 인근 활주로와 접근 및 출발 경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이동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바. 모든 장치와 방법은 국가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예 : 총기, 환경 및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 준수)

8.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 가. 효과적인 야생동물 위험관리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다.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외에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자문해야 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에는 교통공무원(정부 포함), 공항 직원,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기운영자 대표(조종사 포함), 자연 보호단체(정부 및 비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항 주변 토지 관리 및 지역 계획, 개발 승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 나.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에는 공항에 있는 이해관계자(해당되는 경우 항공기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지상 조업자 포함)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야생동물 관찰 및 충돌에 대해 수집, 보고, 기록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관리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야생동물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항행서비스제공자(ANSP)가 공항 및 인근 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적절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라. 공항의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에는 공항운영자가 추가적인 야생동물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항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초목, 토지 이용 및 활동(예 : 작물 수확, 파종, 쟁기질, 토지 또는 수역 조성, 사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공항 기관, 지역 토지 소유자,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연락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바. 공항운영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 주변 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공항운영자는 다른 공항과의 야생동물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적인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9. 직원 교육훈련

가.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통제에 관련된 인력의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구 분	교육훈련 내용
초기 교육 훈련	가. 항공 야생동물 위험의 성격과 범위 및 지역 위험 식별에 대한 이해 나. 공항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 규정, 표준 및 지침 자료에 대한 이해(모범사례 이용) 다. 지역 야생동물 생태학과 생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 라. 현장 설명서의 이용을 포함한 정확한 야생동물 식별 및 관찰의 중요성 마. 보호종 및 특수 관심종과 관련된 지역 및 국가 법률 및 규정, 이와 관련된 공항운영자의 정책 바. 야생동물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고위험종 사. 야생동물 충돌 잔해 수거 절차, 식별 및 보고 아. 잘 확립된 효과적인 야생동물 제거, 분산, 탐지 및 통제 기법을 사용한 능동적/전략적 조치 자. 야생동물 활동, 통제 조치, 보고 절차의 문서화(공항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 차. 개인 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공항에서의 총기, 드론 및 기타 장비 및 사용
정기 교육 훈련	가. 초기교육훈련에서 엄선된 일반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수행 나. 지역 환경의 변화 다. 최근의 공항에서의 야생동물 사건 라. 능동적, 수동적 조치의 변화 마. 기타 공항운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일반적인 교육훈련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구 분	교육훈련 내용
<p>개요 (이론 교육훈련)</p>	<p>가. 공항 개요 나. 공항 인증 다. 공항 절차 라. 국제 규정 마. 국가 규정 바. 환경 규제 사. 공항 안전관리 시스템 아. 정보의 발표 자. 보건 및 안전 개요 차. 사고 보고 및 조사</p>
<p>친숙화 (실습 교육훈련)</p>	<p>가. 모든 공항 운영 절차 및 표준 일반지역 개요 나. 일반구역 개요 다. 이동지역 안전 라. 이동지역 보안 마. 계류장 내 운전 바. 무선통신 사. 활주로 침범 교육훈련 아. 항행안전시설 보호 자. 저시정/시정감소 프로그램 차. 현장실습 카. 반복적 재교육훈련 타. 친숙화 프로그램</p>
<p>전문화 (특정 야생동물 교육훈련)</p>	<p>가. 야생동물 프로그램의 상세한 이론적 측면 나. 서식지/야생동물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한 통합적 접근 다.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요소 라. 친숙화 프로그램 마. 모든 장비에 대한 장비 교육훈련 및 사용 절차 사. 지정된 현장실습 아. 반복적 재교육훈련 자. 특정 기록 보관에 관한 관리 프로그램 차. 현장 내부/외부 프로그램</p>

- 나. 야생동물 통제 인력의 교육훈련은 숙련된 야생동물 통제 인력 또는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입증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다. 야생동물 통제 담당자는 공항 운영, 공항 환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1)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훈련, 공항 친숙화, 항공교통관제통신(RTF), 표지판 및 표지, 항법 보조시설, 공항 운영 및 안전,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 (2) 항공기 식별 및 야생동물 충돌이 항공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항공기 친숙화

10. 야생동물 사고보고 기준

공항운영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야생동물 충돌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보고 양식(종이 또는 전자 형식)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야생동물 사고보고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가. 관련된 운영자 나. 항공기 제조사/모델 다. 엔진 제조사/모델 라. 항공기 등록번호 마. 날짜(dd/mm/yy) 바. 현지 시각 사. 새벽/낮/저녁/밤 아. 공항 명칭 자. 사용된 활주로 차. 항로 상인 경우, 그 위치 카. 피트 단위 지상고도(AGL) 타. 노트 단위 지시속도(IAS) 파. 비행 단계 하. 부딪히거나 손상된 항공기 부품	거. 비행에 미친 영향 너. 운량 더. 강수현상 러. 야생동물의 종 머. 야생동물의 수 버. 야생동물 크기(소/중/대형) 서. 야생동물에 대한 조종사의 경고(O/X) 어. 기타(손상, 부상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 저. 보고자/보고기관 처. 관할 기관에 양식을 반환하기 위한 주소 또는 지침 커. 깃털과 같은 야생동물 흔적이 있는 장소의 국가 내 주소

[별표 22] 계류장 안전(제57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계류장 안전의 보장은 주로 공항운영자의 책임이지만,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제3자 역시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 나. 계류장 위험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일부로 완화조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직원은 계류장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인솔자 없이 계류장에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안전 기초교육훈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 교육훈련에는 계류장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공항 운영절차가 포함된다.
- 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류장 운영을 위해 공항운영자, 항공기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기타 제3자 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계류장 관리의 운영 안전 및 효율성은 이러한 협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 라.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사용자와 적절하게 협력하여 계류장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완화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마.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공기 주기장 배정
  - (2) 항공기 유도 업무
  - (3) 항공기 유도 차량(follow-me car)
  - (4) 엔진 후류 예방
  - (5) 계류장 청소
  - (6) 항공기 후방 견인(push back)
  - (7) 탑승교 운영
  - (8) 차량 이동
  - (9) 계류장 규칙
  - (10) 정보의 배포
- 바.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안전 성능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보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사. 공항운영자는 특정 국지적 절차를 포함하여 계류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를 계류장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주기장 배정

- 가. 항공기 주기장 배정의 핵심 요소는 항공기, 장비 및 건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나. 주기장 배정 규칙은 주기장이 어떤 항공기 유형 또는 그룹에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측면에서 항공기가 필요로 하는 여유 공간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주기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유도 업무

- 가.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안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항공기 유도 업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시적 안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도 업무가 필요할 수 있다.
- 나. 항공기 유도원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사용될 주기장에 고정 또는 이동 장애물을 제거
  - (2) 항공기 유도 중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
- 다. 항공기 유도 인력은 다른 계류장 직원과 쉽게 구별되도록 눈에 잘 띄는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4. 항공기 유도 차량

- 가. 공항운영자는 요청이 있을 시 항공기 유도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또는 저시정 상황에서 운항할 때와 더욱 관련이 있다.
- 나. 항공기 유도 차량은 뚜렷한 표시 또는 색상으로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5. 엔진 후류 방지

- 가. 공항운영자는 모든 계류장 사용자가 제트 분사 및 프로펠러 후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차량과 구동되는 장비는 적절히 제동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트 분사 또는 프로펠러 후류에 노출될 때 이동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장비를 고정해야 하며, 가능한 제트 분사 위험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하여야 한다. 측면 면적이 넓은 계류장 장비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외부 이물질(FOD)은 제트 분사로 인해 이동되어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계류장은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 라. 계류장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항공기운영

자나 지상 조업자에게 있으며, 관련 절차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안전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계류장을 사용하는 모든 직원은 제트 분사, 프로펠러 후류로 인한 계류장 내 승객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계류장 배치를 설계하거나 변경할 때, 제트 분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트 분사 보호 울타리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계류장 청소

가. 공항운영자는 오일, 그리스 및 고무 자국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공기 주기장 및 인접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유출은 연료, 오일, 유압 오일, 물, 화장실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러한 유출을 억제, 제거 및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항공기 후방 견인(push back)

가.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후방 견인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절차를 수립하거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진행 중인 후방 견인 항공기 또는 지상이동 준비가 된 항공기 및 계류장 내의 다른 이동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할 것
- (2) 후방 견인 이전에 항공기 뒤편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 (3) 후방 견인 이후에 항공기 분사(Break-away blast)가 주기 중이거나 지상 이동 중인 항공기, 계류장 내 차량 또는 사람 및 건물에 집중되지 않도록 위치하였는지 확인할 것

나. 경우에 따라 항공기운영자는 항공기 주기장으로부터 엔진시동 후방 견인(Power-back)을 요청할 수 있다. 엔진시동 후방 견인(Power-back)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절차 승인 전에 안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평가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트분사 또는 프로펠러 후류
- (2) 표면 상태
- (3) 소음 수준
- (4) 엔진시동 후방 견인(Power-back) 수행 알림을 위한 다른 계류장 사용자와의 통신(특히 주기장 도로 뒤편이 있는 경우)

- (5) 기동 공간
- (6) 다른 이동물체와의 충돌
- (7) 보행자, 건물, 차량, 이동 장비 및 기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8. 탑승교 운영

- 가. 탑승교 이동에 사용되는 구역은 차량 또는 장비가 없어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운영자는 탑승교를 이동시키기 전 육안 점검(카메라, 거울 또는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실시하여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사용하지 않는 탑승교는 휠베이스와 함께 지정된 위치에 주기하여야 한다.

9. 차량 이동

-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류장 내의 차량 이동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운전 규칙의 수립 및 시행, 규칙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
  - 나. 적절한 차량 주행 경로의 설정 및 적절한 표지판, 표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

10. 계류장 규칙

- 가. 공항운영자는 자체 수단 또는 다른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계류장 내 활동을 감시하고, 정해진 규칙에 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나. 공항운영자가 아닌 계류장 규칙을 감시하도록 지정된 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발견된 규칙 위반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안전 규칙 위반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 조치를 수립하거나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정보의 배포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운항 제한사항에 대해 적시에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운항 제한의 종류
- (2) 알려진 경우, 운항 제한의 기간
- (3) 적용할 완화 조치
- (4) 운항 제한의 운영상 영향

- (5) 항공기 주기장 가용성
- (6) 항공기 주기장 제한사항
- (7) 항공기 주기장 고정설비 가용성
- (8) 특수 주기 절차
- (9) 주행 경로의 일시적 변경
- (10) 진행 중인 작업
- (11) 계류장 사용자에게 운영상 중요한 기타 정보

[별표 23]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ADP) 기준(제53조 관련)

1. 보호구역 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조

보호구역 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보호구역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핵심이다. 보호구역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직원의 역량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보호구역 도로 및 계류장(보호구역 운전자 허가(ADP))

구분	내용
<p><b>보호구역 운전자 허가 (ADP)</b></p>	<p>가. 발행기관(일반적으로 공항 운영자), 유효기간, 사용조건, 허가의 양도불가, 허가발급의 통제 및 감사                      나. 현지 시행 및 주행 위반 절차                      다. 국가 운전 면허 시스템과의 관계</p>
<p><b>국가 법률 및 규정</b></p>	<p>가. 일반 차량 운전 면허와 관련된 정부/국가 규정                      나. 국가/지방 정부 요구사항                      다. 보호구역 주행을 위한 규제요건/지침                      라. 지역 단체의 규칙/절차</p>
<p><b>공항 규정 및 요건</b></p>	<p>가. 항공교통관제 규칙, 항공기 통행자격                      나. 특정 공항 규정, 요건 및 현지 지침                      다.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정보 및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지의 방법                      라. 진행 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지의 방법</p>
<p><b>공항 지형</b></p>	<p>가. 현지 공항의 일반적인 지리                      나. 표면 표지 및 표지판(차량, 항공기 모두 해당)                      다. 제한 속도                      라. 유도로, 계류장, 도로, 교차지점 등에 사용되는 항공 용어                      마. 주차 구역 및 제한 사항, 핫스팟 및 지역 요건</p>
<p><b>개인 책임</b></p>	<p>가. 사고 보고                      나. 국가 요건에 맞는 운전 적합성(의료/보건 표준)                      다. 눈에 잘 띄는 의류, 청각 보호 등 개인 보호장비의 사용                      라. 일반 운전 표준                      마. 보호구역 내 금연                      바. FOD 및 연료/오일/제방방 물질의 누출에 대한 책임                      사. 차량이 작업에 적합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데 대한 확인 책임                      아. 약물 및 알코올 정책 준수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차. 차량에 안전벨트가 구비된 경우, 안전벨트 착용</p>
<p><b>차량 안전 표준</b></p>	<p>가. 공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합의된 상태 및 유지보수 표준                      나. 장애물 표시등 및 소속 표시 요건                      다. 일일 차량 점검의 요건 및 내용                      라. 합의된 공항 및 회사 차량 고장 보고 및 수리 표준                      라. 보호구역 차량 허가(Airside Vehicle Permits. AVPs)의 발급 및 표시에 대한 지역 요건</p>

구분	내용
<p><b>보호구역 교통 규칙</b></p>	<p>가. 일반 규칙 나. 현지 규칙 다. 저시정 상태에서의 주행을 위한 규칙 라. 제한속도, 금지구역, 주차 금지 규정 마. 후진 절차</p>
<p><b>위험 및 안전 관련 문제</b></p>	<p>가. 항공기 이동 나. 유도로 교차지점 다. 항공기 주변 위험 구역 라. 엔진 흡입 및 후류, 프로펠러 및 헬리콥터 마. 항공기 재급유 바. FOD 및 누출 사. 차량 후진 아. 계류장 횡단 직원 및 승객 자. 탑승교 및 지상 고정 전력 등 기타 업무 카. 일반 항공기 순환 절차 타. 항공기 비상정지 및 연료 차단 절차 파. 위험 화물 하. 지역 차량 견인 요건 거. 야간 운전 너. 특수 차량 더. 저시정 절차 러. 적재 보안 머. 호송 절차 및 보고</p>
<p><b>역할</b></p>	<p>가. 규제 기관 나. 현지의 법 집행 기관 다. 공항 운영자 라. 현지의 항공교통업무기관</p>
<p><b>보안 절차</b></p>	<p>가. 개인 요건(신분증) 및 예외사항(해당되는 경우) 나. 차량 보안 허가 다. 보안제한구역 라. 보안상 중요한 구역</p>
<p><b>비상 절차</b></p>	<p>가. 차량사고 발생 시 조치 나. 차량이 항공기와 충돌한 경우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다. 화재 발생 시 조치 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조치 마. FOD 바. 보고 절차 사. 의무적인 사고 보고 아. 현지의 비상 전화번호</p>
<p><b>미준수시의 벌칙</b></p>	<p>가. 일반 벌칙 나. 현지 벌칙</p>
<p><b>실습 교육훈련 (시각적 친숙화)</b></p>	<p>가. 저시정 시 보호구역 업무 도로, 유도로 교차지점 및 모든 제한사항, 표준 유도로 사용 나. 계류장 및 주기장 다. 차량, 항공기를 위한 표면 표지 라. 계류장과 유도로 경계를 나타내는 표면 표지 마. 전방의 활주로를 나타내는 유도로상의 표지판, 표지 및 등화 바. 주차 구역 및 제한사항 사. 제한속도 및 규정 아. 항공기 순환 및 이동 중의 위험</p>

나. 기동지역(보호구역 운전자 허가(ADP))

구 분	내 용
<p><b>항공 교통 업무</b></p>	<p>가. 공항 통제 기능 및 책임 범위                      나. 지상이동 통제 기능 및 책임 범위                      다.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정상 및 비상절차                      라. 차량을 위한 항공교통업무기관 주파수 및 정상 이양지점                      마. 항공교통업무기관 호출부호, 차량 호출부호, 음성 문자, 표준어구                      바. 해당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계류장 관제소 간의 책임 구분</p>
<p><b>공항 지형</b></p>	<p>가. 기동지역에 사용되는 ICAO 표준 표지, 표지판 및 등화의 강조                      나.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 표지판 및 등화의 특별한 강조                      다. 비시각적 항법 보조 장치에 사용되는 장비, 즉 ILS에 대한 설명                      라. 비시각적 항법 보조 장치와 관련된 보호 구역에 대한 설명                      마. ILS 보호구역 및 활주로 대기지점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바. 계기/비계기 착륙대, 정지구역에 대한 설명</p>
<p><b>기동지역 주행과 관련된 위험 및 안전 관련 문제</b></p>	<p>가. 엔진 흡입 및 후류, 와류, 프로펠러 및 헬리콥터 운항                      나. 기동지역 내 차량 및 무선통신 두절 절차                      다. 비상 시 항공기, 견인 항공기 및 RFFS 차량의 통행자격                      라. 활주로 침범                      마.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를 비우는 절차 및 활주로 대기지점, 보호 구역 및 착륙대와 같은 활주로 및 유도로 안전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절차</p>
<p><b>비상 절차</b></p>	<p>가.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FOD가 발견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나. 길을 잃거나 위치가 불확실한 경우 운전자가 사용해야 하는 절차                      다. 현지의 비상 전화번호</p>
<p><b>항공기 친숙화</b></p>	<p>가. 항공기 종류에 대한 지식 및 공항에서 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 종류를 구분하는 능력                      나. 항공기운영자 호출부호에 대한 지식                      다. 엔진, 동체, 조종면, 착륙장치, 등화, 환기구, 헬리콥터 등에 관한 항공기 용어에 대한 지식</p>
<p><b>실습 교육훈련</b></p>	<p>가. 모든 활주로(진출입로 포함), 대기 구역, 유도로 및 계류장                      나. 활주로, 대기 지점, CAT-I/II/III 운항과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다. 유도로와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라.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 항공기 주변 운행의 위험                      마. 위험상황의 식별 및 완화 조치의 평가                      바. ILS 보호구역, 안테나, RVR 장비 및 기타 기상 장비와 같은 항법 보조시설                      사.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표준 지상이동 경로에 대한 지식                      아. 특정 지역 또는 경로에 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명명 규칙                      자.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며 활주로 및 유도로를 비우기 위한 현지 절차</p>

다. 무선통신

구 분	내 용
메시지 우선 순위	메시지 우선 순위, 조난 이해, 경보, 통제 및 정보 메시지
음성 문자	가. 글자, 단어, 숫자의 정확한 발음 나. 운전자의 조종사와 유사한 표준 어구 사용 강조
항공기, 항공교통업무 기관 및 차량 호출부호	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조종사가 사용하는 용어 및 약어 이해 나. 공항에서 사용되는 항공기운영자 호출부호 지식
허가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가. 차량 운전자는 조종사와 같은 방법으로 “활주로 진입/횡단”과 조건부 허가와 같은 지시에 대하여 표준 복창
차량 고장 절차	가.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의 차량 고장에 대한 현지 절차 나. 차량 고장을 항행서비스제공자(ANSP)에게 알리는 절차
무선통신 실패 절차	가.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무선통신 실패 시에 사용되는 현지 절차 이해 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차량에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빛 신호의 이해
통신 기법	가. 통신 전 청취 이유 파악 나. 항공 영어 사용 다. 피해야 할 단어 및 소리 라. 왜곡 방지를 위한 마이크로폰의 올바른 위치 지정 마. “생략된” 전송 금지 사. 지역 억양과 말투의 변화에 대한 인식 아. 무선통신(RTF) 문구 전달 속도
무전기	가. 무전기의 올바른 사용 나. 유효 범위 및 배터리 수명 다. 공항에 대한 선별/차폐 효과 라. 차량 또는 개인과 관련된 올바른 호출부호의 사용
법률 요건	가. 차량 운전 중 무전기 및 휴대용 마이크로폰 사용에 관한 현지 지침 나. 보호구역 내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현지 지침

2. 보호구역 도로 및 계류장 ADP 발급 요건

가. ADP 발급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공항 운영을 허가받은 기관에 고용되어야 할 것
- (2)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국가 운전면허 또는 동등한 외국의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 (3)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운용 요건을 보유할 것

- (4) 국가와 동등한 표준에 맞는 운전하기 위한 신체조건을 갖출 것
- (5) 요구되는 운전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 (6) 공항 내 보호구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공항운영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허가 발급 목적이 중단된 경우
- (2) 허가 소지자의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 (3) 국가 도로교통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
- (4) 허가증의 훼손, 변형 또는 오용
- (5) 공항 교통 규칙 무시
- (6) 세관, 출입국관리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다. 갱신 요건

- (1) 보호구역 도로와 계류장 허가는 최대 5년간 유효하다. 갱신을 위해서는 허가 소지자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운전자가 필요한 국가 운전면허 또는 동등한 외국의 운전면허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보호구역 도로 및 계류장 허가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가 감사를 위해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의사소통 능력

- (1) 고용주는 운전자가 공항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역량 평가 및 지정된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공항의 보호구역 운영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에 능숙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능숙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필요한 운전자 교육훈련 및 친숙화 이수 능력
  - (나) 보호구역 운전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운영 통신 요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예: 보호구역 내 사고 보고)
  - (다) 관련된 지역 안전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예: 정보 및 의무 공항 표지판)
  - (라) 경찰 또는 공항 운영직원이 제공한 구두 지시 또는 통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3. 기동지역 ADP 발급 요건

가. 기동지역 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활주로 제외
  - (가) 계류장 및 이동지역 도로 허가에 따른 무선통신 역량 입증
  - (나) 기동지역 진입 필요성
- (2) 활주로 포함
  - (가) 활주로를 제외한 기동지역 허가
  - (나) 활주로 진입 필요성

나. 공항운영자는 운전자가 ADP를 갱신하기 전 국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 점검은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1) 활주로 제외
  - (가) 기간 : 최대 5년
  - (나) 갱신 : 역량을 유지할 것. (역량 유지 제도나 재교육훈련을 통해 확인 및 평가)
- (2) 활주로 포함
  - (가) 기간 : 최대 3년
  - (나) 갱신 : 역량을 유지할 것. (역량 유지 제도나 재교육훈련을 통해 확인 및 평가)

#### 4. 역량 유지

가. 공항운영자는 운전자가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운전 규칙, 의무 및 절차에 대한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운전자 역량 유지 관련하여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교육훈련 및 평가에 대한 효과와 역량 유지에 대한 평가 및 기록 보관을 위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 영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후방 견인 절차
- (2) 견인(계류장 및 기동지역 내)
- (3) 활주로 진입
- (4) 무선통신
- (5) 공항 지형
- (6) 일반적 이동지역 주행
- (7) 차량 점검
- (8) 지식 점검

#### 5. 무선통신

가. 기동지역 내 차량 이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의 복잡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많은 무선 주파수를 운영할 수 있다. 공항 지상 관제사는 유도로에서 이동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중 관제사는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횡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기동지역 내의 적극적 통제가 필요한 모든 차량에는 적절한 주파수에 맞춰진 무선통신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무선통신 용어 사용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 다. 공항운영자는 차량과 항공기 간의 혼선 가능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량이 사용할 무선통신 호출부호를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라. 항행서비스제공자(ANSP)는 공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선 호출 신호를 인식하여야 한다.

6.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 기록

가.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와 관련된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식별 번호
- (2) 이름
- (3) 생년월일
- (4) 고용주
- (5) 교육훈련기관명
- (6) 강사명
- (7) 교육훈련 완료일자
- (8) 유효날짜
- (9) 평가 결과
- (10) 갱신 일자
- (11) 위반 통지
- (12) 보유 허가 유형
- (13) 운행 이력(사고이력 포함)
- (14) 국가 면허 확인
- (15) 필요한 의학 자료
- (16) 자가 건강 문진표 또는 보건 전문가가 승인한 진단서의 사본

나. 위 '가'에 기술된 정보는 보관되고, 감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4]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제도 및 차량·장비 안전 요건(제53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공항 보호구역(Airside)은 차량 및 장비 운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일반 구역(Landside)에서는 마주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기동하는 항공기 주변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공항운영자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통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시행될 수 있는 많은 조치 중 하나이며, 공항 전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나.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항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지역에서 차량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기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사고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 및 지침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동지역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요건은 활주로 침범 감소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
- 다.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항행서비스제공자(ANSP), 지상조업업무 제공자, 항공기운영자 및 기타 보호구역 업무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한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 라. 보호구역 내 차량과 장비는 항공기와 인접해 운용된다. 따라서, 차량 및 장비 결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보호구역 내에서 운용되는 차량과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 마.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에 대한 공식적인 운전자 교육훈련 평가 및 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바.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를 발급 및 취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는 정해진 유효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갱신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주기장, 보호구역 도로 및 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과 같은 보호구역 지역에서 운용하는 차량과 장비의 안전을 다루는 일반적 보호구역 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 (2) 활주로 및 유도로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추가 교육훈련
  - (3) 기동지역에서 운용하는데 필요한 운전자의 올바른 무선통신(RTF) 사용 및 표준 문구

- 자.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운용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 및 장비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 차.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에서 차량 사용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운영 방식

가.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ADP)제도는 공항의 세 가지 특정 구역을 다루며, 위험 수준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 (1) 보호구역 도로 및 계류장
- (2) 활주로를 제외한 기동지역
- (3) 활주로를 포함한 기동지역

나.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내의 차량 운전자가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운전자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식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공항 지리
- (2) 공항 표지판, 표지, 등화
- (3) 무선통신(RTF) 운영절차
- (4) ICAO 무선통신 알파벳을 포함한 공항 통제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
- (5) 지상운항과 관련된 항공교통업무 규칙
- (6) 공항 규칙 및 절차
- (7) 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8) 비상 절차(예 : 차량 사고 또는 고장)
- (9) 통행자격

다. 공항의 규모와 복잡성 및 운전자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공항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라. 운전자는 다음 분야에 대한 능력을 적절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 (1) 차량용 무선통신 장치의 작동 또는 사용
- (2)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해당 공항 절차의 이해 및 준수
- (3) 공항에서의 차량 항법

마. 운전자는 공항 운전자 허가(ADP)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 공인 운전면허 및 기타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바. 보호구역 도로 및 계류장 허가는 해당 공항의 교육훈련 과정 및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신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초기 허가이다. 이 허가를 통해 운전자는 통제 및 비통제 유도로 교차지점을 포함하여 보

호구역 도로 및 계류장 내에서 주행할 수 있다. 이 허가를 받게 되면, 활주로를 제외한 기동지역에서 주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 사. 기동지역(활주로 제외) 허가는 운전자가 기동지역 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활주로에서의 주행은 제외된다. 이 허가를 받기 전에 무선통신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허가 소지는 허가 유효기간 동안 무선통신(RTF)에 대한 역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무선통신 역량 검사는 공항운영자가 승인한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항운영자가 승인한 담당자는 교육훈련 제공자, 고용주 또는 공항운영자 자신이 될 수 있다.
- 아. 기동지역(활주로 포함) 허가는 무성통신 교육훈련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운전자가 활주로 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 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된 자료, 지도, 도표, 영상, 책자 및 점검표를 적절히 사용한 이론교육훈련과, 공항에 대한 실습 및 시각적 친숙화 교육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습에 필요한 시간은 공항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초기교육훈련 이후 합의된 기간 내에 재교육훈련이 구성되어야 한다.
- 차.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전자 허가(ADP)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허가발급을 위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효한 국가 또는 기타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 3. 신체 요건

- 가. 공항 운전자 허가(ADP) 절차에는 운전자가 국가 운전면허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용주에게 공개하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전자 허가(ADP) 적용 과정의 일부로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항운영자와 해당 이해관계자의 안전 위험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 4. 운전 표준 관리

- 가. 안전관리시스템(SMS)과 함께,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과 관련된 인력의 운전 행태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규정 위반 기록(예 : 과속, 불량 주차, 미점등 주행, 안전하지 않은 적재)과 벌점 또는 벌금 부과 및 보호구역 운전자 허가 취소와 같은 징계 조치의 시행 및 집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항 운전자 허가(ADP) 절차에는 각 항목의 허가 및 갱신 조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작업 장비

가. 대부분의 보호구역 차량은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자동차, 승합차 등)를 소지한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만, 특수차량(예 : 항공기 및 수하물 예인 차량, 특수 항공기 적재 장비 및 지상 조업 장비)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사용된다.

나. 국가의 작업 장비 규정은 차량, 예인 차량, 수하물 이동 장비, 후방견인 차량, 지상 조업 장비 및 공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타 이동식 발전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작업 장비에 적용될 수 있다. 공항 운전자 허가(ADP) 절차에는 국가 운전면허 대신 특수차량에 대한 자격증명의 인정이 포함될 수 있다.

6. 차량 요건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상태 및 유지보수에 대한 특정 요건을 개발, 유지 및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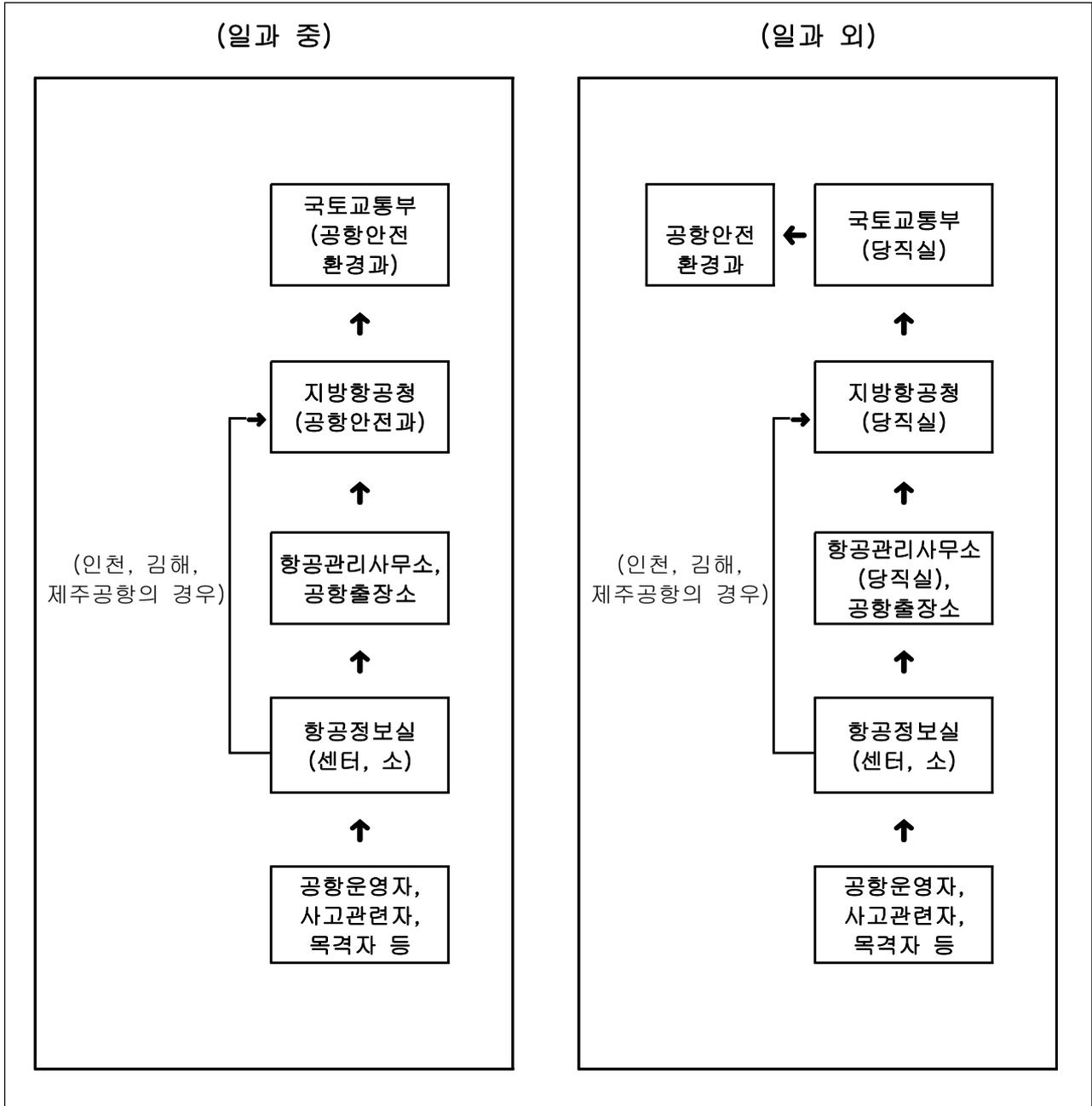
가. 표시되어야 할 차량 및 야간이나 저시정 조건에서 장애물 표시등으로 조명되어야 할 사양

나. 정기적 차량 안전 점검을 위한 사양

다. 결함의 수리를 위한 사양

[별표 25] 지상안전사고 보고계통(제180조 관련)

지상안전사고 보고계통



[별표 26] 항공기 급유시설 점검내용(제206조 관련)

**항공기 급유시설 점검내용**

범례 : 양호/○ 요정비/△ 불량/×

순번	구분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구분	점검결과
1	저장 시설	일일	- 저장탱크 성프(sump) 드레인 및 항공유 샘플 검사	자체	
		월간	- floating suction arms 작동상태 - free vent & mesh screen - 탱크 high level alarm 기능점검 - 탱크 레벨게이지 계측값과 실측값 오차범위 적합여부 - 누유검측공 누유여부 확인	자체	
		반기	- periodic test - 저장탱크 항공유 미생물검사(ump drain line) * 단, 미생물검사는 미생물 발견정후가 포착되거나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실시하고, 발견시 최소 2년간 검사 진행	자체	
		연간	- high level alarm system 동작 - tank 내부 육안점검	자체	
2	하이드란트 시스템 (시스템 구성시)	주간	- 하이드란트 배관 low point flushing - 배관누유여부 검사(leak decetion system이 있을 경우) - 급유전(hydrant pit) 상태(육안 및 청소)	자체	
		월간	- emergency shut down system - 급유전(밸브 내부누유 여부) - leak detection - 전기방식 전위측정 - 하이드란트 Valve Box 항공유를 2개소 이상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자체	
		분기	- 미사용 pit valve flushing - surge absorbers(제작사 매뉴얼) - Valve Box High Point 벤트점검 - 하이드란트 배관 플러싱(Flushing) 실시 후 · 탱크 회수구역 항공유 샘플의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 급유전(hydrant pit) 2개소 이상에서 항공유 샘플의 밀도·외양·전기전도도·수분검사,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 검사	자체	
		반기	- 급유전 dynamic testing(밸브가 없을 경우) - 급유전 wear check	자체	
		연간	- pressure test(leak detection system이 없을 경우) - hydrant valve chamber	자체	
3	여과 장치	일일	- 여과장치 필터 드레인 실시 및 품질관리 상태	자체	
		주간	- 여과장치 필터 차압그래프 작성	자체	
		월간	- 출하 필터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자체	
		반기	- 피스톤 타입 차압계기 작동시험	자체	
		연간	- 여과장치 내부 개방검사	자체	
		3년	- 여과장치 Coalescer element 교환	자체	
4	일반 사항	일일	- bonding wire 상태	자체	
		주간	- bonding wire 전도성(continuity)측정	자체	
		월간	- 항공 압력호스 상태 - 소화기 점검 - 입·출하용 호스 끝 스트레이너/스크린 점검	자체	
		반기	- critical gauge(testrig, 필터 차압게이지, hydrostatic hose pressure) - 피스톤 타입 차압게이지 - 항공 압력호스 내압시험	자체	
		연간	- 소화기 점검	자체	
		3년	- master meter calibration	자체	

\* 멤브레인 색상 및 중량 검사(millipore test) : ASTM D 2276 실험방법으로 JIG 기준을 준용

[별표 27] 항공기 급유시설 교육훈련 과정(제211조 관련)

항공기 급유시설 교육훈련 과정

구분	교육훈련 과정	직무 분야	교육과목 및 시간	
			전문 및 필수 과목	시간
종사자	초기	입사 또는 최초 보직	소 계	44
			○ PSM의 이해	16
			○ 기계, 전기, 품질, 계장분야	12
			○ 위험물, 소방	4
			○ 급유시설 구성	4
			○ 공항 일반상식	4
			○ 현장 확인	4
	정기	직무보수 및 사례분석	소 계	20
			○ PSM 이행수준 평가기준	8
			○ 기계, 전기, 품질, 계장 - 부문별장비점검방법 및 절차 - 부문별 장비 장애발생 사례	8
			○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	4

[별표 28] 지하관로시설 점검표(제239조 관련)

지하관로시설 점검표

○ 공항명 :		
○ 검사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		
○ 검사관 : (서명)		
○ 수검자 : (서명)		
검 사 항 목	검사여부	검사결과
1. 공사시 안전관리 준수여부		
○ 공사시 지하관로시설의 위치 등의 사전조사 여부		
○ 관계기관과의 연락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여부		
○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격 등을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 여부		
○ 주변 지반 침하 및 주요 관로시설의 경우 관계자 입회여부		
2. 운영시 안전관리 여부		
○ 지하관로시설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주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3.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개발 및 성능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 공간정보의 갱신관리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는지		
○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		
○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		
○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		
○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		
○ 보안관리 실태		

※ 검사여부는 “시행”, “미시행” 또는 “해당없음”으로 기록하고, 검사결과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

[별표 29] 수하물처리시설 점검내용(제266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점검내용**

점검항목	관리·운영 지침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하물 이송 중 임의로 자동 또는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말 것</li> <li>○ 기계장치의 점검·정비작업은 수하물처리시설의 작동 정지 등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실시할 것</li> <li>○ 수하물은 크기 및 무게를 기준하여 정해진 장비에 투입하여 운반 할 것</li> </ul>
2. 지지 구조물 및 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대의 균열, 파손, 부식 및 변형이 없을 것</li> <li>○ 외장의 파손,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할 것</li> <li>○ 볼트·너트는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li> <li>○ 수하물 이탈 방지장치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충격 흡수용 고무패드는 변형과 손상이 없을 것</li> <li>○ 안전보호 덮개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ul>
3. 구동부 및 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동부의 윤활유는 변색이 없어야 하고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것</li> <li>○ 운전 중 베어링은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50℃이상 과열되지 않을 것</li> <li>○ 체인은 늘어짐이 없고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li> <li>○ 롤러의 회전은 원활하여야 하며 마모가 없을 것</li> <li>○ 가이드 롤러 및 안내레일은 마모가 없을 것</li> <li>○ 스프라켓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마모가 없을 것</li> <li>○ 축 및 링은 마모가 없고 편심과 처짐이 없을 것</li> <li>○ 모터, 감속기 및 기어박스는 운전 중 이상소음 및 윤활유의 누유가 없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벨트 및 체인이 있는 곳의 안전보호망은 변형되지 않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크랭크, 연결축 등은 균열, 휨과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구동부의 윤활유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것</li> <li>○ 드라이브 풀리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을 것</li> </ul>
4. 컨베이어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한 마모 및 찢겨짐이 없어야 하고 미끄러짐이 없도록 장력을 유지할 것</li> <li>○ 연결클립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작동시 간섭사항이 없을 것</li> <li>○ 벨트는 늘어짐이 없어야 하고 벨트 가이드 판은 풀림 및 손상이 없을 것</li> <li>○ 벨트는 편심되지 않아야 하고 중앙에 정렬되어 작동할 것</li> <li>○ 벨트 접합부위가 균열 등으로 손상되지 않을 것</li> </ul>
5. 턴테이블 (캐로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레이트 표면은 손상이 없어야 하고 이물질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할 것</li> <li>○ 충격 완화장치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변형이 없을 것</li> <li>○ 휠과 트랙은 마모가 없어야 하고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li> <li>○ 비상정지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li> <li>○ 장비 가동 표시등은 단락이 없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표시될 것</li> <li>○ 구동봉과 전동봉의 연결 레버는 휨 및 비틀림이 없을 것</li> </ul>

점검항목	관리·운영 지침
6. 분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응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할 것</li> <li>○ 경사판은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물질이 없이 청결할 것</li> <li>○ 경사 및 이동장치는 이상소음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li> <li>○ 케이블의 연결은 양호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li> <li>○ 광전관은 이물질이 없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트랙은 균열, 손상, 부식 및 마모가 없을 것</li> </ul>
7. 방향전환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트 밀림 방지판의 손상 및 간섭사항이 없을 것</li> <li>○ 암의 정렬상태는 양호 할 것</li> <li>○ 방향전환은 원활하여야 하며 소음과 진동이 없을 것</li> <li>○ 방향 전환시 수하물이 끼임이 없도록 벨트의 정렬이 양호할 것</li> </ul>
8. 나선형 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열 및 손상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li> <li>○ 표면에 꼬리표 등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할 것</li> <li>○ 충격방지판은 손상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ul>
9. 스캐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캐너는 정상적으로 읽고 작동할 것</li> <li>○ 헤드부는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할 것</li> <li>○ 통신망의 연결상태는 양호하여야 하며 작동시 표시등의 점멸은 정상적일 것</li> <li>○ 각 유닛 카드의 접속은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li> <li>○ 외관은 변형, 변색 및 손상이 없을 것</li> <li>○ 헤드 각도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조정되어 있을 것</li> <li>○ 각 유닛 헨은 이음이 없이 정상 작동할 것</li> </ul>
10.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지기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감지 불빛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스위치류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커넥터 접속은 견고하여야 하며 흔들림이 없을 것</li> </ul>
11. 감응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지기는 이물질이 없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타이밍 벨트는 늘어짐이 없을 것</li> <li>○ 각 케이블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li> </ul>
12. 계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드 셀의 하중감지 및 출력상태는 정상적일 것</li> <li>○ 제어장치는 이상이 없을 것</li> <li>○ 저울의 영점은 정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표시성능이 양호할 것</li> </ul>
13. 수동 입력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입력된 꼬리표는 정상적으로 프린트되고 있을 것</li> <li>○ 스캐너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컴퓨터 정지시 정지표시를 할 것</li> <li>○ 장비의 비정상 가동시 비정상 가동 정지표시를 나타낼 것</li> <li>○ 케이블 배선 상태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li> </ul>
14. 제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전압 및 전류를 유지할 것</li> <li>○ 단자의 파손, 부식 및 오염이 없을 것</li> <li>○ 기기의 변형 및 소손이 없어야 하고 단자의 발열이 없을 것</li> <li>○ 각종 스위치의 작동은 정상적일 것</li> <li>○ 계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램프의 점·소등은 정상적이어야 하며 단락된 것이 없을 것</li> <li>○ 작동 표시등의 점멸 상태는 양호할 것</li> <li>○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비상정지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안전덮개는 깨지거나 열려있지 않을 것</li> <li>○ 비상정지용 케이블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단선 및 단락이 없을 것</li> </ul>

점검항목	관리·운영 지침
15. 제어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 공급 전압은 AC380V ±10%이내를 유지할 것</li> <li>○ 중앙처리장치는 작동시 램프 점등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li> <li>○ 연결 통신망 케이블의 접속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변압기의 입·출력 전압은 ±10%이내일 것</li> <li>○ 접지선은 정확히 접지되어 있어야 하며 변형, 변색이 없을 것</li> <li>○ 각종 신호 표시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릴레이 및 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카드 기판류는 진동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li> <li>○ 램프는 점등과 소등이 확실하여야 하며 이완되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li> </ul>
16. 주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처리장치의 부하는 정상을 유지할 것</li> <li>○ 메시지 대기행렬 상태등 입·출력 및 주변 장치의 작동은 정상적일 것</li> <li>○ 각종 정보데이터 생성과 파일 목록 등은 정상적일 것</li> <li>○ 바이러스 감염 체크를 위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것</li> <li>○ 통신망과 연결된 입·출력 및 주변장치, 표시등의 작동은 정상적일 것</li> <li>○ 항공사로부터 수신되는 여객 수하물정보는 정상적일 것</li> <li>○ 비행안내정보 시스템의 송·수신은 정상적으로 작동 할 것</li> <li>○ 냉각팬은 정상적으로 작동 할 것</li> <li>○ 컴퓨터 내부온도는 36℃ 미만일 것</li> <li>○ 하드 드라이브 각 디스크 사용률은 96% 미만을 유지할 것</li> <li>○ 공항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송·수신은 정상적으로 작동 할 것</li> <li>○ 정보의 응답속도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것</li> <li>○ 현장 제어용 PLC와 통신은 정상적일 것</li> <li>○ 서버룸 실내온도는 21~22℃로 유지할 것</li> </ul>
17. 운영정보/ 제어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처리장치의 여유율은 40% 이상을 유지할 것</li> <li>○ 입·출력 장치 등 주변 장치의 작동상태는 정상적일 것</li> <li>○ 네트워크의 연결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일 것</li> <li>○ 유지보수 안내 정보 컴퓨터는 알람기능이 정상적일 것</li> <li>○ 사전에 정하여 입력된 데이터 값은 항상 유지하고 있을 것</li> <li>○ 화면 표시 기능은 정상적일 것</li> <li>○ 바이러스 감염 체크를 위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것</li> <li>○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수시로 검사할 것</li> <li>○ 하드디스크 용량은 적정할 것</li> <li>○ 불필요한 데이터는 정리되어 있을 것</li> <li>○ 현장 제어용 PLC와 통신은 정상적일 것</li> </ul>
18. 프린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는 정상 연결되어 있을 것</li> <li>○ 프린터는 정상 출력될 것</li> <li>○ 리본, 카트리지, 용지는 정상 공급되고 작동할 것</li> </ul>
19.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의 분기점이나 단말 장치의 접속점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통신망과 연결된 입출력 및 주변장치, 표시등의 작동은 정상적일 것</li> <li>○ 각 케이블의 취부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li> <li>○ 분전반의 각종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li> <li>○ 패널 내·외부는 청결을 유지할 것</li> <li>○ 케이블은 소손, 손상이 없을 것</li> <li>○ 주 전원 전압·전류는 규정치의 ± 10%이내 일 것</li> </ul>

점검항목	관리·운영 지침
20. 무정전 전원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각팬은 정상 작동할 것</li> <li>○ 전선은 무음, 무취, 습기가 없을 것</li> <li>○ 패널은 소손이 없어야 하고, 내·외부 덮개는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li> <li>○ 전면 조작반의 도장은 변색, 부식이 없을 것</li> <li>○ 축전지의 외관은 변색, 부풀림, 변형이 없을 것</li> <li>○ 충전장치는 정상적이어야 하며 점멸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될 것</li> <li>○ 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 온도는 50℃ 미만을 유지할 것</li> <li>○ 차단기 핸들은 정상 가동될 것</li> <li>○ 전원공급 케이블은 변형, 변색, 접촉, 납땜, 열화가 없을 것</li> <li>○ 입·출력 전압전류는 규정치의 ±10%이내를 유지할 것</li> </ul>
21. RFID TAG REA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으로 읽고 작동할 것.</li> <li>○ 안테나는 견고하고 청결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통신 연결 상태는 양호하여야 하며 작동시, 표시등의 점멸이 정상적일 것</li> <li>○ 코드 Tag은 견고하게 고정 되고 손상이 없을 것.</li> <li>○ 커넥터 접속은 견고하여야 하며 흔들림이 없을 것.</li> </ul>
22. 고속 트레이 컨베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레이 이송은 원활하여야 하며 소음과 진동이 없을 것.</li> <li>○ 휠은 마모가 없어야 하며 균일한 높이를 유지할 것.</li> <li>○ 궤도 전환장치는 편심되지 않고 원활히 작동되며 트레이 이송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li> <li>○ 가이드레일은 균일한 높이를 유지하고 휨 및 비틀림이 없을 것</li> <li>○ 트레이 하부 휠은 마모 및 손상이 없고 고정상태가 양호 할 것.</li> <li>○ 플렉시블 가이드 레일의 압력스프링은 적당한 탄성을 유지하고 균열 및 파손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li> </ul>

[별지 1] 필수 공항정보(제13조, 제19조 관련)

**필수 공항정보**

일 반		
1. 공항명칭		10. 위도
2. ICAO공항부호		11. 경도
3. 소재지		12.. 자기편차
4. 도심(시정)과의 거리		13. 표고
5. 소유자		14. 표준온도
6. 운영자		15. 면적
7. 주소		16. 장주(Traffic Pattern) 방향
8. 전화번호		17. 착륙료 제외 유무
9. 공항운영시간		18. 공항운영증명번호
활주로		
19. 명칭	/	/
20. 길이		
21. 폭		
22. 포장의 유형		
23. 표면처리		
24. PCN		
등화/접근 시각지원시설		
25. 활주로등의 광도		
26. 활주로 표지의 유형 및 상태	/	/
27. 진입각지시등(PAPI)	/	/
28. 시단통과높이	/	/
29. 활공각	/	/
30. 중심선과 접지구역	/	/
31. 활주로 가시범위 - 활주로 시정	/	/
32. 활주로 시단 식별등	/	/
33. 접근등 시스템	/	/
장애물 관리		
34. 이설 활주로서단	/	/
35. 장애물 관리대상	/	/
36. 장애물 표지 및 등화	/	/
37. 활주로 말단에서의 높이	/	/
38. 활주로 말단에서의 거리	/	/
39. Centerline Offset	/	/
40. Obstacle Clearance Slope	/	/
41. Close-in Obstacle	/	/
공시거리		
42.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
43. 이륙가용거리(TODA)	/	/
44.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
45. 착륙가용거리(LDA)	/	/
공항서비스		
46. 연료		49. 산소공급
47. 기체정비		50. 항공기 주기능력
48. 엔진정비		51. 기타
공항시설		
52. 공항등대		56. 관제탑
53. 등화 점등시간		57. AIS 명칭
54. 풍향등		58. AIS 전화번호
55. 풍향등 원형띠		
주기지 항공기		
59. 단발엔진	60. 다발엔진	61. Jet
		62. 헬리콥터
운항횟수		
63. 정기	64. 부정기	65. 일반항공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작성 요령]

I. 일반

1. 공항 명칭 : 공항의 공식 명칭을 한글로 표기
2. ICAO 공항 부호 : ICAO 지정 4자리 영문 부호를 표기
3. 소재지 : 해당 공항의 시 도 소재지를 한글로 표기
4. 도심(시청)과의 거리 : 공항이 해당하는 소재지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소수점 1자리까지 반올림한 킬로미터(km)로 표기
5. 소유자 : 공항의 소유자를 한글로 표기
6. 운영자 : 공항의 운영자를 한글로 표기
7. 주소 : 공항의 위치를 한글로 표기
8.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필수정보양식’ 관리부서의 전화번호를 표기
9. 공항운영시간 : 공항의 실제 운영시간을 표기 / 예시) 0000-2400(24Hr)
10. 위도: 공항 표점의 위도를 도, 분, 초 단위로 표기
11. 경도 : 공항 표점의 경도를 도, 분, 초 단위로 표기
12. 자기편차 : 공항의 자기편차 표기
13. 표고 : 제6조에 따른 공항표고를 m (및 ft) 단위로 표기
14. 표준온도 : 제7조에 따른 공항의 표준 온도를 표기
15. 면적 : 공항 경계내의 전체 면적을 m<sup>2</sup> 단위로 표기
16.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방향 : 비행 방향과 해당 활주로 명을 영문으로 표기. 다만, 교통장주는 조종사가 final leg에 진입 시 조종사의 입장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면 우측장주(R), 좌회전일 경우에는 좌측장주(L)로 표기 / 예시) Left- 14L,32R/ Right- 14R, 32L
17. 착륙료 제외 유무 : 착륙료 제외사항의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제외사항을 표기
18. 공항운영증명 번호 :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공항운영증명서의 번호를 표기. 다만,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은 공항에 대해서는 생략

II. 활주로

19. 명칭 : 모든 활주로의 명칭을 표기
20. 길이 : 모든 활주로에 대하여 이설시단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총 활주로 길이를 미터 단위로 표기
21. 폭 : 사용 가능한 활주로의 폭을 미터 단위로 표기
22. 포장의 유형 : 활주로 포장의 유형을 영문으로 표기

- 23. 표면처리 : 활주로 포장표면의 그루빙(Grooving) 여부를 영문으로 표기
- 24. PCN : 활주로의 포장면 강도를 PCN수치로 표기

Ⅲ. 등화/접근 시각지원시설

- 25. 활주로등의 광도 : 활주로 등화의 광도를 영문부호로 표기

H	고광도
M	중광도
L	저광도

- 26. 활주로 표지 유형 상태 : 활주로 표지의 유형 및 상태를 다음의 영문 부호로 입력 표기 / 예시) PIR-G

활주로 표지 유형	상태
PIR : 정밀접근활주로	G : 우수 F : 보통 P : 나쁨
NPI : 비정밀접근활주로	
VIS : 시계활주로	
NSTD : 비표준방식	

- 27. 진입각지시등(PAPI) : PAPI의 위치와 PAPI unit 개수를 표기  
예) PAPI의 4개 units이 활주로 각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4로 표기하고, 활주로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4L로 표기
- 28. 시단통과높이(Threshold Crossing Height) : 활주로 시단에서 유효한 Visual Glide path cross의 높이를 미터 및 피트 단위로 표기
- 29. 활공각 : PAPI가 작동되는 동안의 유효한 Visual Glide Path angle을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 예시) 3.0°
- 30. 중심선등과 접지구역등 : 각 활주로의 활주로 중심선등과 접지구역등의 설치 여부를 영문약어(있음 : Y, 없음 : N)로 표기 / 예시) Y-N
- 31. 활주로 가시범위 - 활주로 시정 : 활주로 가시범위(RVR) 측정장비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음의 영문부호와 설치여부를 표기

영문 부호	설치 위치 또는 설치여부
T	접지대(Touch-down),
M	중간부(Mid-point)
R	말단 (Roll-out)
N	없음(None)

- 32. 활주로서단 식별등 : 활주로서단 식별등의 설치 여부를 영문약어(있음 : Y, 없음 : N)로 표기 / 예시) Y/N
- 33. 접근등시스템 : 활주로서단에 설치된 접근등시스템의 종류를 영문으로 표기

#### IV. 장애물 관리

- 34. 이설 활주로서단 : 각 활주로의 이설 길이를 미터 단위로 표기
- 35. 장애물 관리 대상 : 각 활주로의 진입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을 표기
- 36. 장애물 표지 및 등화 : 제35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항공장애 표시 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여부를 영문부호로 표기

영문부호	의미
M	장애물이 주간표지(marking)가 되어 있는 경우
L	장애물에 표시등(light)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ML	주간표지와 표시등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NONE	주간표지 및 표시등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7. 활주로 말단에서의 높이 : 제35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하여 활주로 말단표고(touch-down elevation)(이설 시단 제외)로부터 장애물까지의 높이를 미터 및 피트 단위로 표시 (계산방법 : 장애물 표고 - 활주로 말단 표고=활주로 말단에서의 높이)
- 38. 활주로 말단에서의 거리 : 제35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하여 활주로 말단(이설시단 제외)에서부터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과 장애물이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미터 및 피트 단위로 표시
- 39. Centerline Offset : 제35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직각으로 떨어져 위치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m 및 (ft)단위로 표기하고 항공기 접근방향에서 볼 때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장애물이 위치한 방향을 R(우측), 또는 L(좌측)로 표기 / 예시) 30(100)R
- 40. Obstacle Clearance Slope : 활주로 말단에 진입하는 항공기에게 유용한 Clearance를 표시할 수 있도록 Obstacle clearance Slope를 비율로 표기 / 예시) 15:1
- 41. Close-in Obstacle(근접장애물) : 각 활주로의 착륙대 내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의 명칭, 장애물의 유형, 높이, 위치(활주로 말단 및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를 표기(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정보는 필요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 V. 공시거리

- 42.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활주가용거리를 계산하여 미터 단위로 표기
- 43.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가용거리를 계산하여 미터 단위로 표기
- 44.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가속정지가용거리를 계산하여 미터 단위로 표기

로 표기

45.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가용거리를 계산하여 미터 단위로 표기

**VI. 공항 서비스**

- 46. 연료 : 해당 공항에서 제공 가능한 항공기 연료의 유형을 표기 (군용 항공기 연료는 제외)
- 47. 기체정비 : 해당 공항에서 제공 가능한 기체 정비 수준을 표기 (군용 항공기 기체 정비는 제외) / 예시) MAJOR, MINOR, NONE
- 48. 엔진정비 : 해당 공항에서 제공 가능한 엔진 정비 수준을 표기 (군용 항공기 엔진 정비는 제외) / 예시) MAJOR, MINOR, NONE
- 49. 산소공급 : 해당 공항에서 산소통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제공 가능한 산소 공급 능력 수준을 표기 / 예시) HIGH, LOW, NONE
- 50. 항공기 주기능력 : 해당 공항에서 주기할 수 있는 항공기 수를 표기
- 51. 기타 : 그 밖에 공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영문약어로 모두 표기

영문 부호	의 미
INSTR	조종사 훈련
AGRI	농작물 관리
CHTR	전세 항공편
RNTL	항공기 임대
SURV	공중 측량
GLD	글라이더
PAJA	공중낙하 지원
AMB	응급수송기
AFRT	항공화물운송(air freighter)
CARGO	화물처리업무(cargo handling)

**VII. 공항시설**

52. 비행장 등대 : 해당 공항의 비행장 등대의 불빛 색상을 식별할 수 있는 영문 부호를 표기

영문 부호	불빛 색상
W	백색
G	녹색
Y	황색

- 53. 등화 점등시간 : 해당 공항의 항공등화 점등시간을 표기 / 예시) 0000-2400(24Hr)
- 54. 풍향등 : 해당 공항에 풍향시지기의 설치여부를 영문약어(있음 : Y, 없음 : N)로 표기하고, 만약 풍향지시기에 등화(Light)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문약어 (Y-L)로 표기
- 55. 풍향등 원형띠 : 풍향등의 원형띠의 설치여부를 영문약어(있음 : Y, 없음 : N)로 표기
- 56. 관제탑 : 공항에 관제탑의 설치여부를 영문약어(있음 : Y, 없음 : N)로 표기
- 57. AIS 명칭 : 해당 공항의 항공정보업무기관의 명칭을 표기
- 58. AIS 전화번호 : 해당 공항의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연락처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표기

**VIII. 주기지 항공기**

- 59. 단발엔진 : 해당 공항에 주기지를 두고 있는 피스톤 및 터보프롭 일반 항공 단발엔진 항공기의 수를 표기(헬리콥터는 수는 포함하지 않음)
- 60. 다발엔진 : 해당 공항에 주기지를 두고 있는 피스톤 및 터보프롭 일반 항공 다발엔진 항공기의 수를 표기(헬리콥터는 수는 포함하지 않음)
- 61. Jet : 해당 공항에 주기지를 두고 있는 일반 항공 터보제트와 터보팬 항공기의 수를 표기(헬리콥터는 포함하지 않음)
- 62. 헬리콥터 : 해당 공항에 주기지를 두고 있는 헬리콥터의 수를 표기

**IX. 운항횟수**

- 63. 정기 :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최근 1년간의 정기 운항횟수 (연간 운항횟수 및 일평균 운항횟수)를 표기 / 예시) 3,65회(일평균 1회)
- 64. 부정기 :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최근 1년간의 부정기 운항 횟수(연간 운항횟수)를 표기 / 예시) 4,000회
- 65. 일반항공 :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일반 항공(General Aviation)의 정기 운항횟수(연간 운항횟수)를 표기(헬리콥터는 표기한다) / 예시) 365회

[별지 2]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제19조 관련)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  
**(Compliance Statement)**

① 관련 조항	② 이행내역	③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 ① : 공항안전운영기준의 관련조항을 기재
- ② : 각 조항의 요건을 준수 또는 이행하기 위한 방법(절차,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사항)
- ③ : ① 및 ②에 대한 보충 설명

[별지 3] 지상안전사고 보고서(제180조 관련)

**지상안전사고 보고서**

(3쪽 중 제1쪽)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차량대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차량대사람 <input type="checkbox"/> 차량대차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대시설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해상황		<input type="checkbox"/> 물적피해 <input type="checkbox"/> 인적피해 <input type="checkbox"/> 물적피해+인적피해 <input type="checkbox"/> 피해없음				사고차량대수				
		인적피해 :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피해총액    천원								
		차량이외 피해자	성명 :	생년월일 :	차량이외피해총액 :	천원				
		주소 :		전 화 :						
사고 관련 차량 1	차량등록번호	차종		제작회사/차명		연식				
	최근검사일	최초충돌부위		주요파손부위						
	소유자	주소			전화					
	운전자	주소			전화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소속	직 책		차량 피해액		천원				
	승차정원	승차인원		보험가입상황						
	사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령	직업	상해정도		
	1									
	2									
사고 관련 차량 2	차량등록번호	차종		제작회사/차명		연식				
	최근검사일	최초충돌부위		주요파손부위						
	소유자	주소			전화					
	운전자	주소			전화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소속	직 책		차량 피해액		천원				
	승차정원	승차인원		보험가입상황						
	사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령	직업	상해정도		
	1									
	2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현장상황	노면상태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습기 <input type="checkbox"/> 결빙 <input type="checkbox"/> 적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형태 <input type="checkbox"/> 단일로 <input type="checkbox"/> 교차로 <input type="checkbox"/> 지하차도 <input type="checkbox"/> 기타/불명	제한속도  km/h	사고직전속도 1 <input type="checkbox"/> km/h 2 <input type="checkbox"/> km/h	교통장애 <input type="checkbox"/> 선행교통사고 <input type="checkbox"/> 도로공사 <input type="checkbox"/> 고장차량 <input type="checkbox"/> 주/정차차량 <input type="checkbox"/> 기타장애요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없음 <input type="checkbox"/> 불명
	음주운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특수사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주운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측정불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상운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불명		<input type="checkbox"/> 뺑소니 <input type="checkbox"/> 역주행 <input type="checkbox"/> 긴급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개문발차 <input type="checkbox"/> 급발진 <input type="checkbox"/> 연쇄사고 <input type="checkbox"/> 차량화재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자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등		보행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직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좌우회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턴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발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후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앞지르기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진로변경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정차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주보고통행중(차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등지고 통행중(차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상작업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 유발 요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인적 유발요인 위반		차량적 유발요인 위반		기타 유발요인 위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 초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량통행로 이외 지역 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정차 위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시정지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한속도 초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추월금지 위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난폭운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및 차량 견인방법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입제한지역 무단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탑승교 하부 등 높이제한 도로 통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주운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의적 운전행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량조작잘못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행자 부주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화장치 및 안전장치 미비차량 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청소 및 급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차량운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동장치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향장치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엔진장치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이어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등화장치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법개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OD방치 및 미제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급유작업절차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누유방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조치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교육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연성 물질을 허가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형불량(급커브, 급경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야간 시계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선형, 형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상장애물(공사, 사고, 정체, 주정차차량, 방치물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면 미끄러움(비, 결빙, 적설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고상황	신고자 성명 :		주소 :		
	접수일시 :		신고접수자 :		신고방법 :

(3쪽 중 제3쪽)

사 고 현 장 약 도

발 생 개 요	
조 치 사 항	
기 타	

조사자 성명 : (서명)

[별지 4]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제180조 관련)

지상안전사고 진술서

(1쪽 중 제1쪽)

일반사항	진술일시 및 장소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이동지역 운전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주소 및 연락처			

진술내용

사고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한다.

조사자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5] 목격자 진술서(제180조 관련)

목격자 진술서

(1쪽 중 제1쪽)

일반사항	진술일시 및 장소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사고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			

사고시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상태	외면상태	
	연기유무 및 빛깔	
	엔진 동작여부	
	제동장치 상태	
	기타	

진술내용

사고당시 목격한 것, 들은 것 또는 행동한 것과 사고발생시 일어난 모든 사실을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입할 것

목격자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6] 항공기 급유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제194조 관련)

항공기 급유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

◆ 처리자	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조치결과 ○ 해결여부 : ○ 조치내용		
1. 불편사항 접수일자 및 접수일련번호 :		
2. 의뢰자	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3. 제목		
4. 내용(요약)		
조치결과 확인자	(기관)명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일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7] 사고보고서(제204조 관련)

사 고 보 고 서

제 목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사항	
○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별첨 : 사망·부상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기타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및 장비	
6. 기타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제211조 관련)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소속(회사)명				
부서 명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대상인원				
교육 기간				
교관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등				
대상자별 교육일정	성명	직급	일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1]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232조 관련)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결 재	담당자	○○장	○○장
관리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 태	수량(건)		보호 기간	보관장소	비고

※ “비고” 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2]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결 재	담당자	○○○장	○○○장
분류일자	자료명칭	자 료 내 용	자료구분	보관장소	비고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 관리주체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비공개”목록작성은 예외로 한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3]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제231조 관련)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담당자	○○장	○○장
							결재		
연번	접수 일자	공 사 현 황					전산 입력 일자	비고	
		공사명	공사기간	감독부서	시공사	감리자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연번을 기록한다

- 예 : WA-001(상수:WA, 하수:SE, 전력:EL, 통신:CO, 송유:OI, 가스:GA, 보링:BO, 공동구:CD)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5]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제233조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담당자	○○장	○○장
결재			
1. 장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 장애발생 업무명			
3. 장애처리시기			
4. 사용자			
5. 장애발생내용			
구분	내용		
장애발생 상황	업무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장애복구 조치사항			
확인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8] 지하관로시설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보고서)(제239조 관련)

지하관로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결과 결과(보고서)

1. 목적

2. 대상 공항

3. 공항별 검사관(팀) 및 일정

4. 총괄 평가 및 권고

5. 공항별 세부 내용

가. 00공항

- 주요 점검사항
- 점검시 지적사항
- 조치할(권고)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9]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제246조, 제249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

◆ 처리자	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조치결과 ○ 해결여부 : ○ 조치내용				
1. 불편사항 접수일자 및 접수일련번호 :				
2. 의뢰자	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3. 제목				
4. 내용(요약)				
조치결과 확 인 자	(기관)명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일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20]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개선요청서(제250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개선요청서

1. 의뢰자			
성명		직급	
기관(부서)명		전화번호	
2. 불편 및 개선사항			
가. 제목			
나. 내용(요약)			
다. 세부내용	○ 현황  ○ 불편사항 또는 문제점   ○ 개선대책   ○ 개선효과		
◆ 접수일자 및 일련번호			
◆ 접수자	기관(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21]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제246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

일 자	출 입 자					면담자	확인자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직급 또는 생년월일	출 입 목 적	출입 시간		
'00.00.00	○○○	○○○○○	'00.00.00	○○○○○○	00:00~00:00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22] 수하물처리시설 사고보고서(제262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사고보고서

제 목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사항 ○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별첨 : 사망·부상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기타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및 장비	
6. 기타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23]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제271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소속(회사)명				
부서 명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대상인원				
교육 기간				
교관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등				
대상자별 교육일정	성명	직급	일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